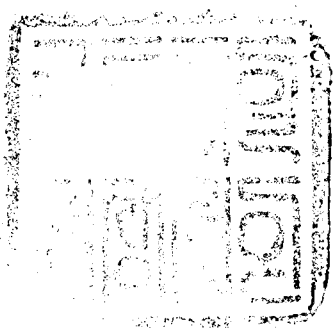


民主統一論

— 統一問題 —

1989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發刊에 즈음하여

1989년은 南北韓關係가 냉전적 對決狀態에서 동반자적 協力關係로 전환하여, 「平和統一史의 元年」으로 기록되는 가장 뜻 깊은 한해 이기를 기대한다.

國內的으로는 지난해에 이룩한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적 정권교체에 뒤이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民主化의 착실한 진전을 밑바탕으로 하여 국민들의 統一熱望이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어 있고, 일부 急進勢力의 體制否定,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理念的 混亂이 있는 가운데 統一論議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中·蘇등 공산제국의 開放·改革政策의 가속화로 우리의 北方 外交 추진 및 한반도 平和體制 유지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의 내부사정도 세계청년학생축전 강행으로 인한 지나친 재정낭비로 閉鎖經濟의 한계성이 深化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과 북한정세를 감안하여 정부는 이미 밝힌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대통령 7·7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 국민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새 통일방안을 천명하고 多角的인 남북한 人的·物的交流를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자료의 과감한 공개와 민주적 統一論議 정착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國民的 合意基盤을 확충하여 나갈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當院에서는 금년에도 통일교육 표준교재로서 「民主統一論」과 「共產主義와 現代急進思潮」를 발간하였으나, 이 책이 발간되기 까지 새 통일방안이 발표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새 통일방안 내용은 별책으로 후속 발간에정임을 밝혀둔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널리 활용되어 국민들에게 우리 統一政策의 정당성 인식과 北韓實態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어 統一論議·北韓資料開放 등에 따른 理念的 혼란이 극복되고 확고한 統一觀 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원고집필과 내용검토에 참여해 주신 院內外 教授陣 및 斯界專門家 여러분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統 一 研 修 院

목 차

I. 南北韓 統一政策

1. 序 言	9
2. 分斷의 原因과 責任	11
가. 國土分斷의 原因과 유형	11
나. 政治的 分斷의 과정과 正統性	13
다. 民族分斷의 實相과 책임	18
3. 統一의 當爲性和 역사적 의의	20
가. 통일의 의미	20
나. 통일의 當爲性和 필요성	22
다. 平和統一의 역사적 의의	23
4. 우리 統一問題의 本質과 특성	25
가. 우리 통일문제의 구조적 특성	25
나. 統一로 가는 길	27
다. 統一論議의 효용과 한계	32
5. 南北韓 統一政策의 변천과정	36
가. 1960년대말까지의 名分論的 統一試圖	37
나. 1970년대의 정책전환과 남북대화	39
다. 1980년대의 평화통일정책과 그 進展	42

6. 第6共和國의 統一政策	54
가. 統一政策의 基調	54
나.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大統領 特別선언	60
다. 前向的 통일접근노력과 대북제의	66
7. 北韓의 統一路線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74
가. 北韓의 統一觀과 통일전략	74
나. 聯邦制 주장의 변천과정	77
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내용	78
라. 「고려연방제」의 문제점	80
마. 「고려연방제」와 關連한 對南提議	84
8. 統一의 展望	90
가. 統일의 促進要因과 沮害要因	93
나. 短期 및 中長期的 전망	95
9. 結 言	98

II. 韓半島 周邊情勢와 統一環境

1. 序 言	103
2. 世界軍事情勢와 한반도	105
가. 미·소의 軍事政策과 新「데탕트」시대	105
나. 新「데탕트」시대와 한반도의 緊張緩和	110
3. 世界經濟情勢와 한반도	117
가. 아시아·태평양시대와 한국경제의 位相	117

나. 중·소의 改革·開放政策과 한반도	122
4. 한반도 統一環境의 변화	131
5. 結 言	138

III. 分斷國 統一問題 (獨逸·中國)

1. 序 言	143
2. 獨逸의 統一問題	145
가. 동서독의 分斷過程	145
나. 동서독의 接近過程	149
다. 동서독의 交流現況	166
3. 中國의 統一問題	178
가. 중국·대만의 分斷過程	178
나. 중국·대만의 統一政策	181
다. 중국·대만의 交流現況	192
4. 結 言(統一의 展望)	195
가. 東西獨의 統一展望	195
나. 中國·臺灣의 統一展望	197
다. 分斷國 接近方式의 韓國에의 適用可能性	199

I. 南北韓 統一政策

金 炅 泰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1988년을 기점으로 우리 통일문제는 안팎에서 새로운 局面을 맞고 있다.

안으로는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정치적 자유, 언론자유, 伸張 등 민주발전 과정에서 대북관계 및 통일정책의 기초도 획기적·전향적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자료의 공개, 통일논의의 개방화·활성화 조치가 취해지고, 「7·7선언」에서 보인 바와 같이 북한을 대결·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번영해야 할 동반자,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할 민족공동체로 보고 우리가 먼저 열고, 풀고, 뚫겠다는 일방주의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펴면서 남북한간의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우리 국력과 민족문화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과시·선양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국민들은 민족적 自矜心과 함께 모처럼 동서화합의 평화제전을 서울에서 열면서 이를 민족화합의 축제로까지 끌어올리지 못한 데 대한 민족적 自愧心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자긍심과 자괴심은 바로 통일에 대한 소원을 통일의지와 열정으로 승화시켰다.

밖으로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폭이 넓어지더니 마침내는 헝가리와 수교, 소련·중국을 포함한 동구권과의 무역사무소 교환 개설 및 경제협력이 실현되는 등 북방정책 성과가 可視化되었다. 한편, 미·소를 비롯한 동·서간의 평화공존구조가 정착되어 가고, 중·소화해, 아프가니스탄의 내전 수습, 이란·이라크 전쟁의 종식, 캄푸치아에서의 월남군 철수,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 기미 등 국제질서는 화해와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여 재편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1950년대의 동서냉

전 구조의 역사적 유물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우기 서울올림픽에서 얻은 남쪽의 명성과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닫힌 사회”¹⁾로 유명한 북쪽의聲價까지 겹쳐져서 한반도문제는 세계적 초점이 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기존 대화는 중단시킨채 국회연석회의, 3자회담, 정치협상회의, 학생회담, 체육회담, 고위정치군사회담 등 多次元的인 대화공세를 펴면서도 내정간섭적인 전제조건을 내걸고 정치선전을 일삼는가 하면, 재미동포의 고향방문과 한국언론인의 취재를 받아들이고, 한국기업인을 초청하여 금강산합작개발을 협의하며, 「전대협」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초청하는 등, 선택적인 인적교류와 부분적인 북한사회개방으로 다목적적인 대남 정치심리전공세를 펴고 있다.

더우기 국내에서는 통일논의의 활성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에서 무분별한 통일논의가 「百花齊放, 百家爭鳴」식으로 분출하고 반체제적인 통일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통일 소용돌이(쇼크)는 마치 평화와 통일이 성큼 다가선 것 같은 환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우리 평화와 통일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통일의 관념은 무엇이고, 그 실제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통일을 열정만으로 이룩할 수 있는가.

통일문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은 맹목적일 수 밖에 없다. 통일은 불같이 뜨거운 情熱(행동)과 함께 얼음같이 찬 理性(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 국토와 민족의 분단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통일의 당위성과 역사적 의의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 통일문제의

1) 동구권의 언론이 북한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본질과 특성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동안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남북한관계의 역사적 기록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통일의 시기를 전망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6공화국의 새 통일방안은 국민적 통일여망과 슬기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기반 위에 형성·발표될 것이지만, 이미 「7·7선언」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통일의 과정과 절차를 체계화할 것이므로 이 교재의 내용과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다만 새 통일방안이 나오면 곧 보완하거나 별책으로 간행·배포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2. 分斷의 原因과 責任

5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어 왔고, 근 1,300년(AD 668-1945) 동안 단일민족국가를 경영해 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분단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 분단의 원인, 과정 및 책임을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는 우리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역사인식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 하면, 분단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는 우리 통일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고, 통일조국의 미래상도 바르게 그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분단의 심화과정을 조명하는 시각에서 1945년의 국토분단, 1948년의 정치적 분단, 그리고 1950년이래의 민족분단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가. 國土分斷의 原因²⁾과 유형

2) 국토분단의 원인에 관하여는 「남북대화백서」(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88) pp. 9~16 참조

1945년 8월15일의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戰勝國인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북위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점령한 데서 비롯되었다.

1945년 8월9일, 소련의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 군사행동의 개시는 미국정부로 하여금 미·소 양군이 서로 만나는 선을 어디에 劃定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케 한다. 미국에서도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야심과 기도를 간파한 일부 외교관들은 극동지역에서의 미군의 군사행동을 가속화하여 최소한 한반도 전역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함으로써 소련군의 한반도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소련군이 對口參戰과 함께 북한의 동북방면으로 진입하고 있을 때, 미군은 겨우 沖繩 근해에 머물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정부는 8월11일, 육군성의 「본스틸」대령과 「리스크」³⁾대령의 건의를 받아들여 38°선을 경계로 한 미·소양군의 한반도 진주와 지역내 일본군의 항복 접수라는 안을 채택하고, 이를 8월13일, 영·중·소의 3국 정부에 통보하여 동의를 받는 한편, 8월15일에는 이를 일반 명령 제1호로써 「맥아더」사령부에 하달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근래 공개된 미국무성의 비밀문서에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우리 국토의 분단은 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제권력정치의 횡포에서 비롯되었다. 흔히 우리의 분단유형⁴⁾을 「국제형 분단」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 본스틸 대령은 후일 주한 UN 군사령관, 리스크대령은 미국 국무장관을 역임하였다.

4) 분단유형의 구분에 있어서 통설은 중국과 월남을 국내형, 우리나라와 독일을 국제형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8·15광복 이후 좌우대결의 內爭的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복합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소수설)도 있다. 그러나 남북분단은 원천적으로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는 국제권력정치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국제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⁵⁾으로 묘사하면서, 분단의 책임이 마치 미국에게만 있고, 미국이 한반도 통일의 기본적 장애라고 단정하는 학원가의 일부 反知性的 움직임은 진실을 이데올로기에 예속시킨 역사의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남북분단의 근본적인 원인이 약소민족의 권익을 도외시한 강대국들의 자의적 전후처리과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의 분단에 대한 책임을 바깥 세계에 대해서 물을 수만은 없다. 왜냐 하면, 우리는 자주·독립역량이 부족하였기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國權을 빼앗겼고, 이것이 국토분단의 遠因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광복 이후의 분단상황에서도 우리는 민족역량과 통일역량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통일의 기회를 잃고 정치적 분단을 자아냈던 면도 있었다. 우리와 같은 시기에 미·소·영·불 등 4대국의 점령하에 놓였던 오스트리아는 좌우익 정치세력들이 연합하고 제휴하여 결집된 민족역량으로써 외세의 간여를 배제하고 통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마침내는 외군을 철수시키고 1955년에는 자유민주체제로 중립화통일을 실현시켰는데, 이는 우리의 분단심화과정과 견주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 政治的 分斷의 과정⁶⁾과 正統性

남북의 정치적 분단에 관하여는 정부수립(출범) 시기의 先後(1945년 8월 15일과 9월 9일)만을 놓고, 그 책임과 정통성의 문제를 그릇 판

5) 그 근거는 미·소 군정당국의 포고문 문맥에서 왜곡한 것인데, 소련군은 공산당의 혁명무력(정치군대)으로서 정치선동적 수사를 사용하였는데 반해서 정치성이 없는 미군은 군사행정적 용어로 규제사항을 포고한 것을 놓고, 일본의 좌익계 학자들이 왜곡 평가한 문건을 운동권 학생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6) 정치적분단의 과정에 관해서는 앞의 「남북대화백서」pp.17~21 참조

단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소련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아래 북한지역에 공산정권이 사실상 먼저 수립되었다는 것은 정치적 분단의 전개과정이 입증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1945년 8월9일의 대일참전과 동시에 북한지역에 진입한 소련군은 8월24일에는 평양에 입성하게 된다. 그들은 사전계획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산국가를 세우는 작업을 치밀하게 추진하여 나갔다.

소련군이 처음 평양에 입성하였을 때, 북한지역의 행정권은 이미 민족진영 인사들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인수해 놓고 있었다. 기독교 민주당 당수 曹晩植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익인사 18명과 국내과 공산주의자 2명으로 구성된 「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지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소련 군정당국은 8월26일에 이 조직을 같은 수의 좌우익 인사로 구성하는 「인민정치위원회」로 강제 개편케 하여 예속시켰다.

소련 군정당국은 9월14일, 최초의 포고문을 통해, 군정의 목표를 ① 근로자·농민·산업노동자 및 日帝에 항거한 인사들을 대표하는 정부의 조속한 수립 ② 농민을 위한 토지분배 ③ 노동자위원회 등에 의한 敵産 산업시설의 접수 ④ 친일분자에 대한 즉각적 숙청 ⑤ 모든 교육·문화시설의 공유화 등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산체제의 수립과 비공산주의자에 대한 전면적 숙청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들은 10월28일에는 북한지역 5개도 「인민정치위원회」를 통합하여 「5도행정국」으로 개칭하고, 1946년 2월8일에는 金日成을 위원장으로 한 실질적 공산정치체제를 갖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북한에서의 단독정권을 세우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앞서, 소련 군정당국은 1945년 10월, 평양에서 「북조선 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를 열게 하여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설

치케 하였는데, 이 때 대부분의 참석자들에게 낯선 김일성을 처음 소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이 「분국」을 「북조선공산당」으로 개편하면서 김일성을 당의 「책임비서」(당수)로 선임케 하여 당권을 장악하게 만들었다. 당시, 북한내의 공산주의자들은 국내파, 연안(중국)파, 소련파로 나뉘고, 국내파에는 북한파와 남한파, 소련파에는 순수 소련파와 김일성을 위시한 갑산파가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소련은 북한지역의 공산화를 위한 전위세력으로서 비록 생소하지만 이용가치가 있는 갑산파를 택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날 북한체제를 소련의 「괴뢰정권」이라고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북조선공산당」은 1946년 8월에 「신민당」을 흡수하여 「북조선로동당」으로 개칭하게 된다.

이어서, 1946년 12월에는 「지방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947년 2월17일에는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의 구성과 함께 정부편제를 갖춘 「중앙인민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와 함께, 토지개혁, 공공 및 산업시설의 국유화, 1개년 경제계획의 추진 등 국가계획 차원의 조치들이 펼쳐져서, 1946년말 이전에 이미 사실상의 단독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이후, 북한에서 전개된 정권수립과 관련한 요식적 절차들은 다음과 같다.

1947. 2. 17 ; 최고인민회의의 구성 및 중앙인민위원회 발족

1947. 6. 14 ;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명칭의 단독정권 수립 방침 공표

1947. 11월 ; 헌법 기초에 착수(1948. 4월 초안 채택)

1948. 1. 23 ; 소련군사령관, UN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총선거 감시 협조요청 거부(공문회송)

1948. 3. 25 ; 북로당, 김구·김규식의 남북정치협상회의 수락

1948. 4. 19 ; 평양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 (군중대회를 열어 남측 대표를 내빈취급)

1948. 8. 25 ; 남한지역 출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총선거 실시를 날조 주장(572명 중 360명 선출 주장)

1948. 9. 9 ; 공산정권 출범

한편, 미군정하의 남한지역에서도 북한 지역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 진전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

1946년 2월에 군정청 자문기관으로 「조선민주의원」을 구성한 바 있는 군정당국은 1946년 12월에는 이를 「과도입법의원」으로 개편하였다. 이 때, 남한지역의 좌익세력은 북의 지령에 따라 그 선거를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마침내 군정당국은 좌익계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1946년 10월에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하고 군정청의 시책에 대항하는 비합법적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우익의 민족진영 인사들 사이에도 내부분열이 시작되었다. 소련의 기도를 간파한 李承晩 중심의 우익진영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1946년 12월에 이승만이 渡美하여 朝野 요로를 상대로 정부수립을 위한 지원을 호소하였는데, 김구·김규식 등 臨政세력은 單政수립에 반대하여 이승만과 노선을 달리하였던 것이다.

미군정당국은 1947년초까지도 4개국 신탁통치안(1945. 12. 16-20,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옹호하였으나, 우리의 「과도입법의원」은 1947년 1월20일에 신탁통치 거부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같은 해 10월에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내 결렬되자 미국정부와 군정당국도 마침내 신탁통치를 단념하고 한국인에 의한 독립정부 수립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UN에서 다루기로 결정

하고, 1947년 9월17일, 이를 UN 총회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침내 UN 총회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41, 반대 6, 기권 7로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였고, 1947년 11월14일에는 ① 1948년 3월31일 이전에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UN 감시하의 총선거를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여 토착인구비례 원칙에 입각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로 하여금 독립된 통일정부를 수립케 한다 ② 정부 수립후 모든 외군을 철수시킨다 ③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UN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43, 반대9, 기권 6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승만 중심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측은 환영하였으나, 김구 등 임정세력은 국토의 영구분단 위험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면서 남북협상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함으로써 우익진영 내의 진통이 계속되었다.

이런 연유로 1948년 3월8일, 김구·김규식은 「북조선로동당」에 대해 통일정부 수립을 협상하기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였고, 북한측이 3월25일에 이를 수락함으로써, 4월19일에 평양에서 동회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는 김구 등이 의도하고 제의했던 협상회의가 아니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이 회의를 대규모 정치선전장으로 꾸며 놓고, 미리 준비한 각본에 따라 일방적 정치연설로 진행시켰고, 남측인사들을 내빈이나 방청객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들 일행은 失意를 안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1948년 1월8일 내한한 「UN 한국임시위원단」은 1월12일에, UN 총회의 결의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감시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위원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소련군사령관과 만나겠다는 서한을 보냈으나, 소련 군정당국은 이 서한을 접수도 하지 않은 채 1월23일 반송함으로써 북한방문이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UN 소총회는 2월26일, “UN 한국임시위원단은 한반도

전역을 통한 선거 감시에 임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 감시에 임해야 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이른바 「선거감시가능지역내 선거」의 길이 열렸다.

마침내, 1948년 5월10일에 남한지역에서 UN 감시하의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유권자의 80%가 자진 등록하고 그중 92.5%가 투표에 참가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제헌국회를 구성하였고, 여기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15일에 수립·선포되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민족사적 法統性面에서 뿐 아니라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호 및 건국이념 등 민족사의 계승, 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UN 감시하의 총선, UN의 유일합법정부 승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15일, 통일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①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한반도에 걸쳐 주권을 가지는 유일합법정부임을 선언하고, ②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한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에 공식으로 남겨둔 100석을 채우도록 촉구하며, ③ 북한의 수복은 북한동포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음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민족사적 정통성⁷⁾과 법통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民族分斷의 實相과 책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은 지금 얼마나 달라져 가고 있는가. 민족이란 한 핏줄을 이어받은 血緣공동체이다. 이 혈연성만이 지

7)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건국이념(3·1독립정신)을 규정한 헌법 前文에 잘 나타나 있다.

금 남북으로 단절된 겨레의 명맥을 이어주고 있을 뿐이다.

민족이란 오랜 세월, 같은 생활공간 속에서 생을 영위해 온 地緣 공동체이다. 그러나 우리 겨레는 40여년 동안, 헤어진 혈육간에도 편지 한 장 주고받지 못하는 격리된 생활공간에서 살아왔으니 지연성은 희박해 지고 있다.

민족이란 같은 뿌리를 가지는 역사공동체이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민족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쪽에는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꾸며놓은 계급혁명투쟁사만 있으니 역사를 공유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다.

민족이란 같은 말과 글을 쓰는 언어공동체이다. 그러나 남쪽에는 표준말이 있는데 북쪽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각색된 「문화어」가 있으니 언어의 이질성도 차츰 심화되고 있다.

민족이란 같은 문화전통과 미풍양속을 이어가는 문화공동체이다. 그러나 史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남북이기 때문에 민족문화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 가고 있다.

이상이 유형적인 민족형성요소라면, 한민족을 같은 민족으로 엮어 놓는 끈, 즉 무형적인 민족적 유대가 강해야 민족의 일체성이 유지된다. 이것이 곧 동포애와 운명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의식이다. 그런데 남북의 우리 겨레의 가슴에는 반목·불신·적대감이 누적되어 있다.

이와같은 민족이질화의 원인과 책임은 분단의 장기화에서 비롯된 자연발생적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북한체제의 이단적인 이데올로기와 노선, 그 연장선상에서 펼쳐진 인위적인 민족 이질화 정책에 있다. 동족상잔의 전쟁의 도발, 계속된 대남침투와 파괴활동, 폐쇄체제의 유지, 반민족적 정치교육 등이 오늘의 비극적인 이질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난날과 같은 단절과 대결구조속에서 동족끼리 반목·불

신하고 경쟁하는 데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민족의 자존과 위신을 서로 훼손하는 민족자해행위가 계속된다면 민족의 영원한 분단과 민족사의 단절 위험성이 크다. 다만, 외형상의 이질성의 심화현상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와 독특한 문화전통이라는 민족의 깊은 뿌리가 아직도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잠재적 復元力으로서 민족의식의 내면에 작용하고 있다는 데서 민족 재결합을 밝게 해주고 있을 뿐이다.

3. 統一의 當爲性和 역사적 의의

가. 통일 意味

우리의 통일은 분단된 조국과 민족의 재통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 개 이상의 국가사회가 하나로 되는 統合(Integration)이나 統一(Unification)이 아니라 5천년의 유구한 민족사와 1,300년의 통일사를 이어온 단일민족이 다시 통일하려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再統一(Reunification)⁸⁾ 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재통일」은 복고적인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진운과 궤를 같이할 미래 지향적인 창조적 통일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단일주권국가 곧 단일민족국가의 완성에 있다. 이 목표로서의 통일을 법률적·정치적 시각에서 보면 “하나의 헌법 밑에 하나의 정부가 한반도에 들어선 상태” 즉, 정치체제적 통일이 이룩된 국가적 통일이라고 할 수 있고, 민족적 시각에서 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민족공동

8) 분단국 재통일의 의미에 관해서는 李相禹, “남북한 통일정책의 논리구조”, 「민족화합 민주통일론 I」(국토통일원, 1982) p. 61이하 참조

체가 형성된 상태”, 즉 민족적 통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국가적 통일이든, 민족적 통일이든, 「민족」은 우리 통일문제의 알파(α)인 동시에 오메가(Ω)이다. 우리가 원래 같은 민족이 아니었거나,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가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통일문제 자체가 아예 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통일의 출발점, 통합의 공통분모는 5천년 동안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같은 겨레였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통일의 궁극적 목적도 민족으로 귀착된다. 민족을 위한 통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 그 자체가 至上의 목표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번영과 자손만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건이며, 따라서 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 ‘민족을 위한 통일’ 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어떤 통일이어야 하느냐 하는 통일의 과정과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한정하게 되고, 따라서 어떤 방법에 의한 통일,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통일만 하면 된다는 統一至上論은 배제되어야 한다.

더우기, 조국의 재통일은 곧 그 성원인 민족의 재결합을 의미하는데, 이 민족통합을 위해서는 40여년의 분단·대결구조 속에서 누적된 동족간의 반목·불신과 이질화가 통일의 과정에서 해소되어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화합을 실현하고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민족의 내면적 통일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국가(체제)적 통일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목표로서의 통일 못지 않게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당면문제로서 제기된다.

남북한간의 적대관계·대결관계가 동반자관계로 개선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고, 이것이 민족의 공동번영과 일체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경제적 民族共同體로 발전한다면, 비록 “목표로서의

통일”은 완성했다고 볼 수 없지만, 분단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고 사실상의 통일을 이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민족의 내면적 통합, 즉 민족통일이 없는 조국의 통일은 일방의 힘에 의한 무력통일이나 수복통일인 경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토서는 상상할 수도 없다.

나. 통일의 當爲性和 必要性

“우리가 왜 통일해야 하느냐”를 설명해야 하는 것 자체가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의 이질화와 민족의식의 쇠퇴현상을 반증하는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요, 하나여야 할 「韓民族」이 인위적으로 남북으로 갈라졌으니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민족의 원상회복인 동시에 有機體로서의 민족의 생명력을 되찾는 당위적인 일이다.

첫째, 통일은 민족 자존의 길이다. 우리는 통일하여 민족의 영원한 生存과 自尊을 지키고 민족사를 연면하게 이어 나가야 한다. 조상들이 어떻게 지켜온 단일민족이며, 어떻게 가꾸어 우리에게 물려준 역사와 문화였던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 자손만대에 이를 물려 주어야 하는 일은 엄숙한 민족사적 소명이다.

오늘의 분단으로 인한 긴장, 전쟁재발 위험성, 민족이질성의 심화현상 등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분단과 민족사의 단절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한민족의 영원한 생존과 자존을 지키는 길은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있다.

둘째, 통일은 민족 번영의 길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그저 떨어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팎에서 반목·대립하면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민족의 권위와 위신을 서로 훼손하는 민족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남북을 합쳐도 국토와 부존자원이 부

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둘로 갈라져서 동족끼리 대결하는 데 민족의 발전역량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도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공존공영의 길을 넓혀 가고 있는데, 우리는 1950년대의 동서냉전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민족자해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니 민족적 자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의 영원한 번영과 복지의 길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서만 찾을 수 있다.

셋째, 통일은 민족의 자유를 신장하는 길이다. 분단은 우리 민족의 자유를 안팎에서 제약하고 있다.

민족내부적 측면에서 보면, ① 혈육간 이산의 아픔 ② 전쟁재발위협성에서 오는 공포 ③ 남북 대치상태에서 비롯된 기본권의 제약이나 유보 ④ 복지정책과 재정의 제약 ⑤ 북한동포의 참담한 생활상과 資質 및 기회의 逸失 등 민족의 자유는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국제적 측면에서도 남북의 분단과 대결구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주변강대국들의 직·간접적인 간여와 영향을 받아야 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과당경쟁으로 민족의 自尊과 권위와 자유를 훼손 당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자유 신장의 길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있다.

다. 平和統一의 역사적 의미

외세에 의한 국토분단과 상극적인 정치이념에 따른 정치적 분단, 40여년이라는 단절의 장기화 속에서 축적된 동족간의 반목·불신·적대관계, 민족이질화 등 비극적인 분단현실을 민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평화적으로 극복하여, 민족의 생존·번영·자유를 보장하고 민족사의 연면한 계승발전을 기약하는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것

은 곧 통일의 민족사적 의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스스로 밝혀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적 통일은 민족사적 의의와 함께 세계사와 인류문화사적으로도 큰 뜻이 있다.

우리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인구 6천만이 넘는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단일민족국가가 된다. 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사회적으로 이상적인 규모의 민족공동체인 통일국가를 이룰 뿐 아니라,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바탕으로 이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선진문화대국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뛰어난 민족적 자질과 창의로서 과학기술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우리의 평화통일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분쟁의 화약고 같았던 한반도를 세계평화의 寶庫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지향에 비추어볼 때, 평화적으로 통일된 우리 조국은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는 강대국들이 넘보고 탐내는 국제권력정치의 객체에 불과하지만, 힘이 있으면 오히려 강대국의 利害를 조정하고 平衡 錘的 역할을 하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문명은 에게海에서 출발하여 지중해와 대서양을 거쳐 바야흐로 태평양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조국은 이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어 인류의 문화와 문명에 당당히 공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양의 물질문명과 동양의 정신문화가 융합하는 새로운 문화·문명만이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역사적 進運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통일된 한민족은 그 자질과 능력으로써 이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한 분단을 자주적으로 극복하고, 동서이념의 상극성과 동서진영간의 對峙關係를 해소하여 민족의 재통일을 실현한다는

자체가 세계사의 신기록이 되고 인류문명에 찬연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우리 평화통일이 민족사적인 의의와 함께 인류문화사적 의의도 큰 이유이다.

4. 우리 統一問題의 本質과 特性

가. 우리 통일문제의 구조적 특성

우리 통일문제는 당위적인 면에서나 논리상으로는 한반도의 주역인 남북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풀어야 할 민족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반도문제는 본시 국제문제였다. 분단유형도 우리 민족의 意思에 반한 국제형 분단이었으며, 미·소 양극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휴전선이 동서 양진영의 경계선이 되고, 남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상극적인 정치이념과 체제의 前哨的 對峙場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UN의 연례적 논쟁대상이 되었던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문제는 엄연한 국제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세계의 지배질서가 차츰 변하기 시작하였다. EC 圈의 浮上, 일본과 중국의 국제무대 등장, 비동맹권의 대두 등으로 미·소 양극체제는 多極體制로 바뀌고, 이 과정에서 동서간의 냉전구조도 비록 기복은 있었지만 화해구조로 전환하였으며, 이런 추세 속에서 모든 나라는 이데올로기나 진영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대외정책을 펴게 되었다.

한반도의 주변정세도 우리 민족만이 1950년대의 냉전구조 속에서 생긴 역사적 유물을 안고 같은 민족끼리 반목·대결하는 데 역량을

낭비하고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을 뿐, 우리 국토와 민족의 오늘의 분단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周邊4強은 1970년대 이래 이념 및 체제의 차이를 뛰어 넘어 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 공존공영의 길을 걷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민족적 자각과 주체적 역량의 伸張과 맞물려서 우리 통일문제를 차츰 민족내부문제화하는 데 작용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 우리 민족의 自決영역이 차츰 넓어져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발전추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통일문제가 결코 민족내부문제만은 아니다. 오늘날 주변4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공통적인 대한반도정책은 세력균형에 의한 동북아의 평화 확보와 안정 속의 실리추구면에서 남북한의 평화공존이라는 現狀固着化에 있는 것이지, 현상타파를 의미하는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주변4강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희망하는듯이 공표하여 왔지만, 外交辭令的 修辭에도 불구하고 국제권력정치의 속성은 분할통치 (Devide & Rule)에 있고, 한반도의 정치체제적인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주변4강의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하고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통일문제는 국제문제로서의 성격이 상존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 통일문제의 특성을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고 규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우리 통일문제는 세 가지 변수, 다시 말해서 남북한과 국제환경이라는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성패와 시기가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체적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국제환경이라는 변수는 다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制御와 조성의 대상이라는 견지에서 결코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우기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먼저 남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하여 결집된 민족역량으로써 함께 추진하였을 때 빠르고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자존의 차원에서 소망스런 일이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궤방하는 상황에서는 차선책으로서 우리 일방의 힘만으로도 국제적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이 국제환경이 북한의 노선과 태도의 변화에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평화통일외교정책, 그 중에서도 북한의 배후지원세력이었던 소련·중국·동구공산권과의 실질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와 평화적 통일의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우리 北方政策⁹⁾의 과제이다.

나. 統一로 가는 길

우리 통일문제는 본질적으로 평화 실현의 문제이다. 우리 통일문제는 평화통일만이 민족의 생존·번영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본질상의 이유에서나, 그 구조적 특성 때문에 평화적인 환경속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올바르게 풀 수 있다는 현실인식의 면에서나 평화적 통일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없이는 민족의 평화도, 동북아의 평화도, 나아가서는 세계의 항구적 평화도 있을 수가 없다.

한반도의 평화가 없는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평화적

9) 「북방정책」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말 서독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대소 및 동구권 정책)에 상응한 용어개념으로서, 이범석 외무부장관이 국방대학원 강의(1983년도)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6·23선언중 공산권에 대한 상호문화개방을 촉구한 것과 4대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북방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통일이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도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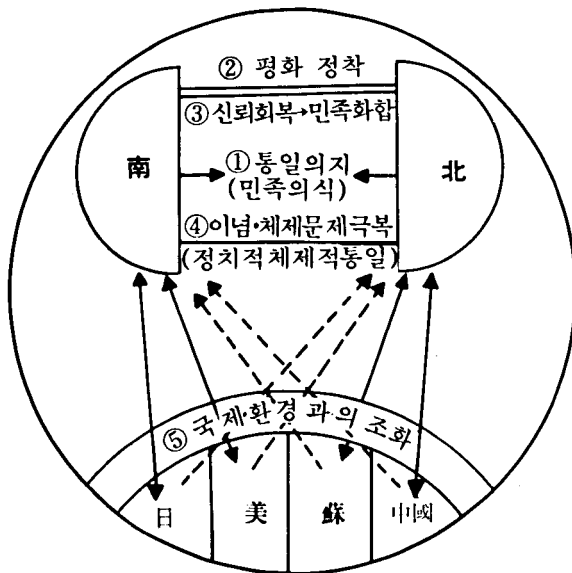
한민족의 화해와 재결합이 없는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평화적 통일 없는 민족의 평화와 번영도 생각할 수가 없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통일 없는 동북아의 평화도 기대 할 수가 없다.

이렇듯, 우리 통일문제는, 통일의 과정에서는 환경으로서의 평화와 수단으로서의 평화를 필요로 하고, 통일의 결과에서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를 실현하는 평화 실현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表 1>의 「평화통일 접근 모형」에 따라 살펴 보기로 한다.

<表 1> 平和統一接近模型



① 통일의 원동력은 민족공동체의식에서 비롯되는 統一意志에 있다. 이 민족의식과 통일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통일을 추진하는 힘이 강하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통일의지는 분단의 장기화와 민족이질성의 심화에 따라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희박해 질 수 밖에 없다. 이 민족공동체의식과 통일의지는 세대교체과정에서 올바르게 傳授되고 교육을 통하여 복돋아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②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남북한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일은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평화적 통일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 평화정착의 과제는 1차적으로는 남북한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당국간에 평화에 대한 합의와 제도적인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고, 국제적 보장장치를 곁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민족의 자존과 권익이 손상되지 않는 형식과 내용이 보장될 수만 있다면, 국제적 보장장치가 선행되든, 남북한과 주변4강이 공동으로 마련하든,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우리 정부가 1970년대에 「남북한 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하였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을 제의한 것은 이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반도의 주역인 남북한 당사자간에 먼저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통일될 때까지의 과도조치로서 남북한의 UN 동시가입과 4대국 교차승인을 평화통일의교정책으로 추진해 온 이유도 이것이 곧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1987년 8월 3일, 「남북 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하면서 그 의제로서 1)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문제, 2) UN 동시가입문제, 3) 4대국교차승인 실현문제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바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들이기 때문이다.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 10월 18일의 UN 총회에서 대통령 연설을 통해, 미국·소련·중국·일본과 남북한이 참가하는 「동북아평화협회의」의 창설을 제창하였는데, 이는 한반도의 주역과 오늘의 분단에 책임이 있는 주변4강이 공동으로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③ 위와 같은 남북한의 관계정상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기반 위에서 남북간의 사회개방과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족적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번영을 실현시켜야 한다. 민족의 일체성을 되찾는 민족통합이 실현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향한 기능적 통합¹⁰⁾이 성취된다면, 이는 정치체제적 통일은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내면적 통일, 바꾸어 말해서 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체가 실현된 사실상의 통일이 이룩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민족의 내면적 통합이 국가체제적 통일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④ 국가(체제)적 통일, 즉 정치적 민족공동체까지 완성하려면 정치이념과 체제의 차이,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국가형태와 정치체제를 선택하느냐 하는 難題를 풀어야 한다.

이 통일조국의 정치이념 및 체제를 선택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死活的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왜 통일하려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어떤 국가형태, 어떤 정치체제로 통일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해진다. 민족주의에 바탕한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¹¹⁾이어야 하고, 하나의 현

10) 국가통합이론에 관해서는 이상우, “기능주의적 통합이론과 남북한관계 개선방안”, 「한국의 안보환경 제1집」(서울, 서향각, 1977) P.545이하 참조

11)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은 우리나라 國是이다. 제131회 정기국회에서 국무총리는 체제문제·통일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국시를 헌법규정에 의거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1986. 10. 23)

—우리나라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특정집단이나 계급이 지배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자

법 밑에 단일정부를 가지는 민주복지국가이어야 할 것이다.

이 이념 및 체제의 문제는 남북한 사회를 개방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족성원의 총의로써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또하나의 방법으로서, 남북한의 당국 및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통일협의기구에서 통일조국을 설계하는 과정, 즉 통일헌법의 기초과정에서 이념 및 체제를 협의·결정하여 6천만 민족의 뜻을 묻는 국민투표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적 예지로써 새로운 이념과 체제를 창출하든, 정치협상을 통해 절충하든, 통일조국의 미래상은 민족성원의 자유와 평등과 복지와 자존이 지켜지고 창달될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고 볼 때, 그것은 곧 민족주의·자유민주주의, 국제적 평화주의, 그리고 복지주의를 이념적 지표로 하는 정치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⑤ 국제환경적 측면에서 평화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 통일문제는 동북아에서의 주변4강의 본질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방법과 형태로는 풀어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방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통일은 국제적 평화구조의 테두리 속에서 세계적 진문에 이바지하는 평화이념과 선린우호의 대외정책을 펴는 통일조국의 설계도(미래상)를 제시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때만이 국제적 지원과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통일조국은 주변국가에 위협이 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1970년대 이래, 對공산권의외교를 비롯한 비동맹권 외교를 적극화하고,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여 동서화합의 평화제전으

유민주주의체제를 이룩하는 것이고, 둘째,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며, 셋째,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체제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로 승화시킨 것이나, UN 동시가입과 4대국교차승인 같은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펴 온 것도 모두 국제적 평화통일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표 1〉의 모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과 국제환경의 상호작용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이 선행되면, 결집된 민족역량으로써 국제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 일방의 힘으로 조성한 국제환경이 북한의 개방과 노선 수정에 영향을 주어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에 촉매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통일정책과 평화통일외교정책은 全方位의 연계정책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으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이념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좇아야 할 통일의 원칙이 되고, 통일조국의 位相과 관련해서는 이념적 지표가 되는 연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表 2〉 이념의 연관표

구분 이념	통일과정상의 기능(원칙)	통일조국의 미래상(이념지표)
민족(자주)	민족주체(자주)	민족주의
평화	평화적 방법	(국제) 평화주의
민주	민주적 절차	(자유) 민주주의
복지	민족공동번영	복지주의

다. 統一論議의 효용과 한계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정치적 민주발전의 道程에서 통일논의도 자유화·개방화되고 있다. 이는 통일이 특정정권이나 집단의 소관사

항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사활적 문제이므로 당연히 민족 성원의 슬기와 힘이 결집되어야 하고 민족적 참여와 聲援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당위적이고도 소망스런 일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예지와 역량이 상향식으로 수렴된 통일정책만이 정통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고, 국민적 참여와 합의기반 위에서 형성된 정통성있는 통일정책이라야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얻어 힘있게 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체제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을 왜곡하고, 유언비어를 자유롭게 유포하고, 퇴폐풍조를 조성하여 國基를 흔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창의와 참여를 극대화하고, 비판과 견제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듯이, 통일논의의 자유화·개방화·활성화도 통일에 대한 국론을 분열하거나 통일역량을 약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을 앞당기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통일논의는 진실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되,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즉, 통일논의는 진실성이 있어야 하고, 합목적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실현성이 있어야 값어치 있는 통일논의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통일논의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통일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범통성을 이어온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수복해야 한다는 「수복통일론」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자와의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이 무모하고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면서 「무력통일론」을 주장하는 강경론도 있다.

종교계의 일각에서는 북한에 성서를 보내고 복음을 전파하여 북한 지역의 잠재적 종교세력을 소생시키는 길만이 평화통일의 첩경이라고 보는 「복음화 통일론」을 제창하기도 하고, 학계의 일각에서는 남

북한이 양진영에서 이탈하고, 한반도에 힘의 진공상태를 만들어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중립화통일론」¹²⁾과, 남북한이 합의하고 주변 4강이 보장하는 중립국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중립화통일론」이 같은 이름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합목적성이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통일논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리 환상적이고 공리공론적인 통일논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논의에 그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論」을 실천이 수반되는 운동으로 행동화하거나, 국민적 합의기반 위에 형성된 통일정책에 역행하였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가령, 「북진통일론」이 통일논의에 그쳤을 때는 대북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라도 있지만, 실제 무장력을 조직하여 실행한다면 나라의 기틀과 기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운동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북돋우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국민적 슬기와 힘을 결집하며,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국민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집단이나 계층만이 통일의 주체가 되고, 그들만이 통일을 주도하겠다면, 보다 많은 국민과 국민의 受任기관인 정부까지도 통일방해세력으로 독단하여 배제하려고 한다든지, 이미 국민적 합의기반 위에서 추진되는 통일정책에 어긋나는 통일실천운동을 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른바 「민중통일론」¹³⁾에 바탕한 「민족·민주·민중통일운동」도 그 범주에 속한다.

그에 따르면, 통일을 「반외세 민족해방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계층과 소외계층으로 양분하여, 노동자·농민·도시

12) “중립화 통일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문답식 통일문제 해설」(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9) pp. 42~45참조

13) 민중통일론에 관해서는 「통일대화의 광장」(국토통일원, 1985) p. 78이하 참조

빈민인 이른바 基層民衆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민중통일론에서는 기층민중을 통일주도세력이라고 하고, 그에 동조하는 지식인·학생·중산층 등을 보조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합하여 통일추진세력인 민중이라고 한다. 반면에 통일방해세력으로는 정부·집권층·고급관료·자본가·부농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계급구조적 양분법에 따라 민중의 의식화를 통하여 민중의 이익이 배제된 하부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일을 당면실천과제라고 제시한 「민중통일론」은 사실은 계급투쟁의 논리를 「민족·민주·민중통일」이라는 修飾語로 포장한 반체제운동임을 알 수 있다.

첫째, 「민중통일론」은 통일의 궁극적 목적에 어긋나는 반민족·반평화운동이다. 통일은 국가체제적 통일에 앞서 민족의 일체성 회복, 즉 민족통합을 실현하는, 민족에 의한 민족을 위한 통일이어야 하는데, 특정계급에 의한 특정계급을 위한 통일은 반민족적 통일이며, 북한의 동포와도 화해하고 화합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하는데 안에서 계급간의 투쟁을 내세우는 것도 반평화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과업과 같은 민족적 대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수임기관이고 대표기관인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데, 이를 통일방해세력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와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신성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자유민주체제에서 국민을 계급구조로 양분한다는 것은 허구일 뿐 아니라 체제를 부정하는 일이다. 왜냐 하면, 자유민주체제는 治者와 被治者, 기업가와 근로자,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自同性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늘 의 지배자가 내일에는 피지배자가 될 수 있고, 오늘 의 근로자가 내일에는 기업주도 될 수 있다. 다스리는 힘도 다스림을 받는 국민의

자율과 자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봉건적 신분제나 공산주의식 계급구조는 자유민주체제에서는 實在하지도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더우기, 북한의 통일선전논리가 바로 “남조선의 해방”이고, 이른바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를 선전·선동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 「민중통일론」은 북한의 통일선전술에 이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과, 그에 동조하는 결과가 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5. 南北韓 統一政策의 변천과정

한국은 분단 이래 조국과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試圖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 수립이전에는 비록 자주적 통일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민족진영이 주도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시도하였고, UN의 결의를 얻어 전한반도에서의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정부수립 이후에도 평화통일은 국가적 기본목표로 채택되어 역대 정부는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한 대남혁명전략 아래 和戰양면전술을 구사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는 골육상쟁의 전쟁, 국토의 초토화, 반목과 불신의 심화, 민족이질화 등 평화와 평화적 통일의 저해요인만을 누적시켰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기초와 대남전술의 변천에 관하여는 「공산주의 혁명전략전술」편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고, 통일노선과 관련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상술하겠으므로 이 장에서는 우리 한국측의 통일정책의 변천과정만을 연대별 특성을 중심으로 간추리고자 한다.

가. 1960년대말까지의 名分論的 統一試圖

분단이래 1960년대말까지의 우리 통일접근 시도의 특징은 ① 자주적 통일역량의 부족(1940년대) ② UN의 권능에 기대는 依他的 통일노력(1950년대) ③ 통일에 대비한 국력배양(1960년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한 마디로 “명분을 앞세운 소극적인 통일접근자세”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통일노력 속에는 다음과 같은 史實들이 포함된다.

첫째, 광복(분단) 이후 정부 수립까지는 민족진영이 주도하여 미국의 도움으로 얻어낸 「UN의 統韓決議」에 따라 UN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의 시도와 김구·김규식 등 臨政勢力이 남북정치협상회의를 북측에 제의하여, 비록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책략으로 실패하였지만 정치적 분단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남북협상 노력이 있었다.

둘째, 정부 수립과 함께 내외에 천명한 통일실현방안, 즉, ① 한국정부의 전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 선언, ② 선거가 유보된 북한지역의 민주적 선거를 통한 국회 의석(100석 유보)의 총원 촉구, ③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회복(수복)의 권리 주장 등을 내용으로 한 통일실현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범통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6·25남침에서 휴전후의 제네바회담 이전까지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창하였는데, 이는 북한공산집단의 전쟁도발을 응징하고 수복통일의 의지를 북돋기 위한 국민운동적 구호에 불과할 뿐, 평화적 수복통일이라는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넷째, 제네바회담 이후 5·16군사혁명 이전까지는 UN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정책기조로 하였다.

휴전협정 제4항에 따라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열린 고

위정치회담이 곧 제네바회담(1954년 4월~6월)이다. 이 회담에 참석한 卞榮泰 외무부장관은 「통일에 관한 14개항」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6개월 이내에 UN 감시하에 우리 헌법절차에 따른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 ②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의원수를 정하기 위한 UN 감시하의 국세조사, ③ UN 감시단원과 입후보자들의 이동 및 언론의 자유 보장, ④ 새 입법부에 의한 헌법 개정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효력 유지, ⑤ 선거일 1개월전까지 중공군의 완전 철수, ⑥ UN 군의 철수는 통일정부가 전한반도에 대한 완전통치를 실현하고 이를 UN이 확인할 때 완료할 것 등이다.

그러나 공산측은 UN의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면 거부하였다. 원래 공산측은 휴전협정을 재무장상을 위한 정비가간으로 이용하려던 것으로, 이 제네바회담도 그들의 정치선전장이 되었을 뿐이었다.

다섯째, 제2공화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이라는 제네바원칙을 따르게 되었다. 4·19혁명 이후 탄생한 민주당 정부는 1960년 8월에 발표한 외교시정방침에서 “UN의 결의를 존중하며 UN 감시하에 남북한을 통한 선거에 의한 統韓政策을 수행한다”고 천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통일에 관한 국론도 갈려 있었다. 북한의 대남위장평화공세가 적극화되고 「연방제」 통일방안이 나온 것도 이 때에 맞춘 것이다.

여섯째, 이런 국내외적 상황에서 5·16군사혁명이 일어났는데, 혁명정부가 취한 조치는 정국의 혼란, 반공태세의 약화, 감상적 통일 논의에서 비롯된 국론분열을 극복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민정이양으로 수립된 제3공화국 정부에 의해서도 그대로 계승되어 “先建設, 後統一”이라는 정책구호 아래 통일논의보다는 평화통일을 위한 힘을 기르는 「통일역량배양정

책」을 1960년대말까지 추진하였다.

나. 1970년대의 정책전환과 남북대화

한국정부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배양된 통일역량을 바탕으로, 북한체제를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자주적인 남북대화를 통하여 민족의 통일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정책전환과 「先 平和, 後 統一」이라는 현실적 정책기조 위에서 평화통일정책을 펴고 남북대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970년 8월15일,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광복 제25주년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무력적화 企圖의 포기가 평화통일의 선행조건임을 밝히면서 남북한의 어느 체제가 더 좋은 사회인가를 입증하기 위해 “개발과 건설과 창조를 향한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선언」¹⁴⁾을 공표하였다.

다음 해인 1971년 8월12일에는, 분단에 기인하는 민족의 고통을 인도적인 견지에서 해소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¹⁵⁾을 제의하였고, 1972년 7월4일에는 비공개 남북고위회담을 통해, ① 자주·평화·민족적대단결의 통일원칙 ② 상호 중상·비방 및 무력도발 중지 ③ 다방면적인 교류 ④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常設 ⑤ 남북조절위원회의 발족 등에 합의한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¹⁶⁾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벽에 부딪혔던 적십자회담의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이 남북적십자회담은 7차에 걸친 본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렸고, 남북조절위원회의 본회의도 3차례 열렸으나 1973년 8월28일에 북한측은 이른바 「金英柱성명」¹⁷⁾을 통해, 우리의

14) 박정희 대통령의 「8·15 선언」, 앞의 「남북대화백서」 p.445

15) 상계서 p.452

16) 상계서 p.54

17) 상계서 p.104

「6·23선언」을 영구분단책이라고 왜곡·비방하고 그 철회를 주장하면서 모든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6·23선언」은 1973년 6월23일에 공표된 대통령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¹⁸⁾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하여 ①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용인 ② 통일될 때까지 남북한의 UN 동시가입 ③ 정치이념과 체제가 다른 모든 나라(공산권 위시)에 대한 상호문호개방 등 현실적인 대외정책과 「선평화, 후통일」의 평화통일 정책기조를 내외에 선언한 것이다.

이어서, 1974년 1월18일에는 「남북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¹⁹⁾하였고, 같은해 8월15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집대성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²⁰⁾을 천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우리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푸는 길은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화합이라는 평화 실현의 바탕 위에서 정치적 통합까지 완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선평화, 후통일」의 평화통일 정책기조를 밝힌 것이다.

그 뒤,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의 對北 주요제외와 남북

18) 상계서 p.453

19) 상계서 p.457

20) 상계서 p.463

대화의 실현상황은 다음과 같다.

1978. 6. 23 ;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기구」구성 제의

1978. 8. 12 ; 「남북적십자총재 회담」제의

1979. 1. 19 ; 「남북한 당국 무조건 대화」제의

1979. 2. 17 ; 남북변칙대좌 [당국대표(남)와 정당·사회단체대표(북)간의 대좌 3회(79. 2. 17-3. 14)]

1979. 2. 27 ;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회의(79. 2. 27-3. 12, 4회)

1979. 7. 1 ; 「남북한 및 미국의 3당국 대표회의」제의

1980. 2. 6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80. 2. 6-8. 20, 10회)

위와 같은 1970년대의 평화통일노력은 북한측의 대남노선과 그에 따른 대화자세 때문에 회담 본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값진 교훈과 국익을 증진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이다.

첫째, 1960년대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한반도에서 조성된 긴장과 전쟁위기상황을 이 남북대화를 통해서 완화시킴으로써 전쟁재발을 예방할 수 있었다.

둘째, 분단 27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한간의 대화와 접촉의 길을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한의 실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상호 개방하여 남쪽의 발전상과 북쪽의 낙후상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당국이 도시건설, 주민의 의식주와 생활양식의 개선 등 일부 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도 민족적 시각에서 보면 의미있는 일이었다.

셋째, 우리로서도 공산주의자들의 대화전술을 실제 경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들의 이중적 의식구조, 즉 이른바 「공산주의적 새형의 인간상」의 허실을 파악함으로써 대북자신감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여는 관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끝으로, 국제사회에 우리 평화통일정책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 1980년대의 평화통일정책과 그 進展

1980년대 초에는 남북한이 각기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중반기에는 수재물자 授受를 계기로 닫혔던 남북 대화의 문이 12년만에 다시 열리고, 비록 기복은 있었지만 남북 대화의 폭(분야)이 넓어지고, 그 빈도도 높았다. 또한 남북한간에는 분 단이래 가장 빈도높은 통일관련제의를 교환하였고, 통일환경도 예측 이상의 변화를 보인 것이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 章에서는 1980년대의 평화통일정책과 그 진전상황중 제5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추진된 1987년말까지의 상황만을 간추리고, 제6공화국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1981년 1월1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① 남북 간 신뢰회복과 전쟁재발 방지 ②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의 계기 마련을 위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²¹⁾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1월19일, 金一(부주석·조국평화통일위원장)명의로 성명을 통해 이 「1·12제의」를 “두 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분열책동”이라고 거부하면서,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으로 ① 현정부의 퇴진과 聯共정권으로의 대체 ② 모든 정치범의 석방 ③ 반공관계법령의 폐지 및 반공기관·단체의 해체 ④ 「6·23선언」의 철회 ⑤ 주한미군의 철수 등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이어서 같은해 6월5일, 정부는 새로 발족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21) 상계서 p.472

개회식에서의 대통령 연설을 통해, 「1·12제의」 수락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측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²²⁾을 어디서든지 열 것을 제의하면서, 회담의 장소와 시기의 결정을 북한측에 일임하였다. 이 제의에서는 「頂上會談」이 실현되면 이미 제의한 상호방문 문제와 그동안 쌍방이 제시했던 통일방안 등 모든 문제를 협의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도 부정적이었다.

정부는 우리가 제의한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제시·협의하고자 미리 마련하였던 우리측의 통일방안, 즉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²³⁾을 1982년 1월22일, 국회에서의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서 내외에 천명하게 되었다.

이 통일방안은 분단조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자주적·평화적으로 극복하여 통일조국인 「통일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체계화한 것인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헌법」마련을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구성을 제의하고 있다.

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거래 전체의 자유의사가 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로서 「統一憲法」을 채택하고, 이 헌법에 따라 통일된 민족국가를 완성시키는 과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①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한 대표들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여, ② 이 협의기구에서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념을 추구하는 통일헌법안을 마련하고, ③ 이 헌법안을 남북한 전역에 걸친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확정·공표하며, ④ 확정된

22) 상계서 p.474

23) 상계서 p.481

통일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 총선거로 통일국회와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통일조국의 국호·정치이념·국내외정책의 기본방향·정부형태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절차 등은 「민족통일협의회의」가 구성되어 여기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가운데 토의·협의될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기구 밖에서 일방적인 선전의 소재를 삼는데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였다. 아울러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은 앞으로 「민족통일협의회의」가 구성되면 그 자리에서 제시할 것임을 밝히고, 북한측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구상한 통일헌법 초안을 이 협의기구에 내어놓고 상호 비교 검토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일안으로 만들자는 것도 제의하였다.

둘째, 「남북한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을 제의하였다.

앞에서 제의한 통일헌법 제정작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한간에 신뢰를 조성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될 때까지의 과도조치로 「남북한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그동안의 民族自害의이며 비정상적인 상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상호 민족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民族自愛的인 正常關係로 전환시킬 것을 함께 제의한 것이다.

이 「잠정협정」의 합의사항으로 제시한 7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쌍방은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② 쌍방은 분쟁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③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한다.

④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

⑤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역·교통·우편·통신·체육·학술·종교·문화·보도·보건·기술·환경보존 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⑥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이념·체제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 여러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⑦ 쌍방은 각료급 全權代表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측 관할영역에 주재하는 상대편 연락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셋째,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수락을 촉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고위대표간의 예비회담을 제의하였다.

민족의 현안문제와 통일문제의 실마리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쌍방의 최고통치책임자간의 회담에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으므로, 이 「정상회담」 수락을 촉구하면서, 이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쌍방 고위대표간의 예비회담

을 열 것도 제의한 것이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통일 3원칙(민족자결·민주·평화)의 제시 ② 통일조국의 미래상 제시 ③ 민주통일의 절차 제의 ④ 민족화합의 제도적 장치 마련 제의 ⑤ 정상회담 재촉구 등으로 간추릴 수가 있는데, 우리 평화통일정책과 관련한 특성으로서는 포용성·포괄성·현실성·일관성을 들 수 있다.

첫째, 이 「통일방안」은 남쪽의 일방적 주장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민족의 현안문제를 남북이 더불어 풀고, 통일조국을 더불어 설계하여 함께 추진하려는 호혜적·상호주의 정신에 바탕을 둔 包容的인 평화통일방안이다. 대화·협상의 場과 통일의 과정 및 절차인 容器만을 제시하고, 그 내용은 쌍방의 협의와 합의로써 채워나가는 것이 평화통일방안의 正體라고 볼 때, 이 포용성은 바로 우리 평화통일정책의 正體性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1970년대의 이른바 기능적·단계적 통일접근방법과는 달리, 평화실현문제(정치·군사), 민족화합의 실현문제(경제·사회·문화), 정치체제적 통일문제(정치) 등 통일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현안문제화한 포괄성을 들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정치적이고 포괄적인 통일접근방법이 없다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통일방안은 합리성·포괄성 등 명분 못지 않게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앞의 「포용성」에서 언급했듯이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협상을 통해서 민족의 현안문제와 통일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는 길을 제시한 이 「통일방안」의 특성으로 현실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1970년대 이래의 기존 통일정책 기초, 선언, 대북제의 등을 일관성있게 집대성한 것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다.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의 제1항(평화정착)과 제2항(신뢰회복)을 보다 포괄적인 「기본관계 잠정협정」으로 발전시키고, 동 제3항(총선 통일)

을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통일로 체계화하였으며, 「남북 불가침협정」 제의(74.1.18)와 「6·23선언」의 대북관계조항도 「기본관계 잠정협정」에 수용한 것 등에서 일관성이 입증되고 있다.

제5공화국 정부는 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해 대북제의를 거듭하였고, 1984년 가을부터는 1970년대초 이래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시키고,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체육회담 등 다각적인 대화와 접촉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 등 한정적이거나 남북간의 교류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일람표로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대북제의 및 행사명 (일자·형식 등)	주 요 내 용	배경·반응 등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 82.2.1 국토통일원장관 대북 성명	1)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개통 2) 이산가족 우편교류 및 상봉 3) 자유관광 공동지역 설정(설악산 이북 금강산 이남) 4) 판문점을 통한 해외동포 조국방문 5) 자유교역항 개방(인천·남포) 6) 쌍방 정규방송 자유 청취 7) 판문점을 통한 '86·'88체육행사 참가 8) 판문점을 통한 외국인의 자유 왕래 9) 공동 어로구역 설정 10) 남북간 각계 인사의 상호 친선방문 11) 기자의 남북한 자유취재 보장 12) 민족사 공동연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천정신에 입각한 제의 ·「잠정협정」체결 이전에 쌍방 합의만으로 실천 가능 ·20개 시범사업의 유형 사회개방 : 8개항 교류협력 : 8개항 긴장완화 : 4개항

	<p>13) 체육교류 및 단일팀 구성 14) 일용품 교류 15) 자원공동개발 및 이용 16) 기술자교류 및 생산품 전시회 17) 비무장지대 경기장 시설 18) 비무장지대 학술조사 19) 비무장지대 군사시설 철거 20) 군사책임자간 직통전화</p>	
<p>「남북한 고위대표회담」 제의 82. 2. 25 정부의 대북성명</p>	<p>· 구성—각료급 수석대표 포함 각 9인 · 의제—1)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문제 2) 「최고책임자회담」 개최문제 3) 긴장완화·교류협력문제 4) 북한측의 주장(100인 정치인연합회의) · 기타—「100인 정치인 연합회의」를 제의하면서 우리측 대표 50인을 지명한 북한측의 그릇된 자세 시정 촉구</p>	<p>· 북한측은 우리 통일 방안 및 20개 시범사업 제의를 호도하기 위해 82. 2. 10, 「북과 남, 해외동포 100인 정치인 연합회의」를 제의 · 우리측 대표 50인을 자의적으로 선정·지명</p>
<p>「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실현 촉구 및 「공산권거주동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개방」 천명 82. 8. 15 대통령의 경축사</p>	<p>· 남북한 「정상회담」 수락 촉구 · 북한 포함 공산권 거주 동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선개방 · 안전한 왕래보장 ※ 동포애의 발로</p>	<p>· 민족화합의 시범 · 중국 및 동구권 거주 동포의 모국방문 점증</p>
<p>「남북한정상회담」의 4개항 의제 제시²⁴⁾ 83. 1. 18 대통령의 국정연설</p>	<p>· 「최고책임자 회담」 수락재촉구 · 동화담에서 긴급히 협의·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4개항 제시 1) 긴장완화 및 전쟁재발 방지문제</p>	<p>· 쌍방 통치책임자만이 협의·해결 할 수 있는 민족의 현안문제임 · 우리의 포용성 과시</p>

24) 상계서 p.485

	<p>2)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문제</p> <p>3) 국제무대에서의 민족역량 낭비 방지 문제</p> <p>4) 국제적 평화통일 여건 조성문제</p>	<p>· 86. 1. 1, 김일성의 「신년사」에는 이 정상회담의 필요성 인정</p>
<p>「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제의</p> <p>83. 2. 1</p> <p>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p>	<p>· 당국을 포함시킨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p> <p>· 의제 : 1) 최고책임자회담 실현 문제</p> <p>2)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p> <p>※의제의 포용성</p>	<p>· 83. 1. 18, 북한측은 「남북 諸政黨·사회단체 연석회의」제의</p> <p>· 미군철수의 단일의제</p> <p>※당국 배제</p> <p>각 3개 정당대표로 예비회담</p>
<p>「IPU 총회에의 북한 대표 참가 희망 및 신변보호」언명</p> <p>83. 6. 1</p> <p>대통령의 제2차 「평통자문회의」 개최사</p>	<p>· 「최고책임자회담」 수락 촉구</p> <p>· 83. 10월 서울 개최 IPU 총회에의 북한대표 참가 희망</p>	<p>· 제70차 IPU 총회 (83. 10. 2~13)</p>
<p>북한의 변칙적 「3자회담」제의와 관련한 대응조치 및 제의</p> <p>84. 1. 11</p> <p>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p> <p>84. 2. 10</p> <p>국무총리의 대북서한</p> <p>84. 3. 10</p> <p>국무총리의 대북성명</p>	<p>· 아웅산 폭발만행에 대한 시인·사과·관계자 처벌 촉구</p> <p>· 남북한 당사자(한반도의 주역) 회담의 당위성 강조</p> <p>· 「최고책임자회담」 또는 「각료급 회담」 수락 촉구</p> <p>· 先 당사자회담, 後 관련국 회의 가능성 시사</p> <p>(동일 내용의 대북서한 및 대북성명)</p>	<p>· 북한측 84. 1. 11, 변칙적 「3자회담」제의 <명의> 증양인민위 및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p> <p><내용> 先, 미국과 평화협정</p> <p>後, 우리와 불가침선언</p> <p>※아웅산만행관련 위장평화전술</p> <p>· 「정무원 총리」(이종옥)의 우리 국무총리 앞 편지(동일내용을 84. 1. 11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원총리」(강성산)의 같은 형식의 편지
<p>「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²⁵⁾ 84. 8. 20 대통령의 하계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의 시대 제창 • 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 • 물자·기술의 무상제공 용의 표명 • 이산가족 재회, '86·'88체육행사에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개최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 9. 1의 서울지역 수해를 기회로 북한적십자회가 9. 8 수재물 제공 제의(역제의)
<p>북한적십자회의 「수재물자제공」 제의의 수락과 물자교류의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적십자회의 제의 : 84. 9. 8 • 대한적십자사의 수락 : 84. 9. 14 • 물자인도인수 : 84. 9. 29~10. 4 • 수재물자(인수) — 쌀 5만석, 직물 50만 m,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등 • 수송요원선물(인도) — 일용공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先수락의 역사적 선례 • 상부상조, 교류협력의 기를 마련 • 국제적으로 자신감과 야량 과시 • 대화재개의 계기 마련 ※차원높은 정치적 결단
<p>「남북접식자회담」의 재개제의 84. 10. 4 한적총재의 대북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본회의(73. 7. 11 평양)를 끝으로 중단된 적십자회담 재개 제의 ※ 제8차 서울 	<p>84. 11. 20. 실무접촉으로 「적십자 본회담」 재개 합의</p>
<p>「남북한체육회담」의 재개 제의 84. 10. 6 대한체육회장의 대북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교류 및 협력을 위한 체육회담의 재개 제의 ※ 84. 4. ~5월 3차로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 '88 행사에서의 민족역량 과시

<p>「남북경제회담」제의 84. 10. 12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대북서한</p>	<p>· 남북한당국 및 민간경제분야 대 표간의 회담 제의(차관급을 수석 대표로) · 남북한 경제협력기구 설치 희망 · 일시 : 장소결정을 북한측에 일 임</p>	<p>· 「8·20제의」의 실천 정신 · 남북한의 균형 발전 및 민족공영 도모 · 84. 11. 15 이래 5차 래의 경제회담 개최</p>
<p>「남북적십자 본회담」 제8차 : 서울 85. 5. 28~29 제9차 : 평양 85. 8. 27~28 제10차 : 서울 85. 12. 3~4</p>	<p>· 참가(왕래) 규모 : 84명, 3박4일 · 남북한의 기본입장 차이 남—이미 합의한 5개항 의제의 사 업추진(추진기구 및 시설의 설치 등) 회담의 조기 종결 북—자유왕래만 주장할 뿐 실질적 사업추진에는 무관심 · 부차적성과—이산가족 고향방 문단(50인) 및 예술공연단(50인) 의 동시교환방문 실현 85. 9. 20~9. 23 적십자 대표 포함 51인</p>	<p>· 이미 합의된 의제 및 사업 1) 주소 및 생사확인 문제 2) 방문과 상봉문제 3) 서신거래 문제 4) 재결합문제 5) 기타 인도적문제 · 자유왕래를 선전하 지만 고향방문단의 평 양밖의 고향방문 거부</p>
<p>「남북경제회담」 제1차 : 84. 11. 15 제2차 : 85. 5. 17 제3차 : 85. 6. 20 제4차 : 85. 6. 20 제5차 : 85. 11. 20 ※장소 : 판문점</p>	<p>· 남북한의 기본입장 차이 남—민족공영을 위한 교역 및 경 제협력 ※제1차 회담때 쌍방 제안중 일치 된 분야의 추진 북—정치선전차원의 경제합작만 주장 · 부총리급을 수석으로하는 「경 제협력공동위원회」구성에 합의</p>	<p>· 제1차회담 때의 쌍 방제안중 공통분야 1) 교역대상품목 2) 경의선연결 3) 교역항 지정 4) 협의기구 구성</p>
<p>「남북국회회담」을 위 한 예비접촉 제1차 : 85. 7. 23 제2차 : 85. 9. 25 ※장소 : 판문점</p>	<p>· 85. 4. 9, 북한측, 「남북국회회 담」제의 의제 : 불가침 공동선언 문제 형식 : 연석회의 또는 대표회의 · 85. 6. 1, 우리측이 의제 수정 역</p>	<p>· 불가침공동선언 문 제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당 국의 고유기능임</p>

	<p>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기본입장의 차이(의제) <p>남-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문제, 평화통일기반 조성문제</p> <p>북-불가침공동선언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접촉-각 3개 정당출신 5인 	<p>(정상회담의 협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회담」 실현명분 조성을 위한 북한의 저의 • 상층통일전선전술
<p>IOC 중재 남북체육 회담</p> <p>제1차: 85. 10. 8~9</p> <p>제2차: 86. 1. 8~9</p> <p>제3차: 86. 6. 10~11</p> <p>제4차: 87. 7. 14~15</p> <p>※스위스 로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기본입장 차이 <p>남-북한측의 '88올림픽 참가 일부 종목 분산개최</p> <p>북-'88올림픽의 공동주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C 위원장 중재안 <p>1) 탁구·양궁·축구예선 4조중 1조 북한 개최(제4차에서 여자 배구 추가)</p> <p>단체자전거 도로경기 남북중단</p> <p>2) 87. 9. 17한 서면 통보 요구(대북)</p> <p>(1차시한 86. 6.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그동안 '88 올림픽을 「대북도발」이라고 반대공작 • 기정사실화하자 공동 주최 주장 • 방해 또는 공산 진영 참가 저지술책
<p>「남북수자원당국회담」제의</p> <p>86. 11. 28</p> <p>건설부장관 대북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하천의 합리적 개발 이용문제(금강산댐) • 공사중지 촉구 및 손실보상 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 10. 21 북한측 금강산댐 건설 공표
<p>「남북총리회담」제의</p> <p>87. 3. 14</p> <p>정부(총리 및 국방부장관)의 대북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 실현 절차 마련 • 북측이 주장하는 의제 토의 • 3월중 수자원회담 개최, 4월중 경제회담 및 적십자회담 재개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 3. 3 북한측의 「고위급정치군사회담」 제의에 대한 역제 의
<p>「남북총리회담」의 전제로 3개 회담일자 지정 제의</p> <p>87. 4. 10</p> <p>국무총리의 대북서한</p>	<p>수자원회담-87. 5. 6(판문점)</p> <p>경제회담(제6차)-87. 5. 12(판문점)</p> <p>적십자회담(제11차)-87. 5. 19(평양)</p>	<p>87. 3. 30, 북한측의 총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4. 23)제의에 대한 대응</p>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수락재촉구 및 의제추가제의 87.6.3 제4차 「평통」자문회의 개최연설	· 남북정상회담 수락 재촉구 · 동회담의 4개항 의제(83.1.18제의)에 “대한민국이 거두어온 경제·기술 및 제반분야의 결실을 북한동포와 함께 나누는 문제”를 추가 제의	· 통일의 대의와 명분이 북한동포에 대한 구원과 해방에 있음과 남북체제경제 終焉의 선언
「남북외무장관회담」제의 87.8.3 외무부의 성명	· 의제 : 1) 불가침협정 체결문제 2) UN 가입 및 교차승인 실현문제 3) 수자원회담 및 기존대화 재개문제 4) 총리회담 및 최고책임자회담의 준비문제 5) 군축 등 북한측의 제의사항 · 시기 및 장소 : 임의선택(9월 UN 총회 등)	· 87.7.23 북한측의 「다국적 군축협상」제의에 대한 역제의
「남북외무장관회담」 수락촉구 87.8.13 외무부 대변인 성명	· 3차 외무장관회담의 부당성 지적 · 남북한 직접대화 재촉구	· 북한측의 87.8.6의 교부 대변인 성명에 대한 반박

그러나 위와 같은 빈번한 제의, 대화의 다각화와 접촉기회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관계의 개선이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북한측은 12년만에 재개된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에서 회담 본연의 사업 진전은 가로막고, 1986년에 들어와서는 연례적인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남북한간에 이미 합의 예정된 모든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86.1.20)시켰다. 그러면서도 남북한과 미국의 「3자 군사당국자회담」(86.6.17)이니 「多國的 군축협상」(87.7.23)이나 「3자 외상회담」(87.8.6)을 제의한다든지, 「비핵평화지대 창설」이니 「병력 10만의 일방적 감축조치」를 선전하는 등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하였

다. 이는 북한의 대남노선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 제의 내용은 제7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6. 第6共和國의 統一政策

가. 통일정책의 基調

통일정책도 하나의 국가정책인 이상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정책추진주체인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통일정책을 펴게 되고, 통일주도역량이 신장됨에 따라 보다 포용적인 통일정책을 펼 수도 있다. 더우기 우리 통일정책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국제정세와 같은 통일환경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客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고 적응하는 정책을 펴야 할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들의 변화를 先導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발전적인 통일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목표와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이런 통일을 실현하는 데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할 때, 통일정책의 가변성이나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기조는 크게 바뀔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 민족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과연 통일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목표로서의 통일은 국가 차원에서는 하나의 헌법 아래 하나의 정부가 한반도에 수립되어 단일주권국가로 체제적 통일이 실현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민족 차원에서 보면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민족공동체를 완성한 상태라고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통일의 목표는 韓民族의 민주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통일조국이어서야 민족의 영원한 생존과 자존, 번영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통일을 실현하는 데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 무엇이겠는가.

민족을 위한 통일이려면 민족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 통일이어야 한다. 외세에 의존하는 통일은 민족의 자존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권력정치의 속성상 실현성도 없기 때문이다.

민족을 위한 통일이려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보장되는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민족성원의 희생과 국토의 초토화를 가져올 무력이나 폭력의 방법으로는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자멸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동족상잔으로 민족역량이 소진되어 한반도에 힘의 진공상태가 생긴다면, 비록 외형상 통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으로 볼 때, 외세의 유입과 간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민족을 위한 통일이려면 민족성원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은 결코 특정정권이나 특정집단, 하물며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자유가 걸린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족을 위한 통일이려면 통일의 과정에서부터 민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번영을 실현시키는 복지적 통일이어야 한다. 이 민족의 공동번영은 민족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화합과 단결을 촉진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주·평화·민주·복지의 理想이 구현되는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전쟁재발의 위험성을 그대로 두고 남북한관계의 정상화나 민족의 화합과 통일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당위적이고도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1970년대 이래 「선 평화, 후 통일」을 정책기조로 하는 평화통일정책을 펴 왔다. 이는 1960년대말까지의 우리 통일정책이 “UN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표방하였지만, 그 기조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의 법통성에 입각하여 우리 헌법 아래 북한을 수복한다는 명분론적 통일정책에서, 북한체제를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통일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현실론적 통일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선 평화, 후 통일」의 정책기조는 1970년대의 통일정책에서는 ①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정착 ②사회개방과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적 신뢰회복 ③그 바탕 위에서 자유총선거를 통한 국가적 통일이라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4. 8. 15)으로 시현되었고, 제5공화국 정부의 통일정책에서는 ① 통일될 때까지의 과도 조치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화합을 실현시키고 ② 통일헌법을 함께 마련하여 그 헌법에 따라 「통일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으로 집대성하여 천명되었다.

제6공화국 정부의 통일정책도 같은 기조 위에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당사자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남북한관계를 정상화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에 책임이 있는 주변4강이 참여하는 국제적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고, ② 한민족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체제간에 연합·협력함으로써 사회·경제·문화적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며, ③ 마침내는 민족국가를 완성하려는 것은 곧 「선 평화, 후 통일」을 기조로 삼은 것이다.

이 정책기조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의 연관관계는 다음 일람표와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통일정책의 기조와 관련하여,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

정책기초	선 평화		후 통일
	한반도	한민족	
통일정책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1974)	평화정착	민족적 신뢰회복	총선 통일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1982)	남북한 관계 정상화	민족화합	통일헌법에 의한 통일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 (1988)	평화정착	민족공영	민주복지국가 완성

게 바뀌어 왔으며, 남북대화의 다각화와 평화적 통일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밝혀둘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대북인식의 변화(발전) 추이가 상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측의 일방적이고 先制的인 양보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다각적 남북대화의 전개과정에서 평화와 통일의 進展度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의 對北觀, 즉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 보면 일방주의적인 포용의 과정이었다. 왜냐 하면 북한측은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적대시할 뿐 아니라 그 와해를 부추기는 이른바 「남조선해방」이라는 일관된 대남혁명전략을 견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70년대 이래 북한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서 인정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1988년 이후)는 북한을 공동번영해야 할 민족공동체로, 남북한관계를 동반자관계로 규정하여 통일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관의 시대적 변화 추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남북한관계의 실체는 상호주의적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통일·외교정책에서는 북한체제를 공동번영해야 할 민족공동체 또는 동반자관계로서 포용하고 있지만, 북한의 대남노선에 우리와 상

구 분 시 대 별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한 관계
건국이래~1960년대말	체제 부정·수북통일의 대상	적대관계
1970~1987년	실체 인정·대화협상의 대상	대결·경쟁 관계
1988년~현재	공동번영해야 할 민족공동체	동반자관계

응하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다시 말해서 남북한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군사적 또는 실정법적으로는 적대 또는 대결관계라는 엄연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 남북대화와 통일의 연관관계를 살펴 볼 때, 남북대화가 평화적 통일의 기본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화의 다각화·廣幅化의 효용과 한계에 대한 통일정책적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남북대화정책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북한측은 1988년 하반기 이래 정부당국간의 대화나 적십자회담·경제회담 등 기존 대화의 재개에는 소극적이면서도 국회연석회의, 학생회담, 3자회담, 정치협상회의, 「전대협」·「전민련」에 의 접근시도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선별적 다차원적 대화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의식이 없고 무원칙한 대화·접촉의 확대는 북한측의 상하층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될 위험성도 있다.

동족간의 장기간에 걸친 대결과 단절에서 비롯된 불신과 이질화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접촉의 폭을 넓히고, 그 빈도를 높일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현안문제와 장래문제를 실질적이고 생산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쌍방 당국 대표간의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남북대화의 량보다 質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이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평화적 통일의 기반이고 先行條件이 되는데,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남북한 정부당국간의 회담에서만 협의·해결할 수 있다. 또한 평화정착의

바탕 위에서 민족공동체를 계승발전시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과도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당국간의 협력기구 구성도 필요한 것이다.

둘째,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공동번영을 실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당국간의 협력과 함께 각계 직능대표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교류 · 협력 · 사회개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의 궁극적 목표인 국가(체제)적 통일을 완성하려면 민족의 예지와 역량을 모아 통일조국을 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통일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늘의 남북한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모든 대화와 교류 · 협력은 쌍방 정부당국의 주선 · 통행 및 안전의 보장 등 협조와 지원이 불가결의 요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이상과 같은 정책기조 이외에도, 정책형성과정의 민주성에서 비롯된 정통성과 대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發想 및 인식의 일대전환에서 비롯된 민족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정책형성면에서 통일정책을 통치권적 차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 ·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논의를 개방화 · 활성화하여 국민의 염원과 예지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적 참여와 지지기반 위에 형성한 정통성이 있는 통일정책을 펴고 있으며, 통일지향성면에서도 국민의 성숙된 민족공동체의식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공동번영해야 할 동반자, 민족공동체로 보고, 북한의 호응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가 먼저 열고, 풀고, 베풀어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수범 · 선도하려는 민족정기에 바탕한 통일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정책기조와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새 통일방안을 입안중에 있다.

나.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²⁶⁾

1) 「7·7선언」의 배경과 주요내용

盧泰愚대통령은 1988년 7월7일,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외교정책기조의 一大 전환을 의미하는 새 공화국의 통일외교정책 기본방향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 「7·7선언」의 배경을 살펴 보면, 먼저 국내여건면에서 제6공화국의 출범에 따라 대통령이 후보유세과정에서 국민에게 공약하였거나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통일·외교분야의 정책의지를 구현시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필요성과 함께 때마침 민족주의에 바탕한 국민적 통일여망과 열정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6·23선언」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제질서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관계에 새로운 발전을 시도할 여건이 성숙되어 북한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을 향한 교류와 협력을 실현시킬 轉機를 마련해야 하였는데, 여기에 올림픽의 개최, 국력의 신장 등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 따른 민족적 자긍심과 통일주도역량의 확보를 자부하는 국민적 자신감이 이를 뒷받침하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환경면에서도, 미·소의 화해와 협력 추세속에서 동서냉전체제가 평화공존 및 협력구조로 정착되어감에 따라 동서냉전의 희생이 되어 왔던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자주적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好機를 맞이한 것이며, 소련·중국·동구권에서 일고 있는 개방과 개혁정책에서 비롯된 변화의 물결이 폐쇄적인 북한사회에도 파급되도록 우리의 북방정책을 적극화할 필요가 있었다. 더우기 국제

26) 상계서 p.495

사회에서의 남북한의 位相은 민족자존의 차원에서나 남북한의 총력 비교 차원에서 대결·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족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한을 돕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7·7선언」의 주요골자와 정책선언 6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아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한다.”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

“이제는 민족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창조해 왔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이제 남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한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서로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한다.

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 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③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④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⑤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 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⑥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하고, 북한측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6천만 겨레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 전에 남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 「7·7宣言」의 意義

이 특별선언은 남북이 비록 체제를 달리하고 있으나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의식에서 북한동포도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려는 것이다.

이 선언은 이제까지 폐쇄적인 북한을 봉쇄해 온 소극적인 정책을 지양하여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일여건을 조성하려는 통일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처럼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과 인식에 큰 획을 그어놓은 「7·7선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인식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북한을 경쟁·대결·적대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일부로 포용하여 상호신뢰·화해·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할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함으로써 대북관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남북한이 단절과 불신 속에서 민족자해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족역량의 낭비는 물론 민족자존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현실적으로 남북이 대결·비방·경쟁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과당경쟁으로 민족의 위신과 역량을 훼손한다는 것은, 우리의 발전수준과 성숙한 국민의식, 더우기 올림픽을 유치·개최하는 국민적 자긍심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이 선언의 근본취지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아래 두개의 체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한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여 민족통합을 실현해 나가려는 데 있다.

다시말해서, 우리는 남북한관계를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이 될 때까지의 잠정적 관계, 즉 민족공동체안의 특수관계로 보려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선언은, 민족통일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한 민족안의 두 체제간에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교류·개방·협력을 통해 사회·문화·경제부문에 공동체로 통합해 나가며,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통일이념을 담고 있다.

역사와 문화, 민족이 다른 나라들로 구성된 구주공동체(EC)의 경우에도 국경에 관계없이 사회·경제·문화의 교류 등에 있어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고 있는 상태이며 정치적 공동체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영위해 온 우리 민족의 공동체 회복은 용이할 뿐 아니라 당위적인 것이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민족의 일체성을 잃지 않고 민족 본연의 모습을 지켜 왔다. 이와 같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은 비록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되었지만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살아있는 뿌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민족 본연의 모습인 동시에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킴으로써 민족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민족공동체를 향한 「선의의 동반자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외교정책 기조의 일대 전환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선언에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참여·기여하게 하는 데 우리가 협조함은 물론, 미국·일본 등 우리의 우방과의 관계개선까지도 협조하겠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바로 통일·외교정책의 적극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정책기조의 전환을 뜻한다.

북한에게 국제사회에 진출할 길을 열어 주겠다는 적극적 외교정책은 우리의 역량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내부적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통일여건을 개선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한간의 지나친 경제적 격차나 불균형은 오히려 통일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이제 우리는 북한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민족자존의 정신과 동포애의 발현이 바로 이와 같은 정책 전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동포의 복지향상을 위해 그 발전을 돕는 것이 실질적인 관계개선과 민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왕래의 길을 우리가 먼저 여는 것도 고향방문, 친척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폐쇄된 북한사회를 개방하고, 북한동포의 의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적극적인 북방정책으로 소련·중국 등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막는 소극적인 정책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그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우월한 국력과 국제적 지위에 비추어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 위협요인이 될 수 없다는 인식과 자긍심도 이와 같은 정책전환을 뒷받침한 요인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이 선언은 외교면에서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식 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공동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 통일정책의 포용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라 하겠다.

다. 前向的 통일접근 노력과 對北提議

제6공화국 출범 이래 새 정부는 남북이 서로를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로 보아왔던 시각에서 벗어나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하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호소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한 對北提議를 거듭하여 왔다.

첫째, 남북협력시대를 선언하고 그 實踐意志를 표명하였다.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재결합을 위한 길이 보인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 개의치 않고 방문해 어느 누구와도 진지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폭력이 아니라 대화가 분단을 해소시키고 민족의 재결합을 가져오는 지름길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어느 곳이나 열려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대화하며 공존하고, 공존하며 협력”함으로써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실천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제69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대통령은 “우리가 문을 연 민족자존의 시대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시대”라고 규정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만날 것이며 그것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

고 그 길을 터 나갈 것”이라고 하여 통일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와 신념을 다시 천명하였다.

이 「기념사」에서는 우리와 외교관계가 없는 북방의 대륙국가들과의 폭넓은 교류의 길을 트는 것은 “통일을 향한 전진에 한 관문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대외문호개방정책, 특히 북방정책이 가지는 의미를 밝혔다.

이어서 1988년 4월21일, 취임후 첫번째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통일을 위한 본격적 준비시기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여 앞으로의 任期를 남북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열어 나가는 시대로 삼겠다고 하면서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적화통일하지 않겠다는 路線變化가 생길 때, 우리는 과감하게 대결상황을 청산하고 생산적인 신뢰관계를 맺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새 정부의 통일정책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해 남북한간의 소모적 정치선전전을 지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새롭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는 데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한편, 1988년 5월28일의 대통령과 야당총재들과의 회담에서도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동포애 차원으로 대북인식을 전환하여 민족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룩하는 통일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하고, 통일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야당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명하였다.

이와 같이 새 정부는 민족통일의 실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각 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기반을 바탕으로 통일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실천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둘째, 통일논의의 개방과 대북접촉창구의 일원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988년 6월2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의 고

조에 부응하여, 통일논의를 활성화함과 함께 대북제의 및 접촉창구는 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과, 남북간의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실현을 강조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천명하였다.

정부대변인은 발표문을 통하여, 앞으로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를 적극 개방하고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이나 공산권 관계자료의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정부내에 “관련법규 개정과 자료분류기준의 완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일논의의 개방과 관련하여 “통일논의는 헌법질서에 기초를 두고 實定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정책의 수행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금 남북은 상호 단절속에서 첨예한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교류상대방인 북한이 통제된 一元主義體制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북제의나 접촉의 창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정부를 제쳐놓고 직접 북한을 상대로 대북제의나 접촉을 하려는 것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측이 기도하는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한편, 정부는 남북한간의 신뢰회복과 민족통일을 향한 전진을 위해 남북간에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각계인사들의 인적교류와 함께 물적 교류도 실현시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바로 「7·7선언」이다.

셋째, 「7·7선언」의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조치를 취하였다.

조치 및 제의	일자 및 형식	주요내용 및 배경
「남북적십자 실무 회의」제의	韓赤 총재의 전화통지문 (88.7.13)	1)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을 위한 신청서와 회보서의 상호 교환 2) 1차 고향방문 때 상봉한 이산가족의 서신교환 주선 3) 해외 이산가족의 상봉·서신교환 등 알선 4) 88년중 제2차 고향방문 추진 - 88.7.30 판문점 회담 제의
「남북 교육당국자 회담」제의 ²⁷⁾	문교부장관의 대북서한 (88.7.15)	협의과제 - 남북학생 교류문제 · 조국순례 대행진 ·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 · 기타 학생 교류문제 일시 및 장소 - 88.7.30 이내 판문점. ※ 8·15 학생회담 문제와 관련
전향적(대북)외교 정책 선언	외무부장관 발표문 (88.7.16 및 7.19)	· 우방국과 북한간의 비군사물자 교역 · 민간인왕래·문화 교류·민간 상사의 지점 설치 용인 · 북한의 비동맹 및 제3세계국가와의 관계정상화와 국제기구 가입 용인 및 협력 · 남북대표간의 대화·접촉 허용 ·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허가된 우리나라 거주여권 소지자의 북한 방문 허용 및 북한 여권 소지 해외동포의 모국방문 보장 · 남북한 방문 해외동포의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당국간의 협의 제의

27) 상계서 p.499

對北비난방송중지	정부발표 (88.7.19)	-88.7.19.0시를 기해 · 전방지역에서의 대북비난방송중지 · KBS 등 정규방송에서 북한의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지양
남·월북작가의 해방전 문학작품 출판 허용	문공부 발표 (88.7.19)	· 1954년 이래 금지되었던 작품의 상업 출판 허용 ※ 월북작가 120여명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	문공부장관 발표 (88.9.3)	· 특수자료 분류기준 대폭 완화 · 특수자료 이용절차 간소화 · 특수자료 관리운영기관 증설 · 언론기관의 인용보도폭 확대 등
대북한 경제개방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발표 (88.10.7)	·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중계·허용 · 북한원산지표시·상표 부착허용 · 남북경제인 접촉·방문 허용 · 직간접 교역물자 관세 면제 · 북한선적 상용선박 입항 허용 등
남·월북작가의 음악·미술작품 규제 해제	문공부장관 발표 (88.10.27)	· 순수 음악 미술작품의 공개 허용

넷째, 북한측의 정치적 저의가 엿보이는 대남제의까지도 대화·접촉·교류·협력의 폭을 넓히고 긴장완화와 민족화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국적으로 수용해 왔는데 그 진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밖에, 북한측은 1988년 12월26일,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1989.7.1~7.8. 평양) 준비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 명의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급진적이고 과격한 학생운동을 주도해 온 「전대

수용사항	배경·내용 및 문제점		
「남북국회회담」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의 「북남국회연석회의」제의(88.7.20)를 남북국회회담으로 수용 •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7차의 준비접촉(88.8.19-88.12.29. 판문점) ※ 제8차 준비접촉(89.2.10)이 합의 예정되었으나 북한측이 「팀스피리트」를 구실로 89.2.8 일방적 취소 • 회담 형식 및 의제에 대한 남북한 기본입장의 차이 		
		남	북
	회담형식	대표회담(합동회의도 인정)	연석회의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대화 재개포함 다각적 교류협력 문제 • 불가침선언문제 • 정상회담 개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침공동선언문제 •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문제 •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문제 (7차때 새로 제기)
기타	제4차(8.25)까지 올림픽 참가문제 포함	제3차(8.22)까지 정당 사회단체대표 및 개별 인사 참가 주장	
「남북체육회담」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올림픽위원장(김유순)의 제11회 아시아 경기대회(베이징, 1990)에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제의(88.12.21)를 우리측이 수락 • 89.3.9 판문점에서 예비회담 개최 합의 		

협)에게 참가를 초청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정부는 사회주의단체 주관의 정치성이 짙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학생의 교류차원에서 이것까지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섯째, 새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화해와 신뢰조성, 나아가서는 평화정착과 민족공동체 회복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제6공화국 출범 이래 기회있을 때마다 이를 북한측에 제의·촉구하여 왔다. 대통령의 취임사(88.2.25), 3·1절의 기념사(88.3.1), 취임후 첫 기자회견(88.4.21), 광복절 경축사(88.8.15), 국회에서의 국정연설(88.10.4), 제43차 UN 총회 초청연설(88.10.18),²⁸⁾ 연두기자회견(89.1.17)을 통하여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수락을 촉구하였는데, 그 가운데, ① 정상회담을 장소와 의제,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② 남북한의 최고통치책임자가 만나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실현방안,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논의·타결할 수 있다. ③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는 의제 제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측이 주장해 온 정치군사문제의 해결도 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은 이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전망에 관하여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북쪽에서의 필요성” 등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으므로 “머지 않은 장래에 꼭 성사시키고 말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1989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에서 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함과 함께 평화적 통일의 기반이 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축과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분단에 책임이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는 통일에 이해관계를 가진 강대국의 협력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소련·중국·일본이 참가하는 ① 동북아 평화협의회의의 창설을 제창하고, ② 긴장완화를 상징하고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의 광장이 될

28) 상계서 p.513

비무장지대내의 平和市 건설을 제의하였으며 ③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이 있기 전에라도 우리가 북에 대해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선언하여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섯째, 남북한 각료급 또는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두 차례 제의하여 마침내 예비회담의 성사를 보게 되었다.

1988년 6월 3일, 이현재 국무총리의 대북서한을 통해 ① 다각적 인적교류 실현 문제 ② 올림픽 공동참가문제, ③ 기존 대화의 재개문제 등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6월중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6월6일, 이른바 「남북연석회의 북측 준비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남북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 형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이를 거부하였다.

이어서, 북한측은 1988년 11월16일, 이근모 「정무원 총리」의 대남서한을 통해 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방안과 ② 기타 정세완화에 기여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고 총참모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7-9인의 대표가 참가하는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12월 중순에 판문점에서 열 것을 제의하였는데, 우리 정부는 1988년 12월28일, 姜英勳 국무총리의 대북서한으로 쌍방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각 7인의 대표가 참가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여 ① 상호비방중상 중지문제 ② 상호존중 및 불간섭문제 ③ 다각적 교류·협력 실시문제 ④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⑤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그 절차문제의 협의를 위해 차관급을 수석으로 하는 대표 5인으로 1989년 2월 초순에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이 서한에서는 1986년 이래 중단된 제6차 경제회담을 1989년 2월 하순에 판문점에서, 제11차 적십자회담을 1989년 3월 하순에 평양에

서 속개시킬 것도 아울러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측은 그들이 제의한 「정치군사회담」에 대한 수정 제의로 받아들여 마침내 제1차 예비회담을 1989년 2월8일, 판문점에서 열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팀 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북한 출판물의 규제 해제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화함으로써 제2차 예비회담을 3월 2일에 열기로 합의하였을 뿐, 절차 및 의제 등 실질문제에는 접근하지도 못하고 끝났다.

그런데 같은 날, 북한측은 2월 10일로 예정된 제8차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팀 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여, 앞으로 예정된 모든 남북대화의 전망을 흐리게 하였다.

이는 북한의 기본적 대남노선과 대화전술에 아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북한의 統一路線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創立方案」

가. 북한의 統一觀과 통일전략²⁹⁾

북한체제의 최고규범인 「조선로동당 규약」³⁰⁾의 前文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29) 「북한개요」(평화통일연구소, 1986) p.298

30) 상계서 p.339

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 것은 북한의 통일관과 통일노선이 바로 「先 남조선 혁명, 後 공산화 통일」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위와 같은 통일노선은 당간부에게 내린 김일성의 비밀교시(68.7.8)에서도 나타나 있다. 즉 “조국통일은 분단된 국토와 민족의 단순한 재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하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反帝·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舉族的인 사업이다.

남조선혁명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조선혁명의 일부분으로서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은 서로 불가분리의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북한은 전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대혁명역량 강화」라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 통일전략은 1964년 2월에 「로동당」의 방침으로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의 근간은 1965년 4월14일,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 조국의 통일, 즉 조선혁명의 전국적인 승리는 결국 3대 역량의 준비에 달려 있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 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 인민과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3대혁명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강화하여 대남혁명지원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둘째, 남한내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화시켜 사회혼란으로 유도함으로써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남북한의 혁명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통일노선에 따라, 북한공산집단은 공산화통일의 수단으로서 ① 무력에 의한 ‘남조선해방’과 ② ‘남조선혁명’을 부추기고 도와서 聯共合作하여 공산화하는 두 가지 방법을 써왔다. 그들은 전자를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후자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자 공히 전쟁과 폭력이 수반되는 反平和, 반문명적 노선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의 통일관과 전략이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험주의적인 노선인가를 스스로 드러낸 예로서는 민족적 참화를 입힌 6·25남침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미화하고, 휴전이후에도 이른바 ‘결정적 시기’를 계속 노려 왔다는 점이다.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다음 연설은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이기도 하다. 즉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투쟁을 물심양면에서 적극 지지 성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임무를 자기의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북반부 인민들은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일어나 혁명정세가 성숙해서 우리의 지원을 구할 때는 언제라도 남조선 인민과 힘을 합해서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시킬 결정적 싸움에 떨쳐 나서기 위해서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일관과 통일전략은 “남조선은 외국군의 강점하에 있고, 경제는 식민지 예속경제로서 모든 이윤을 착취당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조작된 對南觀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인데, 이는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에서 비롯된 통일논리의 조작이라는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북한체제가 ‘남조선해방’이라는 명분으로 주민을 기만·통제·동원하고 내핍을 강요하여 장기독재를 지탱하기 위한 對內통치명분이 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나. 聯邦制 주장의 변천과정³¹⁾

북한의 통일노선이 기본적으로 무력과 폭력을 수반하는 공산화통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주적 통일이나 평화적 통일을 표방하면서 위장평화공세를 펴 왔다. 연방제 통일방안도 그 하나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여 왔으나 오늘날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이르기까지는 몇 차례의 탈바꿈이 있었다.

처음 연방제를 내놓은 것은 1960년 8월14일, 김일성의 연설에서 비롯된다. 그는 통일방안으로서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주장하면서, 완전한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자고 하였다. 4·19 직후의 우리 정치사회적 혼란기를 엿본 위장평화공세였음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과도적 통일형태로서의 연방제”와 “남북의 정부당국 대표로써 연방기구를 구성할 것”을 주장한 점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성과 현실성을 갖춘 선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북한은 1971년 4월12일, 당시 외상이었던 許鎡의 이른바 「8개항제의」³²⁾ 속에 이 연방제 통일을 포함시켰고, 1972년 11월 3일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를 제기한 일이 있다.

그런데, 1973년 6월23일, 마침 평양을 방문한 체코슬로바키아의 후사크서기장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은 「고려연방제」로 바꾸어 내놓았다. 이 「고려연방제」는 이른바 「조국통일 5대강령」³³⁾ (또는 5대방침) 속에 들어 있는 한 항목인데, ① 군사문제의 선결 ②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 ③ 대민족회의 소집 ④ 고려연방제 통일 ⑤ 단일국호에 의한 UN 가입 등 5개항 중 제4항에 들어 있다. 이에는

31) 상계서 pp.303-313

32) 상계서 p.306

33) 상계서 p.307

「고려」라는 국호를 자의적으로 붙였을 뿐 아니라,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남한의 정부당국을 배제하는 등 대남전략적 기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 「5대 강령」이라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통일노선과 대남제외의 준거가 되고 있다.

이 「고려연방제」가 1980년 10월10일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의 「김일성 연설」³⁴⁾에서는 「민주」라는 修飾이 첨가되고 연방기구의 구성원칙 등을 구체화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제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남북연방제」가 「고려연방제」를 거쳐 「고려민주연방제」로 변천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1970년대까지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라고 하던 것을 1980년대에 들어 와서는 “통일의 완결형태”라고 선전하고 있다.

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내용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하 「고려연방제」라고 약칭한다)은 ① 선결조건 ②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 ③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이라는 세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선결조건」에서는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선행을 전제조건화하여, 「고려연방제」로 통일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① 대한민국이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 등을 폐지하고 이른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② 북한이 조작한 유명단체인 소위 「통일혁명당」(1985.7.27 이래 「한국 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을 비롯한 모든 개인과 단체의 공산

34) 김일성의 「로동당 제6차대회 사업총화 보고」

주의활동을 합법화해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반공정권이므로 공산주의와 손잡을 수 있는 聯共政權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그들은 이를 「민주정권」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④ 우리 정부가 배제된 가운데 미국과 북한간에 휴전협정에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

⑤ 미국의 “분열주의적 두 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시키며 내정 간섭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등이다.

위와 같은 「선결조건」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둘째, 이런 「선결조건」과는 二律背反되는 연방제 실시원칙과 운영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고려연방제」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연방국가의 국호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자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국가의 機構로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機構들이 북과 남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 뒤, 김일성은 1983년 9월9일, 북한의 「정권창건 제35주년 경축 연회」연설을 통해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북과 남이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윤번제로 운영하자”고도 하였다.

셋째, 연방제로 통일되기 전에는 일체의 교류·협력을 거부하는

논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연방기구를 통해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연방제 실현 뒤에 시행하겠다는 정책방향들을 「10대 시정방침」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국가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자주정책 실시
- ② 전지역·전사회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단결 도모
- ③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여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 도모
- ④ 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실시하여 민족문화의 전통과 민족교육의 발전 도모
- ⑤ 북과 남의 교통·체신을 연결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자유로운 교통·체신 시설 활용
- ⑥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증진
- ⑦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 민족을 보위
- ⑧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 옹호
- ⑨ 통일 이전 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정
- ⑩ 통일국가로서 우호적,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라. 「고려연방제」의 問題點

「고려연방제」는 통일방안이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면에서나 논리면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겉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표방하였지만 내용은 「선 남조선혁명, 후 적화통일」의 대남 혁명전략을 펴기 위한 위장평화전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대화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결조건」자체가 평화통일방안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을 잃은 것이고, 「고려」라는 국호

도, 「연방제」라는 국가형태도 일방적으로 정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의 의사나 타방 당사자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반민주·반평화적 「통일논의」 또는 「통일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연방제로 통일된 뒤에 실시하겠다는 「10대 시정방침」도 통일방안과는 관련이 없는 하나의 修辭에 불과하고, 통일 뒤어나 교류·협력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발표한 통일원칙을 배반한 것이다.³⁵⁾ 왜냐 하면 통일방안이란 통일로 가는 과정과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어야 하는데, 통일 뒤의 정책방향을 나열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정치선전에 불과하고,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은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것인데, 이 「민족적 대단결」을 통일 뒤로 미루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이다. 북한측은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서인지, 남북이 합의한 통일원칙을 1980년대 이래 자주·평화통일·민족적 대단결로 변조하여 「고려연방제」의 선전논리와 결부시켜 圖式化하고 있다. 즉, 自主는 「남조선혁명」을 노린 「선결조건」과 결부시키고, 평화통일은 연공합작하는 연방제 통일을 의미하며, 민족적 대단결은 「10대 시정방침」과 연관시켜 선전하고 있다.

둘째, 「선결조건」에서는 상대방의 정치이념과 체제를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제 실시원칙」에서는 남북한의 현존 사상과 제도를 서로 인정·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연방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마치 체제공존논리를 펴는 것 같이 위장하였다. 그러나 「선결조건」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이 먼저 실현되면 남쪽

35) 김경태, “남북한의 통일원칙 적용논리의 비교연구” 「통일문제연구」(통일연수원, 1985) 참조

의 聯共(容共)정권과 북쪽의 공산정권이 정치적 합작을 통해 적화통일하겠다는 대남혁명전략을 평화통일방안 같이 꾸며 놓은 것이 바로 「고려연방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사상과 제도의 상호 인정과 용납”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체제와 공산체제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결조건」이 충족된 상태의 남쪽의 사상과 제도, 즉 인민민주주의와 북쪽의 사회주의와의 공존을 의미하므로 「선결조건」과 「연방제 실시원칙」사이에는 속임수가 있을 뿐이지 논리적 모순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방」이라는 용어 사용면에서도, 국제사회에서는 두 체제의 공존협력지향적 통합형태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을 표방(「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영문표기 :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하고, 내용상으로는 연방정부가 군사권·외교권을 포함한 대외주권을 행사하는 통일지향적 통합형태인 연방제(Federation)³⁶⁾인 것같이 대내선전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선결조건」에서 드러낸 바와 같이 공산주의식 병합(Annexation)을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디 공산주의에서 「연방」이라는 것은 연합·연립·합작과 같은 개념으로서, 공산주의가 비공산주의적 요소를 흡수·통합하는 공산화과정의 한 과도적 수단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사용된 역사적 사례가 있다.

레닌은 1920년 7월28일, 제2차 코민테른에서 “민족내에 있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통일된 세력이 되기까지의 과도적 정치조직으로서 연방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북한도 “사회주의적 연방국가제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의 제도”임을

36) 연방제의 일반이론에 관하여는 김학준, “정치통합방안으로서의 연방제의 虛實” 「민족화합 민주통일론 II」(국토통일원) p. 122

1981년 2월 2일자 「로동신문」에서 밝히고 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도 소련·중국·월남 등 다른 공산국가들이 공산화과정에서 시도했던 연합전술을 모방한 통일전선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고려연방제」의 문제점은 그 비현실성에서도 나타난다. 오늘날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들을 보면, 연방구성국간에 정치이념과 사회제도가 같고, 평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민족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선결조건」이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연방제 통일은 우리의 현실과는 상치되는 것이며, 또한 5천년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연방제로 통일해야 할 이유도 없다.

북한에서 발행한 「정치용어사전」에서도 “연방제는 말과 풍습, 문화가 서로 다른 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실시하는 국가구성형식의 하나”라고 정의하였고, 연방제 형성요건의 하나로 「연방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풀이하였는데, 이는 「고려연방제」의 선전내용과 모순될 뿐 아니라 그 策略性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단일민족국가에서 연방제가 무의미하고 연방헌법이 없는 연방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허구적인 「고려연방제」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그 「선결조건」에서 대남적화전략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밖에도 복합적인 계략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대남관계에서 「연방」, 「민주」, 「고려」 등 용어 자체가 함축하는 보편성을 이용하여 통일에 관한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한 것이다.

둘째, 국제적 측면에서 「고려연방제」를 마치 남북한의 체제공존형 평화통일방안인 것 같이 선전함으로써 평화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내적으로는 이 「고려연방제」를 이른바 「조국통일 5대강

령」과 결부시켜 김일성의 우상화와 세습체제 형성의 政治教化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

끝으로, 북한당국은 이 「고려연방제」를 勢不利할 때 분단고정화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고려연방제」에 의한 적화통일의 기도가 좌절되고 그 체제 유지도 어렵게 되었을 때는 남북분리정책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50년대에 동독이 「국가연합」안을 내놓고 “두 개의 독일정책”으로 이용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마. 「고려연방제」와 관련한 對南提議

북한은 이 「고려연방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이라고 선전하면서도, 오직 「선결조건」의 실현을 노린 대남제의만을 계속해 왔다.

이 「선결조건」의 실현을 겨냥한 대남제의의 특성으로는 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부당국간의 회담을 기피하고, “각당·각파·각계 각층”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선전장을 마련하려 하고, ② 남북한당국간의 당사자회담을 기피하면서도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거듭 제의하며, ③ 적십자회담·경제회담·체육회담 등 실질관계개선을 위한 기존대화는 중단시키면서도 군축협상, 고위급정치군사회담, 국회연석회의, 정치협상회의 등을 “군사문제 선결”의 맥락에서 제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북한측은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기본노선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겉으로는 ① 김일성 자신이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실 ② 대남제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식명칭을 표기한 점 ③ 정부당국간의 회담을 제의 또는 수락한 점 ④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등 유연성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고려연방제」와 관련한 대남제외의 내용과 배경을 간추리면 다음 일람표와 같다.

우리는 이 일람표를 통하여 북한의 평화 및 대화공세가 우리의 정치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表3〉 對南提議 一覽表

제외명(일자)	제외기관·형식	배경 및 골자
「고려연방국」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80.11.1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을 배제한 정당·사회단체대표 및 각계 인사로 구성 • 국내외 각계인사에 편지
민족통일촉진대회 소집 (81.8.6)	「정당·사회단체연합」 성명 (祖戰中央委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결조건」실현을 위한 대회 • 우리의 「6.5제외」, 「올림픽 단일팀 구성 제외」에 대한 반응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82.2.1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대표 50인 명단 일방적 지명 공표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및 「20개 시범사업 제외」에 대한 반응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합석회의 (83.1.18)	「당·사회단체연합」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철수의 단일의제 • 남북의 각 3개 정당대표로 예비회담
연방기구 운영방안 (83.9.9)	김일성 연설(「9·9절」경축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의장·공동위원장제로 윤번제 운영 • 국제적 비판에 대한 대응

3자회담 (84.1.11)	중앙인민위 및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연합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先 미국과 평화협정 • 後 우리와 불가침선언 ※ 군사문제선결 • 아웅산 만행과 관련한 위장평화전술
수재물자제공 제의 (84.9.8)	북한적십자회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남 수재물자 제공 ※ 우리의 「8·20제의」에 대한 逆제의
남북국회회담 (85.4.9)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성명 및 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석회의 또는 대표회의 • 불가침공동선언문제 협의
남북대화 중단성명 (86.1.20)	남북회담 북한측대표단의 공동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스피리트훈련 구실
군사3당국자회담 (86.6.17)	「인민무력부장」(오진우)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훈련중지 및 군비 축소 • 모든 회담재개의 전제 조건화
「고위급정치군사회담」 86.12.30 87.1.11 87.1.30 87.3.3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에서의 김일성의 「시정연설」(86.12.30) 정무원 총리 및 인민무력부장의 대남편지 ※ 방송을 통한 공개제의 (87.1.11) 및 서한 (87.1.30,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부총리급 (단장), 군총참모장급(부단장) 포함 7-9인 • 議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 (비방중상 중지 및 다방면적 합작교류) 2)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무력축소, 군비경쟁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연습 중지, 중립국 감시군 조직) • 기존대화재개의 전제조건화

<p>「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87.3.30)</p>	<p>「정무원총리」의 대남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회담(3.14제의) 수락 및 장관급 예비회담제의(87.4.23·판문점) • 선 총리회담, 후 기존 대화 재개 주장 • 의제를 군사문제에 국한
<p>남북대화 전면거부 성명 (87.4.24)</p>	<p>정무원 대변인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4.10자, 우리측의 기존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거부 반응 • 대화 중단 책임의 전가
<p>「다국적 군축협상」 (87.7.23)</p>	<p>정부 성명 ※ 「정부 성명」 형식은 이색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담형식 : 남북한 및 미국의 회담에 중립감독위 성원국(4국)대표가 방청참가(1988년 3월, 제네바) • 의제 : 1) 88-91년까지 단계적 무력축소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 병력유지) 2) 단계적 미군철수 (1992-완전철수) 3)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4) 중립국 감시군 주둔 • 87년말까지 인민군 10만 일방적 축소 • 「정치군사회담」의 직접 대화 논리에서 다시 「3자회담」으로 후퇴
<p>「3자외무장관회담」 (87.8.6)</p>	<p>외교부 대변인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외무장관 회담」제의(87.8.3)에 대한 「3자회담」(미국무장관 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의 선전 논리 • 차관급 예비회담(87.8월말)제의 • 쌍무적 예비접촉 주장 ※ 미·북한의 공식접촉 시도
「남북연석회의」(88.1.1)	김일성의 「신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범위: 당국·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재야의 개별인사 • 협의사항: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문제, 군축문제, 올림픽 공동주최문제, 비방중상 중지문제
「남북연석회의」를 위한 예비회담 (88.1.14)	중앙인민위·정무원·제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회담 명의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88.2.19 장소 : 판문점 대표 :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5-7인
남북학생회담 (88.4.2)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및 조선학생위원장 공동명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88.6.10 장소 : 판문점 ※ 88.3.29,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의 “국토종단순례” 실현공약에 대한 반응
「남북국회연석회의」(88.7.2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장」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 :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 회담형식 : 예비회담없이 연석회의 • 일시 및 장소 : 8월중 평양 ※ 88.7.9, 우리 국회의 “88서울올림픽 참가촉구결의”통보에 대한

		<p>반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동일자로 미국 상하 양원에 미·북한 국회회담을 제의
「고려연방제」실무협의를 위한 평화통일위원회 구성 (88.9.8)	「정권창건 40주년기념연회」에서의 김일성의 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결조건으로 미군철수 및 남북한간 불가침선언을 제시
「평화보장4원칙 및 포괄적 평화보장방안」발표 (88.11.7)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및 정무원 연회의」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원칙 : ① 통일지향 ② 외군철수 ③감군 ④ 당사자협의(3자) • 방안 : ①단계적군축 ② 정치군사적 대결완화
「남북고위정치군사회담」 (88.11.16)	「정무원 총리」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완화 (비방중상 중지·체제반대법제 폐지·합작교류·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군사연습 중지·군사책임자간 직통전화) 대표: 부총리급을 대표로 7-9인 일시: 88.12월 중순 ※ 전항의 평화공세의 일환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위한 예비접촉 (88.12.9)	「조국 평화통일 위원장」(허담)의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재야단체의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제창을 수락하면서 남북 및 해외 동포 대표의 예비접촉제의
「3자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88.12.20)	「정무원총리」(연형묵)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및 미국의 차관급 실무대표 • 12월중 제네바 등 제3국

「남북체육회담」 (88.12.21)	북한 올림픽 위원장(김유순)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에 단일팀구성 출전을 위한 회담 • 89년 2월중
「전대협」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초청 (88.12.26)	「축전준비위」 및 「조선학생위」의 공동명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대표 9-11인으로 3월초 판문점에서 예비 회담을 열 것을 제의
「남북정치협상회의」 (89.1.1)	김일성의 「신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연방제」협의를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면서 한국의 4당 총재 및 재야인사를 지명 통보
총리급 고위 정치군사회담 수락 (89.1.16)	「정무원 총리」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12.28, 한국 총리의 「고위당국자회담」제의 서한에 대한 사실상의 수락

8. 統一의 展望

남북한의 통일관 및 통일정책과 통일접근자세는 상극적이리만큼 대조적이다. 다음의 비교일람표<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의 개념, 목표, 주체, 원칙, 과정 등의 근본적 차이는, 통일을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을 통한 민족공동체 회복으로 보는 우리의 통일관과, 이를 「계급투쟁」, 「계급혁명」³⁷⁾이라고 보는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통일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37) 북한의 프롤레타리아 해방노선에 관하여는 이상우, 「남북한 통일정책의 이론구조 비교」 전계 「민족화합 민주통일론」p.79 참조

〈表 4〉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일람표

요 소 별		구 분	한 국	북 한
정 책 면	통 일 의 개 념		민족공동체 계승·발전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 일 의 목 표		국가적통일(1민족 1국가)	연방제 (지역자치제)
	통 일 의 주 체		민 족	노동계급 (공산당 및 동조세력)
	통 일 의 원 칙		자주·평화·민주·복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 결 (남조선혁명)(연공합작) (통일후 교류협력)
	통 일 의 과 정		평화정착·민족공영·평화 통일	선 남조선 혁명 후 흡수통일(적화통일)
접 근 자 세 면	전 제 조 건 문 제		조건 없음	선결조건 제시
	상 호 인 정 문 제		동반자 관계 (정치적 실체로 인정)	체제부정 (혁명의 대상)
	대 화 기 구 문 제		실질적 협의기구	군중대회(선전장)
	교 류 · 협 력 문 제		당장 실시	연방제 실시 이후

이와 같은 외형상의 상극성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통일의 여건과 환경은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첫째, 우리의 통일주도역량이 신장되어 북한을 대결·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동반자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할 민족공동체로 포용하고 도와서 평화와 통일의 광장에 유도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필요로 하고 돕지 않을 수 없도록 주변4강을 비롯한 국제환경을 착실하게 조성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의 성숙을 들 수 있다. 이에선 민족의 저력에서 비롯된 국민의 성숙한 민족공동체의식, 민주발전을 통한 정치적 정통성의 확보, 선진국 수준

으로 발돋움한 비약적 경제발전, 서울 올림픽을東西和合과 민족문화 선양의 大祭典으로 성공시킨 민족적 자긍과 국제적 지위향상 등 종합적 국력이 뒷받침한 것이다.

둘째, 평화와 통일의 일방당사자이고 동반자이어야 할 북한이 아직도 겉으로는 교조적이고 군사모험주의적인 對南路線을 추구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평화에 대한 수요를 느끼고 대내외정책, 특히 대남노선을 현실적·실용적으로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안팎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통일 객체의 여건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는 북한의 교조적 혁명노선과 폐쇄적 「자급 자족경제체제」³⁸⁾의 한계성에서 오는 남북한 발전격차의 심화, 무모한 군사모험주의적 대남노선에서 오는 재정적 압박, 북한주민의 의식 및 욕구수준의 변화, 공산권의 개방·개혁정책으로 상징되는 변화추세가 미치는 영향, 소련·중국간의 관계 정상화에서 오는 줄타기외교의 한계, 동서진영간의 공존 및 교류협력 추세에서 오는 국제적 고립 위험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1988년의 정치발전과 올림픽의 성공을 계기로 한 한국의 국제적 명성 및 지위 향상과 북방정책 성과의 가시화는 마침내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주민에게도 남한이 이른바 “해방되어야 할 미제의 식민지”가 아니라 북한이 본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신흥공업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북한의 노선조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한 국제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에 는 주어진 것 (所興)도 있고,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 (所得)도 있다. 미·소간의 INF 폐기협정 체결

38) 북한의 「자급자족경제」는 사실상 허구적인 선전에 불과하다. 소련 과학아카데미 소속의 게·데·포로라야 박사는 “북한에 있는 공장·기업소 64개는 전적으로 소련의 원조에 의해 건설 운영되고 있다”고 공개하였다. (87. 2월호 「극동의 제문제」誌 모스크바 발행)

로 상징되는 화해와 협력, 정치이데올로기와 명분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동서간의 해빙과 공존·협력 추세, 공산권의 개방 및 개혁의 확산(보편화)현상 등이 前者에 속한다면, 북한의 동맹세력인 중국·소련까지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한국을 발전모델로 삼아 교류·협력과 실질관계 개선을 위해 접근하도록 한 통일환경의 개선은 분명히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기에 後者에 속한다.

가. 통일의 促進要因과 沮害要因

우리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는 아직도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尙存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요인들을 살펴 보면, 첫째,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와 문화전통의 깊은 뿌리에서 비롯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과 성숙한 민족공동체의식에서 연유하는 강한 통일의지를 들 수 있다. 더우기 분단의 장기화나 북한체제의 이데올로기적 민족이질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동포의 민족문화의식의 내면에는 아직도 동질적인 소질과 회복력이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도 남북한간의 인적교류폭이 넓어짐에 따라 확인되고 있다. 이는 5천년의 민족문화를 「공산주의적 새형의 인간」³⁹⁾개조를 위한 40여년의 정치교육으로는 말살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둘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평화와 통일의 주·객관적 여건과 환경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① 주체적 통일주도 역량의 신장 ② 북한의 노선조정과 변화의 조짐 ③ 주변4강의 대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국제적 통일환경의 개선을 말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부

39) 북한의 교육목표이다. (북한헌법 제39조), 전계 「북한개요」p.355 참조

정적인 통일저해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통일주도역량면의 주체적 취약점을 들 수 있다. 우리 체제가 민주발전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국민 각계층의 상충하는 욕구, 무분별한 통일논의로 인한 국론분열, 사상적 혼미, 지역·계층간 갈등의 심화 등 문제를 슬기롭게 수습하지 못하여 정치사회적 혼란과 국가안보상의 취약점이 드러난다면, 북한은 이를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이용하고 「남조선혁명」 또는 「비평화적방법에 의한 통일」(남침)의 대상으로 오판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오늘날 내외의 수요와 압력,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할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 사회를 개방하고 서방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 경공업 육성, 관광자원개발 등의 실용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개인우상화를 바탕으로 한 김일성 1인독재체제의 속성 때문에 개방과 개혁에는 한계가 있으며, 김일성의 지배체제가 유지되는 한 군사모험주의적 대남혁명노선의 포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남노선에 변화가 없는 북한체제의 개방과 개혁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만일에 북한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개방화, 실용화가 아니라 북한체제의 혁명역량 제고를 위한 개방과 개혁이라면 이는 오히려 평화적 통일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는 곧 혁명기지의 보강과 「남조선혁명 지원 역량」의 증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환경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주변4강의 오늘의 대한반도정책은 그들의 외교사령적 修辭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상고착화를 더 바라고 있으리라는 점이다. 현상타과를 의미하는 국가적 통일, 즉 정치공동체의 완성에 대해서는 통일된 한반도의 이념·체제·대외정책의 여하에 따라 강대국의 이해가 상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① 우리의 주체적 통일주도역량 ② 북한의 노선과 기도 ③ 국제적 통일 환경이라는 통일여건들은 서로 맞물려 있다. 통일에 상호작용하는 중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국제환경이라는 두 여건은 결코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어하고 조성할 수도 있는 객체이기도 하다. 결코 독립변수가 아니라 우리의 슬기와 힘으로 가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종속변수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短期 및 中長期的 展望

1988년 후반기 이래 우리 민족내부에서는 통일기운과 통일열정이 어느 때보다 드높이 표출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남쪽에서는 제6 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북한자료를 공개하고, 통일논의를 개방화·활성화시키고, 「7·7선언」과 같은 일방주의적 대북 포용정책을 펴 왔는데, 여기에 올림픽 이후의 민족적 자긍심과 운동권 학생의 통일운동도 加勢 작용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정과 기대를 고조시켰고, 북쪽에서는 남쪽의 정치적 과도기를 겨냥하여 다차원적인 대화 및 평화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는 경쟁적으로 추측·과장·편향·왜곡 보도함으로써, 마치 올 가을에 금강산 관광여행이 가능해 지고,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환상적 분위기를 만든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밑바탕에 통일에 대한 국민의 恨과 悲願이 상승작용의 촉매제로서 깔려 있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관념적인 통일염원이고 정책적 지향일 뿐이지 평화와 통일의 실체는 아니다.

북한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가 평화적 통일의 전제라고 표방하여 왔지만, 그 해결을 위한 「고위당국자회담」과 「국회회담」의 예비회담(준비접촉)까지도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내세워 지연시키

거나 기피하고 있다. 그들이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매관 자본가의 총수」적인 한국의 기업인을 고향방문 명분으로 국민예우를 하면서 금강산 공동개발과 중공업분야의 합작에까지 매달리면서도 중단시킨 적십자회담이나 경제회담을 재개시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반정부적 성향의 「全民聯」⁴⁰⁾, 「全大協」⁴¹⁾에는 추파를 보내고 초청장도 보냈다.

이는 북한이 자본과 기술은 필요하지만 책임과 권한이 있는 남북한당국간의 대화는 물론 사회개방이 뒤따르는 이산가족의 재회사업도, 공개적인 교역과 경제협력도 할 처지가 아니고 그럴 의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대남혁명노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대화 및 평화공세를 통하여 「남조선혁명」을 부추기고 지원하겠다는 공공연한 도발이기도 하다.

더우기 북한은 지금 88서울올림픽을 의식하여 誘致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대규모적으로 준비하고, 부진한 제3차7개년계획(1987-93)을 추진하는 데 여념·여력이 없으며, 이른바 연속적인 「200일 전투」에 주민을 총동원하는 실정이다. 이 총동원을 선동하는 데는 남북대화가 가져올 긴장완화나 화해분위기보다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북침전쟁 연습(演習)」이라고 선전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1~2년의 단기적 전망은 비록 몇 가닥의 남북대화가 재개·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공존공영을 위한 교류·협력 등 평화나 통일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1989년 5월로 예정된 중국·소련의 정상회담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북한방문 결과에 따라서 북한의 노선조정에

40)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41)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빠르면 1990년대 초, 늦어도 1990년대 중반부터의 중·장기적 전망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협력·사회개방을 통한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공존과 민족공영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장치까지 마련한 바탕 위에서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영을 실현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면 이는 민족의 기능적 통합 곧 내면적 통일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체를 20세기가 가기 전에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정책의지적 중간목표이기도 하지만 이런 전망을 뒷받침해 주는 주·객관적 요인들이 있다.

첫째, 1990년대초에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민주복지국가가 되어 공산권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국제적 위치에 설 것이다. 북한은 명실 공히 경쟁·대결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도와야 할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이 지금과 같은 「유일사상체제」와 교조적 대남혁명노선을 수정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공산권에서도 고립되고, 체제 자체를 지탱하기도 어려운 안팎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변화 조짐으로 보아서 제3차7개년계획이 끝나는 1993년쯤에는 사회를 개방하고 실용적·합리적 노선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빨치산세대의 퇴진과 정규교육을 받은 테크노크라트의 등장, 주민의 의식 및 욕구수준의 향상, 외래사조와 정보로부터의 완전 차단 불능, 중·소의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적 통일환경면의 중장기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국제질서와 정세의 발전추이는 이데올로기보다는 국익을 우선하여 평화공

존과 교류·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공산권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개방화·다원화·자유화·실용화·복지화를 추구하고 있다.

더우기 1990년대에는 우리의 북방정책의 성과로 거의 모든 공산 국가와의 관계가 증진되어 국제적 동반자관계가 형성될 것이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협력을 바라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곧 남북한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의 결정적 계기가 되고 큰 영향력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에 부정적인 요인들은 우리 국민의 슬기와 힘으로 극복·개선하고 긍정적인 요인들을 극대화하여 나갈 때, 국가체제적 통일까지 완성할 수 있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9. 結 言

우리 민족의 생존·번영·자유와 자존이 걸린 평화통일은 「되는 것」(Werden)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Machen)이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기와 힘으로 성취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우리 세대가 실현시켜야 한다는 민족사적 소명의식,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체제로의 평화적 통일만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민족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신념,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지 등은 통일의 원동력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성취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며,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시대를 사는 현세대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빠른 기간 안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민족사의 단절 위험성이 높아지고 통일의 길이 더 멀어질 뿐 아

나라 민족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일의지를 결집하여 평화통일주도역량을 기르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민족의 共榮과 재결합을 앞당기기 위한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겠는가.

첫째, 국론통일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전쟁도발을 억지함으로써 평화를 지켜야 한다. 국가안보의 연장선상에 평화적 통일이 있다.

둘째, 정치발전과 균형성장을 바탕으로 국력을 기르고 엮어서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에서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여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 국력은 곧 重力이요 중력은 곧 引力이다. 우리가 먼저 선진적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여 통일의 준거가 되는 모범을 보일 때, 북한을 민족의 품에 안기게 하는 포용력·흡인력이 될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의지와 역량으로 북한에 대한 설득과 포용을 적극화하여 평화·공영·통일의 광장에 동참시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데는 “태양과 바람의 외투벗기기”에서 보여주는 이솝의 寓話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분단 40여년이 길고 비극적이었지만 5천년의 민족사에서 보면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반세기의 분단사 중에서 남북한간의 공식적인 대화와 접촉이 시작된 기간도 겨우 17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5년이나 10년은 우리가 겪은 50년이나 100년보다도 더 빠른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역사적 경험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류문화도, 과학기술도, 세계 사상사조도 그렇고 우리 통일문제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1989년을 평화와 통일의 元年으로 삼아 1990년대를 평화통일의 전기를 마련한 우리세대의 보람찬 연대로 역사에 새길 수 있게 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런 밝은 전망도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봄이 가까와졌다는 분명한 신호임에는 틀림이 없다.

II. 韓半島 周邊情勢와 統一環境

尹 炳 益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우리나라는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 세계의 최강대국들에 둘러 쌓여 있다. 그리하여 지정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성격을 변경적 위치, 교량적 위치, 완충적 위치 혹은 중앙적 위치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邊境的位置란 아시아대륙의 변두리 혹은 유교문화권의 중심부인 中華文明圈으로부터의 변두리란 의미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가 미·소를 중심으로한 동·서세력권으로 양극화되면서 중심부인 미·소로부터 변두리란 국제정치적 의미를 지니기 시작하였다. 이런 국제정치적 주변지역은 대체로 미·소가 세력을 겨루는 분쟁지역일 경우가 많다. 한국전쟁이 말해주듯 우리 한반도도 예외일 수 없다.

橋梁的位置란 중·소 등 아시아대륙세력과 미·일 등 해양세력이 각각 해양과 대륙쪽으로 팽창정책을 추구할 경우 반드시 건너가야 할 「징검다리」와 같은 지역이란 뜻으로서 양대세력은 통상 징검다리 위에서 맞부딪치게 마련이다. 멀리는 임진왜란(1592-98, 宣祖 25~31년)때, “명나라를 치러가기 위한 길을 빌려달라”는 풍신수길의 「征明假道」란 말이, 가까이는 청일전쟁(1894-1895), 노일전쟁(1904-1905), 중일전쟁(1937-1941)에 이은 태평양전쟁(1941-1945) 그리고 한국전쟁(1950-1953) 등이 한반도가 지닌 교량적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기원에 대해서는 ① “사실상 金日成의 작품”이라는 흐루시초프 회고록의 증언 ② 김일성과 박헌영간의 국내세력다툼의 연장선위에서 발발되었다는 등의 주장이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스탈린의 아시아·태평양진출전략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간의 권력투쟁으로 한반도가 그 투쟁의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緩衝的位置란 한반도 주변강대국들의 힘이 서로 직접 맞부딪치지 않도록 한반도를 중립시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며, 中央的位置란 주변강대국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주변강대국에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상 변경적위치, 교량적위치, 완충적위치 그리고 중앙적위치 등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성격 가운데 지금까지는 주로 변경적위치와 교량적위치로서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그리하여 우리 한반도는 주로 강대국의 '전쟁터'였을 뿐만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정치는 우리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를 분단시킴으로써 40여년 이상 민족적 비극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수성에 따른 민족적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의식구조 속에는 이른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부정적 주변정세관이 잠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주변정세관은 일제가 36년 동안의 식민통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조작해낸 「植民史觀」과 상승작용을 하여 강대국 틈바귀에 끼인 우리 민족의 자아의식은 위축되어 스스로 '약소민족'임을 자처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물리적으로 약소국가가 아니다. 우리 한국만의 경우에도 세계 170여개 나라중 인구 23위, 1인당 국민총생산 32위, 국민총생산 18위, 그리고 10위권의 무역국가로서 수출입총액이 1,000억달러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남북한을 합할경우 수치는 더욱 상회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한민족은 신라통일 이후만 따져도 1,300년 가까운 오랜 세월,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 왔으며, 최근 고고학상의 발굴및 연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일본문화의 뿌리가 한반도임이 드러나 「식민사관」의 허구성이 밝혀지면서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우수한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성공

시킨 '88서울올림픽은 민족사에 길이 기록하여 마땅할 것이다.

이제 우리 민족은 “성취시킬 수 있다”는 민족적 자신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민족통일의 위업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한다. 민족통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민족자신으로서 통일은 당연히 민족주동적으로 이룩되어야 하나, 앞서 밝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변강국의 對韓半島 정책 및 전반적인 주변정세의 흐름을 외면한 채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한민족은 주변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민족통일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런데 통일환경으로서의 한반도 주변정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계군사정세와 세계경제정세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¹⁾ 지금까지는 세계군사정세 위주의 주변정세를 생각해 온 감이 없지 않았으나, 동서체제 사이의 脫이데올로기적 교류가 심화되어 가는 추세하에서 통일환경으로서 세계경제정세의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기 때문이다.

2. 世界軍事情勢와 한반도

가. 미·소의 軍事政策과 신「데탕트」시대

세계군사정세는 군사대국인 미·소의 군사정책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²⁾ 정규군 약 300만(군현대화정책에 따라 100만을 감군하고 그

- 1)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환경으로서의 주변정세를 분석하는 시각은 통상 미·소, 중국, 일본등 한반도주변강대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으나, “나무만을 보고 숲을 못보는 결함”이 있는듯하여 주변정세를 세계군사정세와 세계경제정세로 크게 나누어 분석을 시도해 보았음, 국제정세의 핵심이 군사정세로 부터 경제정세로 옮겨 가는 듯한 시대적 특성도 고려하였음.
- 2) 세계군사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후 형성된 동·서냉전체제의 핵을 이루었던 양대군사대국인 미·소의 군사정책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다. 그리고 미·소의 군사정책은 「지역분쟁」(Local Conflicts)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소의 군사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세계군사정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대신 정예화시킴)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비록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대무기의 정밀도면에서 미·소에 미치지 못하므로 군사대국이라 말할 수는 없다. 군사대국인 미·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동·서냉전체제하에서의 군사적 양대핵으로써 치열한 군비경쟁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소련은 1962년 「쿠바」에 미사일기지를 만들려는 계획이 미국의 압력으로 무산된 이후 대체로 GNP 14% 내외의 방대한 군사비를 투입, 군사력 증강정책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군사력면에서 이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 정규군 11만여를 투입하여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함으로써 미·소관계를 신 냉전상태로 몰아 넣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은 중국을 포위한다는 군사전략적 의미를 내포하는 일방,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거쳐 「페르시아만」의 유전지대를 확보하려는 소련의 세계군사전략과 직결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때 미군사당국은 “소련이 「이란」에서 포문을 열면서 美 제7함대의 인도양 진입을 봉쇄시키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김일성을 앞세워 開戰한다”는 내용의 「악몽의 시나리오」란 제3차 세계대전의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하기도 했다.

소련의 군사력 팽창은 1975년 「헬싱키체제」로 「나토」와 「바르샤바」체제간의 군사적 균형이 일단 이루어지면서, 1983년 대한민항기 격추사건 때 드러난 바와같이 중·소국경지대에 이어 극동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소련은 주지하는 바와같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모항으로 하여 大小 함정 800여척으로 구성된 소련 최대의 태평양함대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1984년경 「시베리아」개발을 표면상 이유로 내세워 「바이칼호」에서 흑룡강(아무르강)에 이르는 3,200Km의 제2시베리아철도—속칭「밤」철도—를 일단 준공함으로써,³⁾ 중·소분쟁으로부터 위협당하지 않는 「블라디보스토크」항에

3) 소련은 1974년 「밤」철도공사를 발표하여 제10차 5개년계획년도(1976~1980)를 기하

대한 군사보급로를 확보하기에 이르러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진출 전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뿐만아니라 1984년과 1986년 양차에 걸친 金日成의 訪蘇를 계기로 북한과 소련사이의 군사밀착관계가 가속화되어 이제 소련 태평양함대는 북한의 나진, 청진, 원산항 등을 사실상 기지로 사용하여 제정「러시아」이래 부동함을 얻기 위한 「남진정책」의 발판을 구축한셈이다. 그리하여 소련은 「블라디보스토크」항, 북한, 1975년 월남공산화 이후 차지한 「캄란항」 그리고 인도양에 이르는 전략망을 구축하기에 이르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정면으로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의 군사력팽창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위협일 뿐만아니라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비롯한 중동사태, 「니카라구아」, 「엘살바도르」등 중미사태, 「앙골라」등 「아프리카」지역분쟁 그리고 「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 등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범세계적 차원에서 미국 및 자유세계의 국가적 이익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소련의 군사력증강에 대응하여 1980년 집권한 미「레이건」행정부부는 「카터」행정부부의 나약한 인권외교에서 탈피하여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여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소련을 협상으로 끌어낸다”는 對蘇강경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미행정부부는 연간 약 3,000억 달러 내외⁴⁾— 월남전비 총액 1,500억달러와 비교해 보면 그 규모가 짐작됨—의 방대한 군사비를 투입하여 B1전략폭격기, 중성자탄, MX「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드디어 「전략방어구상」

여 본격적인 부설공사를 실시, 제11차 5개년계획년도(1981~1985)가 끝나면서 일단 준공시켰다고 하나 1988년 12월 28일자 「프라우다」는 「밤」철도완성을 위한 서방측 자본및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뿐만아니라 소련은 「밤」철도건설에 이어 「야암」철도(AYAM)건설을 추진시키고 있음. 이것은 「아무르」·「야쿠츠크」간선철도로서 「밤」철도 최북단 「베르카퀴트」에서 소련의 최대석탄매장지인 「야쿠츠크」에 이르는 830km 거리의 남북중단철도임.

4) 미국의 연간군사비는 연도별로 가감이 있으나 「레이건」행정부부는 집권8년동안 총 2조1천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였음.

(SDI)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MX「미사일」은 이동식 지하발사대를 만듦으로써 소련의 대륙간탄도탄 공격의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제2타격능력」(Second Strike)를 확보함으로써 제3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다는 군사전략적 발상의 산물이며, 「전략방어구상」은 우주기지로 부터 「레이저·빔」을 발사하여 소련의 대륙간탄도탄을 분쇄시킨다는 방어전략개념의 산물이다.

「레이건」미행정부는 이같은 군사력 증강정책과 더불어 우리 한국, 일본 그리고 사실상 중국까지 포함시켜 군사동맹망을 확충하였다. 對韓방위공약을 강화하고 한·미연례안보회의를 활성화시켜 대한국 사협조관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미국은 일본에 대하여 경제력에 상응하는 자유세계 방위비의 분담을 강력히 요청하여, 국민총생산 대비 1%의 방위비증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특히 극동지역의 정치군사정세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당국은 한때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만족하고 절대로 군사대국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아시아」지역국가에 대하여 日帝侵略의 악몽을 되살리지 않으려는 정책선택이란 해석을 가능케 하였다. 일본군사전문가들은 “만일 가상적인 소련을 겨냥하여 일본이 대륙간탄도탄으로 핵무장을 하였을 경우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열도는 소련탄도탄 한발로 초토화 될 것이므로 비무장이 최선의 무장이란” 이론을 펴기도 하였으며, 또 소련의 태평양진출전략은 ① 1950년말 1951년초 스탈린·모택동협상에서 만주를 중국에 반환하여 여순·대련항을 상실하고 ② 1950년 한국전쟁에서 실패함으로써 좌절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83년 소련의 대한민항기격추사건을 계기로 소련의 군사력이 일본열도 머리위로 내려미는 것을 실감한 다음, 주로 석유수송로 1,000해리의 안전을 담당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국민총생산대비 1%내외라고는 하나 300억달러 내외의 방대

한 군사비를 투입함으로써 미·소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실상 군사대국으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같은 일본군사력의 성장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일본의 역할은 경제적차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미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극동지역에서 미군사력의 역할감소추세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그 공백을 일본군사력이 메꿀것으로 예상되는 견해도 있어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협력체제내로 중국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 미국은 월남전 終戰 협상과정에서 월남을 포기하는 대신 중·소분쟁을 이용하여 중국을 미국편으로 끌어내는 이른바「키신저외교」를 전개하였으며, 중국은 전통적인 遠交近攻政策의 발상에서 미국의 힘을 빌어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려 하였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사이의 관계는 중국의 현대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자본과 기술의 지원이란 경제적 관계가 중심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지만 군장비 생산기술의 지원, 군사교육분야에서의 협조, 소련핵실험 탐지를 위한 시설활용,⁵⁾ 미함정의 중국항구 기항 등 군사적 협조관계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이 미국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를 묶어 對소군사협력체제를 만들어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실상 군사협력체제와 군비증강을 통한 “힘의 우위확보로서 협상을 유도한다”는 미국의 정책을 소련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극동판 나토」⁶⁾라고 규정,북한과 군사밀착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몽고, 베트남과 함께 이른바 「극동판 바르샤바」동맹체제를 구축해 가면서, 결국 협상으로 방향전환을 한셈이다. 소련은 일본의 재무장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일본이

5) 미국은 중국의 新疆「위그루」자치구에 소련핵실험 탐지시설을 가동시키고 있음.

6) 1984년 및 1986년 김일성 소련방문 때 소련측 연설문 및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극동판나토」”라고 표현하고 있음.

재무장되면 미국은 중동지역으로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등 運身의 폭이 넓어지는 반면에, 소련은 미국만으로도 힘이 겨운 가운데 “2중의 敵”을 상대하는 어려움에 빠진다. 뿐만아니라 미국과 군비경쟁을 계속하면 경제는 더욱 침체해지고 주민생활의 어려움에 따른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소련의 대미군축협상으로의 정책전환은 연간 약 3,000억달러의 군사비부담을 안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호응을 얻게되었다. 사실 「절대 무기」로서 실전에 사용할 수 없는 핵무기경쟁은 의미가 없으며, 월남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통하여 국제정치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한계를 체험한 미·소군사대국은 1987년 12월7일 역사적인 「중거리 핵전면폐기협정」(INF 협정)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 협정에 따라 미·소는 射程 500~5,000km의 지상배치 중거리핵을 3년 이내에 전면 폐기시켜야 한다. 미·소는 철저한 상호감시하에 중거리핵을 이미 폐기하기 시작하였으며, 합상배치 및 항공기 적재의 중거리핵은 효과적인 감시방법이 없으므로 협상대상에서 배제시켰을 뿐이다.

그리고 중거리핵전면폐기협정의 체결에 힘을 얻은 「제네바」미·소군축회담은 미·소가 보유한 대륙간탄도탄을 각각 50%감축협상을 벌이기에 이르러, 이른바 신「데탕트」시대를 개막하였다.⁷⁾

나. 신「데탕트」시대와 한반도의 緊張緩和

미·소군사대국이 중거리핵 전면폐기협정을 체결하여 이른바 신

7) 중거리핵폐기협정에 이어 1986년 11월 부터 「비엔나」에서 개최중인 「유럽안보협력 회의」는 1989년 1월15일, 인권문제및 재래식군비감축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인권안보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신「데탕트」는 한걸음 더 진전되었으나, 미「부시」행정부의 참모진에서 「고르바초프」의 신「데탕트」를 경제건설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서방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어 귀추가 주목됨.

「데탕트」시대를 개막하자 「중·소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지역분쟁(Local conflicts)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등 바야흐로 범세계적 긴장완화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현대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국경지대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소련 또한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을 위해서는 중·소국경의 안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미·소군사대국이 신「데탕트」정책을 추구하면 「지역분쟁」도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기울게 마련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地域紛爭의 배후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소군사대국의 세력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미·소간 신데탕트는 지역분쟁이 지속되는 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소군사대국이 신데탕트정책을 추구하면 지역분쟁도 긴장완화 방향으로 기울어져,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군, 쿠바군의 앙골라 철군, 이란·이라크전쟁의 휴전, 「팔레스타인」문제의 해결기미등 범세계적으로 긴장완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완화 분위기속에서 동·서이념을 초월하여 거의 모든 회원국의 참여속에 '88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루어 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소군사대국간의 신데탕트의 波長은 오늘날 이데올로기를 주축으로한 한반도의 갈등을 완화시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분단독일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평화공존관계를 정착시키고, 중국문제는 「하나의 중국」정책이 이미 국제적으로 정착단계에 있을 뿐만아니라 중국과 대만사이의 힘의 현격한 격차는 중국문제해결방향을 사실상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문제만이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미·소군사대국간 신데탕트시대의 개막과 궤를 같이하는 중·소사이의 국경회담 진전 등 전반적인 긴장완화 추세는 북반으로 하여금 대남전략 선택의 진폭을 좁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추

구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분쟁을 틈탄 북한의 「양다리외교」는 사실상 어려워짐으로써 북한은 중·소의 한반도 긴장완화정책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소사이의 신데탕트시대의 개막과 한반도의 긴장완화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강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과 관련지워 좀더 상세히 살펴보자. 만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한반도와 군사적 利害關係가 깊은 주변강국은 개입이 불가피하여 결국 주변강국간의 긴장으로 확산되므로 신데탕트정책을 추구하여야 될 주변강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필요조건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 주한미군을 파견하고 있는 미국은 「제2의 한국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원래 주한미군은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당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진주하였었다. 미국은 당시 만주지역의 이른바 일본관동군 100만의 군사력을 과대 평가하여 소련의 참전을 계속 증용하였었다. 태평양전쟁에의 참전을 주저하였던 소련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어 일본의 敗色이 짙어지자 전격적으로 참전을 결정하고 파죽지세로 한반도를 석권하기 시작하여 소련군의 최전방부대는 춘천까지 이르렀다. 이 때 극동지역의 미군은 한반도로 부터 약 600마일 떨어진 「오키나와」에 이르렀기때문에, 전한반도가 소련군에 넘어갈 상황에서 미군부는 서둘러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잠정군사분계선」으로서 38도선을 생각해 내게 되었다. 당시 전한반도를 석권할 수 있는 유리한 군사정세하에서 춘천까지 진격한 소련군을 후퇴시켜 38도선 군사분계선案에 스탈린이 동의해 온것은 “한반도에서 다소 양보하는 대신 일본본토를 분할하려는 對美흥정을 위해서였다”는 학설도 있다.⁸⁾ 이 흥

8) 金一平 교수의 입장.

정에서 실패하자 스탈린은 1949년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불러들여 한국전쟁을 모의했다는 것이다.

여하튼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한국전쟁 이전에 전부 철군하였었다.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과소 평가하여, 1948년 2월8일이면 이미 북한지역에서 인민군을 조직하고 대남무력침략태세를 완비시켜 놓은 다음 철군을 한 소련군의 뒤를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한국전쟁을 발발시켜 소련의 군사팽창정책이 표면화되자 트루먼 미행정부는 「유엔」군의 간판밑에 미군을 파견하여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한반도를 자유세계 방어의 전초기지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미행정부는 한 때 주한미군의 단계적철군정책을 추진하였다. 그것은 미국이 월남전 종전협상과정에서 중국을 미국편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하였으므로 대중국봉쇄망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였다.⁹⁾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같이 1975년 헬싱키체제의 성립으로 구라파의 군사정세를 우선 일단락시킨 다음 소련이 대극동 군사팽창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등 소련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써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비중을 완전히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연된다면 주한미군은 마땅히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중국 특히 산업지대인 만주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외곽방어권으로 생각하는 특유의 대한반도관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인 유교권 국제질서하에서 한반도를 「屬

9)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중국봉쇄, 대소·대북한전략, 심지어 한국군의 군사행동 견제 등 복합적이지만, 「카터」행정부의 일부 주한미군철수 시도는 물론 「닉슨·독트린」의 연장선상의 조치이지만, 월남전협상타결을 계기로 중국을 미국쪽으로 끌어 낸 자신감의 산물이란 측면을 지적한 것임.

邦」으로 규정, 중국영토를 內境으로, 한반도를 外境으로 생각하여 이른바 「唇亡齒寒」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바, 이같은 대한반도안보관을 사실상 지금까지도 견지하고 있다. 현대 국제정치적개념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산업기지인 만주지역은 수풍뎀 전력의 상호사용등 북한과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북한지역이 일종의 완충지역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제3국의 군사영향권으로 넘어가면 만주지역의 안보가 위협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1950년 한국전쟁때 유엔군이 38도선을 넘는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주은래중국수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미국에게 경고를 보냈으며, 트루먼 미대통령과 「맥아더」8군사령관 사이의 태평양상 「웨이크」도 회담 후 유엔군이 마침내 38도선을 넘자, 중국은 1949년 대륙공산화 직후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즉각 참전, 괴멸직전의 북한을 회생시킴으로써 휴전을 가능케 하였고, 1958년 중공군이 북한에서 철군한 이후에도 중국과 북한은 이른바 혈맹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중국은 1961년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란 사실상의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여 북한의 안보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이 특히 1984년 김일성의 訪蘇를 계기로 나진·청진·원산 심지어 남포항에 대한 蘇태평양함대의 기항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등 대소군사밀착 관계를 유지하자, 청도항을 미국함대에 개방하는 등 대미군사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세관이 기본적으로 순망치한이란 동일안보권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바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소련과 북한은 최근들어 군사적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김일성은 「東北抗日聯軍」으로서 중공군과 더불어 이른바 항일빨치산투쟁을 하다

일본군에 쫓겨 蘇領에 들어가 있다가 해방과 더불어 북한땅에 들어와 「스탈린」의 대극동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정권을 세우고, 이어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소련과 북한은 ① 중국과는 달리 한국전쟁 중 소련의 소극적인 지원 ② 1956년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호루시초프」의 평화공존노선 표방후 발생한 중·소이념분쟁에서 북한의 대중국傾斜 ③ 1962년 「쿠바사태」와 中印국경분쟁을 계기로 북한의 4대군사노선 채택등의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북한은 중국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다가 중국의 실용주의노선에 따른 대미·일 개방경제정책을 계기로 1984년 김일성의 방소로 소련과 북한 사이의 군사밀착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소련은 북한이 한반도군사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3자회담」, 즉 남북한 불가침선언과 미·북한사이의 평화협정 체결방안을 소련을 소외시킨 채 미·중국 관계정상화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군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은 1950년 한국전쟁시 소련군이 「미그」기 조종사로 참전하였으며, 전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만주지역에 5개사단을 배치시키고 있었다는 등의 논문을 발표하여 한반도 군사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다.¹⁰⁾

「고르바초프」소련공산당 서기장은 1988년 9월16일 '88서울올림픽 개최 바로 전날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와서 일련의 세계군사문제를 언급하면서 소·중·일·남북한에 인접해 있는 연안국간에 해·공군력감축을 위한 다국간협상을 제의한 바 있다. 한반도 군사문제해결에서 소련이 소외되지 않으려는 강한 의중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북한과 소련관계가 밀착화되자 1988년 북한을 방문한 세

10) 한국전쟁시 소련의 참전사실을 밝힘으로써 한반도의 군사문제 해결에 소외되지 않으려는 소련의 기도는 「과학아카데미」에서 발간하는 「극동의 제문제」 1986년 9월호 참조.

바르드나제 소련외상은 「共同報道」에서 북한의 3자회담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에 이른다.

이상과 같이 소련은 한반도와 양보할 수 없는 군사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며, 만일 이것이 위협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소련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을 할수 있다.

한편,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이해관계도 “한반도가 공산화의 위협을 받으면 일본도 궁극적으로 위협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타 주변강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일제침략전쟁의 역사적 유산때문에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의 테두리안에서 특히 해·공군력 중심으로 자유세계안보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군사력을 확충시켜 가고 있다.

이상 미·중·소·일등 한반도 주변4강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개관해 보았거니와 어느 한나라도 한반도의 군사전략적비중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처지이다.

미·소군사대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으며, 현대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변정세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미국 「스탠포드」大 국제전략연구소와 소련 과학「아카데미」산하 극동연구소는 1988년 6월 하순 소련의 「알마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반도의 안전보장강화와 협력관계증진이란 공동방안을 마련, ① 핵무기 및 한반도의 군사력대폭감축 ② 각료급으로 구성된 남북한통일문제협의기구설치 ③ 서울-평양간 통신망증설 ④ 위기관리체제 운용을 위해 1986년 9월 「스톡홀름」협정참조 권유등의 내용을 남북한은 물론 미·소·중국 및 일본 정부에 공동제출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스탠포드」大 국제전략연구소는 북한사회과학원과 “6개월마다 정례회의개최”를 규정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첫 회의

를 1989년 3월「스탠포드」대에서 개최하여 「한반도에서의 신뢰회복 및 긴장완화를 입증할 수 있는 군축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상과 같이 미·소군사대국사이에 신「데탕트」가 물고 올 한반도 긴장완화 추세가 통일환경의 개선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따져보기에 앞서 역시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경제정세의 흐름과, 세계경제속에서의 한국경제의 위상, 우리의 「북방정책」 그리고 중·소의 수정주의노선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世界經濟情勢와 한반도¹¹⁾

가. 아시아·태평양시대와 한국경제의 位相

세계경제정세의 큰 흐름중의 하나는 아시아·태평양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경제의 중심무대는 최근 중국이 경제현대화계획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놓은 「국제경제大循環論」¹²⁾을 빌릴필요도 없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되어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세계경제의 중심무대는 「에게해문명」, 「지중해문명」을 따라 이동하다가 「대서양문명」의 개막과 더불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때 까지 구라파에 머물렀었다. 특히

11) 세계경제정세라고 하면 자본주의권, 공산권 등 방대한 영역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나 국제경제의 추세를 밝히려는 뜻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시대」로 국한시켜 분석하였음. 중국과 소련의 대외개방 경제정책도 21세기 「아시아·태평양경제시대」를 전제로 한것으로 판단됨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시대」란 개념에서 세계경제정세의 대세를 파악하는 방식이 큰 무리는 아닐 것임.

12) 「사회주의초급단계론」과 더불어 중국의 「개혁」및 「개방」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조자양총서기의 이론으로서 국제경제는 순환함으로 중국의 현대화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것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임, “중국의 국제대순환경제발전전략”, 황해철, 「공산권연구」, 1988년 7월호 참조.

대영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한 때 세계경제를 좌우하였던 바, 오늘날 여세로서 영연방이 존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영제국의 위세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구라파가 왜 세계경제의 중심무대가 되었는가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과는 달리 구라파사람은 밀가루를 주식으로 함으로서 밀가루를 만들기 위하여 방아를 개발하였으며, 이것이 산업을 발전시켰다”는 설명을 한 바 있다. 여하튼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은 구라파를 이른바 「경제국가」로 만들었다. 한편, 구라파는 좁은 지역에 많은 민족이 살면서 서로 충돌하여 일찍부터 「군사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은 새로운 우수한 무기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됨으로 자연 무기경쟁을 하게 하였으며, 무기경쟁은 과학을, 과학은 경제를 연쇄적으로 발전시켜 구라파국가의 경제국가적 성격과 군사국가적 성격은 상호 보완작용을 하였으며, 드디어 구라파국가를 「식민지국가」로 만들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레닌」의 표현을 빌린다면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아프리카 및 아시아대륙의 희생위에 구라파의 경제적번영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구라파의 자본주의는 「레닌」이 지적한 바와같이 제국주의 전쟁으로 망하고 사회주의체제로 유물변증법적 발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후 식민지를 상실함으로써 일단 구라파대륙으로 축소되고 말았다.¹³⁾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어느새 세계경제의 중심무대는 미국으로 옮겨졌다.

미주대륙에 이주한 청교도 등 구라파사람들은 광활한 대륙을 만남으로써 자본주의를 마음껏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아프리카 식민

13) 김정일은 1988년 9월 25일 「로동신문」에 발표한 논문,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제국주의국가가 전쟁으로 멸망한다”는 「레닌」의 이론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음.

지의 희생위에 구라파의 경제적 번영이 가능했듯이, 흑인의 노예노동으로 미주대륙의 번영이 가능했던 것도 역사적 교훈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여하튼 미국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다음 오늘날까지 세계자본주의경제를 이끌어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경제는 연간 3,000억 달러 안 밖의 과중한 군사비부담은 물론, 각각 1,500억 달러 규모내외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듯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적 개방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경제의 존망성쇠는 한마디로 국제경쟁력에 달려 있으며, 국제경쟁력은 기술과 비교생산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리하여 미국경제는 기술이전과 더불어 노임수준의 저하로 비교생산비면에서 유리한 일본경제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와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등 이른바 「신흥공업경제」(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로 부티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갈브레이스」교수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중심무대는 미국→일본→한국→중국, 나아가서 인도로 옮겨질 것이라고 먼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¹⁴⁾ 오늘날 일본및 아시아신흥공업국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클라이슬러」자동차회사를 희생시킨 현대경영의 천재 「아이아코카」는 서독과 더불어 일본, 한국, 대만이 각각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국공내전을 통하여 단련된 정신력을 경제발전의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지만, 많은 구미학자들은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은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정신력의 소산”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일본경제

14) J. K. 갈브레이스교수는 「캐나다」출생으로 「캘리포니아」대 대학원에서 학위취득후 주인도대사, 「미경제학회」 회장, 현「하바드」대 명예교수인 미경제학회의 중진으로서 「신산업국가」, 「풍요한 사회」등 많은 저서가 있음. 주로 「비교생산비설」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중심무대의 이동및 동·서경제체제간의 收斂現象을 강조하고 있음. 1988서울올림픽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한국경제현황분석 강연을 함. 조선일보 1988. 9. 7 참조.

와 노사관계」등 일본문화와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또 어느 사람은 개인주의중심의 서구문화를 「원심력문화」로,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교적동양문화를 「구심력문화」로 규정하면서 마치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룰때 궤도를 이탈하지 않듯이 동서문화가 접목되어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가 발전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¹⁵⁾ 여하튼 아시아·태평양경제시대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문화적 혹은 정신적 「핵」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 아시아·태평양시대를 가능케하는 물리적기반(자원 및 시장)이 조성되어 있다. 우선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태평양연안의 남북미주, 일본 및 신흥공업국(경제), 동남아, 호주 및 「뉴질랜드」등 광범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실용주의노선에 따른 대외개방경제정책을 추구하여 중국경제가 사실상 서방경제권에 편입되어 가고 있으므로 충분한 물리적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현대화계획의 추진이 활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소련의 「시베리아」개발계획의 추진이 아시아·태평양경제시대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¹⁶⁾

이상과 같은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앞두고 한국경제의 위상은 한마디로 최선진의 일본경제와 정력적으로 현대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틈에 끼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자원과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직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이름으로써 후진국 경제개발의 한 모형을 만들어 냈다. 內需開發을 통한 경제발전을 주장하는 理論이 있으나, 산업화를 위

15) 「나카소네」전일본수상의 주장.

16)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토크」연설과 1988년 9월 16일, 서울올림픽 직전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에서 소련이 「아시아·태평양국가」임을 자처함. 소련의 「시베리아」개발계획은 다음 장을 참조.

한 필수자원인 원유와 철강석을 수입하기 위한 외화조달을 위하여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구조가 불가피하였으며, 1988년 수출 600억 「달러」를 돌파, 세계10위권의 수출대국이 되었다. 우리의 수출은 세계시장으로 광역화되고 있으나 수출품의 약 40%를 미국시장이 점유하여 대미흑자폭이 이미 1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하였다.

여하튼 우리 경제의 수출주도형성장은 불가피하게 보호무역주의 적 성향을 표출시키고 있는 미국, 일본, EC 등 서방선진경제와의 무역마찰을 가져왔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선진국들은 관세장벽을 더욱 더 높이는 한편, 공정무역을 내세워 우리의 시장개방과 환율인상을 강요함으로써 이제 겨우 선진국의 문턱을 넘으려는 우리 경제는 세계 최선진경제와 전면적인 경쟁관계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사회전반적인 민주화추세와 상승작용을 하여 경제개발단계에서 억제되었던 분배에 대한 참여의식이 폭발되면서 임금상승요인을 증폭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위협에 직면하였다.

이상 우리 경제가 부딪친 대내외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획기적조치로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던 바, 여기에 바로 「북방정책」의 경제적동인이 있다.¹⁷⁾ 대외개방경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경제나 「시베리아」개발계획을 추구하고 있는 소련경제는 무한한 자원공급원으로서, 미래의 시장으로서 자원약소국가인 우리 경제에게는 실로 매력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17) 「북방정책」은 서독「브란트」수상의 「동방정책」에 상응개념으로써 우리의 대중·소및 동구권 정책을 의미하나 주로 대중·소정책을 의미한다. 통일정책으로서의 대북한 정책은 민족내부문제임으로 「북방정책」의 범주에서 빼는 것이 옳다. 우리의 「북방정책」은 1973년 6월23일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제6공화국에서 본격화되었으며, 경제적·통일정책적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

마침 실용주의노선에 따라 현대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은 ① 지리적 근접 ② 중국경제발전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제공능력의 보유 ③ 중국의 자원을 필요로하는 한국과의 교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 등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적접촉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중경제 교류는 상호이익이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부메랑효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아시아·태평양시대의 한국경제의 위상은 미·일·서구 등 서방선진경제의 보호무역주의적 성향과 시장개방요구로부터 오는 중압 뿐만아니라 중국경제의 도전, 그리고 분배의 증대를 요구하는 국내경제적 요인 등으로부터 오는 도전적요인과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경제적활력과 「북방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무대의 전개등에서 오는 낙관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중·소의 「개혁」 및 「개방」정책의 실상분석을 통하여 보다 깊이 조명해 보기로 한다.

나. 중·소의 改革·開放政策과 한반도

중국·소련·동구권 등 공산권전반에서 「개혁」과 「개방」의 추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정착하고 있다. 「개혁」과 「개방」은 대내경제체제의 개혁과 대외개방경제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래 경제적인 것이었으나, 사실상 경제적개혁과 개방은 결국 정치·사회적요인을 동반하는 것이며, 특히 정치적민주주의의 실현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다만 정치적민주주의는 공산당독재를 위협하므로 우선은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① 사회주의노선 ② 인민민주의 專政 ③ 공산당의 지도 ④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을 「4대기본원칙」으로 표방하여 공산당독재

를 고수하려하고 있다. 「개혁」(페레스트로이카)와 「개방」(글라스노스트)정책을 뒤늦게 시작한 소련은 오히려 일부 선거에서 복수후보제를 실험해 보려는 등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성면에서 공산체제의 한계성이 개혁과 개방을 불러오듯이 경제적 개혁과 개방은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를 불러들이게 마련이므로 여기에 바로 현대공산주의의 고민이 있다.

중국은 1976년 모택동사망후 과도기를 거쳐 1978년 등소평을 정점으로 하는 실용주의정권이 정착된 후 모택동시대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등 이른바 「정치도덕적 자극방식에 의한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혁의지를 표방, 특히 같은 해 12월 당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商活」의 경제개혁 슬로건밑에 농업·공업부문에서의 실험적 경제개혁과 함께 과감한 경제개방을 단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1983년 10월 당12기 3중전회에서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이 채택됨으로써 경제분야는 물론 정치사회적 영역으로까지 개혁·개방정책이 확대되었다.

중국이 1978년 부터 추진해 온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의 특징은 사실상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재해석을 기초로 경제의 탈정치화·탈이념화를 추구한 점이다. 정치적으로 당의 지배를 축소시키고 정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당·정분리의 원칙밑에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며, 기구의 개혁과 더불어 간부제도의 개선을 꾀하는 등 정치체제의 개혁을 단행해 왔다. 이러한 정치적개혁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적 개혁과 개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개혁」정책은 우선 「인민공사」를 해체시켰다. 「인민공사」는 당·정·군 통합체로서 중국적공산주의인 모택동사상의 산물로서 중국농촌을 황폐화시킨 암적존재였다. 중국은 「대약진운동」시기 5만 6천개에 이르렀던 「농촌인민공사」를 해체시켜 약 9만 2천개의

「鄉鎮制」를 도입하였으며¹⁸⁾, 15년단위의 시한으로 농토를 농민에게 분배하여 사실상 「사유농화」시킴으로써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농업혁명을 이루어가고 있다.

또, 도시국영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독립채산제」를 확대하는 한편 공장장권한을 대폭 확대시켜 경영자율권을 강화하였으며, 자본주의적 파산제를 시도하여 기업의 생산성증대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상품경제)원리를 도입하였다. 물론 중국은 “상품경제는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며 사회주의경제하에서도 상품경제체제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소비재와 생산시장은 물론 금융, 노동, 기술정보 및 부동산시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장화를 추구하면서 계획가격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키고 협의가격 또는 시장가격의 명맥을 확대시키는 가격개혁과 시장화를 지향해 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중국의 경제개혁은 노동자계약제의 전국적실시, 증권거래소의 개설 및 개인기업의 허용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鐵飯碗」(쇠로 만든은 깨지지 않는 밥그릇)이라고 하여 「固定工制」를 실시하여 왔으나, 1981년 부터 노동자계약제를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다가 1986년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여 당시 계약노동자수는 이미 350여만(전체 노동자의 약 5%)에 이르렀다. 중국은 「個體戶」라고 하여 개인경영의 산매점, 서비스업, 수리업, 요식업 등 개인기업을 허용하고 있고, 1986년 1월23일 인민일보는 「개체호」(자영업종사자)가 1,700만에 이르며, 개인상업체 580여만개소, 요식업체 140여만개소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상과 같은 경제개혁을 바탕으로 무역의 활성화, 외국자

18) 「향진제」란 「인민공사」가 당·정·군통합체로서 군사적 편제를 한것과는 달리 鄉·鎮등 행정구역으로 개편한것을 말함.

본 및 기술도입의 촉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의 설치 및 경제개방구의 확대 그리고 국제경제기구에의 가입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심수, 珠海, 仙頭, 廈門에 이어 해남도를 성으로 승격시켜 섬전체를 「경제특구」로 만들었으며 大連, 天津, 煙台, 靑島, 上海, 福洲, 廣洲 등 연안 14개 도시를 개방하여 연안지대로부터 경제개발을 실시하여 그 여세를 몰아 내륙지역을 개발한다는 개발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1987년 10월 제13기 당대회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제시하여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장기적인 경제전략 노선으로 정착화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개혁속도와 물가및 임금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지도부내의 상당한 의견대립이 표면화되고, 그에 따라 개혁방향의 재조정이 시도되고, 외국기업과의 합작사업이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나는등 경제개혁및 개방정책에 많은 시련이 뒤따르고 있다. 어쨌든 오늘날 실용주의정책을 추진중인 중국지도부는 「사회주의경제의 개혁과 개방은 되돌릴수 없는 역사적대세임」을 확신하고 있다.

한편, 소련은 1985년 「고르바초프」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중국보다 뒤늦게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지방의 당제1서기와 「소비에트」 대의원선거에서 복수후보제의 도입, 반체제인사의 석방, 스탈린시대의 숙청자 명예회복 그리고 당정분리등 권력체계의 개편을 위한 헌법과 법률개정작업의 구체화등 정치적 민주화면에서는 중국을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소련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개혁은 첫째, 1988년 발효된 「국가기업법」에 따른 국유기업의 독립채산제 채택으로 비록 자본주의체제하의 기업경영활동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나 기업활동의 자주권을 대폭 확대 시키려는 것이었다. 둘째, 1986년 채택된 「개인의 영업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공업, 소비재생산 및 「서비스」부문등

29개업종에 한하여 국가기관의 허가밑에 개인영업활동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협동조합형태의 개인기업구성으로 국유기관과의 경쟁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고 소련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개방」은 첫째, 새로운 무역제도의 채택으로서, 1987년 부터 발효된 「대외경제관계의 개선에 관한 조치」의 핵심적내용은 그동안 대외무역성과 그 산하의 대외무역공관들이 독점했던 무역업무를 연방및 공화국의 성칭, 기업들에게 지방 분산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계획및 집행에서 중앙독점을 축소시켰다. 둘째, 1987년 발효된 「자본주의제국및 개발도상국과의 소련 영내에서의 합작기업의 설립과 활동방식에 관하여」란 법령에 따라 서방권과의 합작사업을 공식화함과 아울러 「블라디보스토크」부근의 「나호트카」, 중·소국경지대의 「포그라니투이」, 북한·소련국경 부근의 「하산」등이 극동지역에서 중국류의 「경제특구」로 지정될 개연성이 높아 대외개방경제정책을 본격화시킬 조짐이다.

이상과 같은 중국과 소련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한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관계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중국은 특히 「한국전쟁」이래 「혈맹관계」라고 하여 대북한밀착정책을 추진해왔으나 1983년 중국민항기 한국불시착사건을 고비로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스포츠, 경제교류등 우리와의 관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바, 주로 중국현대화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술및 자본도입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983년 2월 중국 곤명시에서 개최된 「데이비스」컵 아시아동부지역예선에 참석한 바 있으며, 중국은 같은 해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청소년농구대회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에 각각 참가하여 이제 한·중스포츠교류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한·중교류의 핵심은 경제교류로서 홍콩 등을 통한 직·간접무역액은 1981년 약 6억 달러이던 것이 1986년에는 약 20

억달러, 1987년에는 30억달러수준에 이르렀다.¹⁹⁾ 1988년 문희보는 신화통신을 인용하여 “중국은 청도, 煙臺, 威海, 잡방, 뇌박, 제남, 日照, 東營등 산동및 요동반도의 8개시를 경제개방구로 지정하여 한국기업의 집중적인 투자유치를 기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산동반도는 역사적으로 「신라방」, 「신라원」, 「고려보」등이 설치되었던 지역으로 현재 인천항과 청도항 사이의 항해 소요시간이 5-8시간 소요되는 근접거리에 있다. 우리의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석탄, 원유, 인광석등 중국산 자원수입이 증대되면서 한·중경제교류는 머지않아 무역대표부를 설치할것이 전망된다. 한·중경제교류는 이질체제사이의 교류로서 특히 우리의 대중국직접투자의 경우, 중국법률체계의 미비, 중국시장의 심도가 낮음에 따른 투자효과의 저조등 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활로개척을 위하여 반드시 이룩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중국은 對韓경제교류에서 정치적입장과 경제적입장을 명백히 구별하려 하고 있다. 중국외교부 국제문제연구소 亞太연구실주임 도병위는 1986년 7월 일본 경응대 주최 「조·일·중 공동세미나」에서 이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고, 중국 정치국상무위원 胡啓立은 1987년 5월 “북한의 동의를 전제로 대한직접무역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이어서 「舍人代 상무위」 부위원장 황화는 1988년 1월 “남북한의 통일문제해결이 선행문제이며, 국교정상화시기는 아직 상당한 기간후의 이야기”라고 한·중관계에 대하여 중국지도자로서는 최초의 구체적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다음, 소련의 개방경제정책에 따른 한·소관계는 1983년 대한항공

19) 한·중교역규모는 「홍콩」등을 통한 간접교역이 주류를 형성하여 통계가 일정하지 않으며, 다소 과장이 있는 듯 함. 심지어 N·Y·T는 1988년 11월25일자에서 1988년도 한·중교역총액을 30~40억달러(북한·중국교역액 : 5억1,300만달러)로 예상하는 반면, KOTRA는 1987년도 한·중교역액을 14억9천만 달러라고도 발표하고 있음.

기적추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스크바」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등 스포츠 및 학술분야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실 한·중관계 보다 앞선면이 있었다. 동구권 및 서구라파로가는 우리의 콘테이너는 「시베리아」철도를 이용하였으며, 일부 경제교류도 진행되었다.

한·소간 경제관계는 고르바초프의 등장을 계기로 대외개방경제 정책에 따라 「시베리아」개발계획을 구체화시키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열린 제27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6-90) 및 2천년까지의 장기경제계획을 확정시킴과 동시에, 1961년 채택된 이른바 「호루시초프당강령」을 전면 수정시킨 새 당강령을 채택함으로써 소련경제의 실상에 바탕을 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호루시초프당강령은 “1970년대까지 사회주의를 실현시켜 소련경제가 미국경제를 앞지르고, 1980년대까지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달성하고 6시간 노동을 하여 미국의 2배나 되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 환상적인 것이었다. 새 당강령 채택을 통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은 곧이어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토크선언」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선언」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부터의 소련군철수와 중·소국경지대에서의 소련군감축등 주로 군사적 긴장완화문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소련이 아시아·태평양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국제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이며, 「블라디보스토크선언」은 1988년 9월 16일 「크라스노야르스크선언」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고르바초프는 한국 국명을 공식적으로 거명하여 「시베리아」경제개발에의 참여를 증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8년 10월 15일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소련방상공회회의소는 「한·소통상협력에 관한 비망록」(Memorandum)을 작성하고 무역사무소 개설을 합의하였다.

소련국가계획위원회는 「바이칼」호에서 태평양연안지역에 2,000년 대까지 2,320억 루블(3,480억달러)을 투자하여 농어업부문개발, 「사할린」의 원유및 가스 개발, 광물정제공장 신설, 대규모 주택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너지및 농어산물 자급자족과 관련된 대규모 시베리아개발계획을 마련하고,²⁰⁾ 앞서 밝힌 바와같이 중국의 「경제특구」와 같은 경제특구를 만들어 일본, 미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자본주의경제의 투자유치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는 「북방영토반환문제」와 같은 외교적 현안때문에 한국의 투자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기업들은 고르바초프 개방정책 전망의 불투명, 우리의 독주에 대한 미·일의 견제 그리고 시베리아개발규모에 비추어 우리 자본의 영세성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적차원에서 시베리아개발에 대한 진취적인 참여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에서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訪蘇가 이루어져 한국기업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가 논의되었다.

한편, 중국과 소련의 개혁및 개방정책이 北韓體制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개혁및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후 1982년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하여 등소평의 직접안내를 받아 중국실용주의정책의 실험무대였던 사천성을 찾아 현장을 본 일이 있다. 사천성 省都에서 개최된 환영군중대회석상에서 “실용주의의 현장을 방문해 준데 감사한다”는 등소평의 환영사에 대하여 “중국의 현대화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후, 북한에 돌아와 “우리식대로 살자”는 「슬로건」을 내걸게 했던 김일성은 1984년 5월 소련및 동

20) 1987년 8월26일 소련 국가계획위원회 발표내용.

구권을 방문하고 돌아와 그해 9월8일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본받아 「합영법」을 마련하고, 특히 일본, 미국등 서방선진경제의 대북한 투자유지에 노력하였다.

북한은 중국과 이미 압록강수력발전회사를 공영하고 있으며 1987년 「태평만수력발전소」와 「위원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또 북한은 북경에 「평양냉면관」을 만들었고, 延吉市와 함경북도와의 합작으로 연길에 「도문강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87년 6월 소련과 「국제회사합작기관 창설협정」을 체결하여 「원해양식공장생산기업소」를 설립하는가 하면 북한의 「희천공작기계공장」과 소련의 「이바노프 공작기계공장」사이에 협조체제를 이루고, 소련의 연해주, 「하바로프스크」등 극동지역과 피북, 건설, 농업분야에서 합작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했던 서방선진국의 대북한투자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불란서 「킵프농 베르나르」건설회사의 양각도 47층 호텔건축공사 이외에는, 서방측과 100여건, 일본과 40여건 합작교섭설만 난무한 가운데, 조총련의 투자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1986년 8월경 조총련과 「국제합영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미 낙원백화점, 대동강자동차 수리공장, 운산금광개발, 평양골프장, 창광커피숍, 김만유병원, 모란봉합영회사, 조선낙원금융회사, 평양실크합영회사등을 만들었다.

이와같이 투자를 강요당하고 있는 조총련 이외에 일본, 미국등 서방선진경제가 대북한투자를 꺼리는 원인은 외교적요인도 있지만, 「합영법」제정에 따른 북한의 제한적이거나 이른바 대외개방 경제정책의 시도는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대내경제체제의 「개혁」을 동반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에 따르는 응분의 경제적 이득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체제의 「개혁」은 커녕, 1986년 12월30일 제8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김일성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명백히 밝힌 바와같이 “농업부문에

서의 전인민적소유로의 전환”을 표방하는 등 세계공산국가들의 추세와는 달리 「교조주의」로 역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김정일은 1988년 9월25일 「로동신문」에 실린 논문에서 “자본주의는 계급간의 갈등으로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사회가 온다”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과서적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것은 중국과 소련이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눈부시게 변하는 상황하에서, 그 물결이 북한내부로 유입되는것을 막아 김일성·김정일공산세습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1988년 11월26일 신설 했다는 「합영공업부」의 역할도 크게 기대할 것이 못된다고 할 수 있다.

4. 한반도 統一環境의 변화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군사정세와 세계경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생각해 보았다. ① 세계군사정세는 미·소군사대국간의 이른바 신「데탕트」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긴장완화의 추세로 움직이고 있고, 세계군사전략적 요충인 한반도에도 긴장완화의 여세가 밀어닥치고 있으며, ② 세계경제정세의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적 위치로 浮上하면서 점증하여 가는 서방선진경제의 보호무역주의적 도전속에 자원조달과 시장광역화의 요청에서 이른바 「북방정책」으로 표현되는 대중·소경제접근이 불가피하며, 한편 중국과 소련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함으로 한국과 중·소사이의 경제적접근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③ 「개혁」과 「개방」정책에 따라 중·소공산대국—내지 전공산권—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내세우는 등으로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적요소를 대폭 도입함으로써 수정주의적 노선으로 기울고 있으나, 유독 북한만은 「합영법」을 채택하는 등 일부 대외개방경제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면서도 김일성·김정

일공산세습체제에 대한 위험부담을 막기 위하여 대내 체제개혁을 동반하지 않음으로써 서방 선진경제의 투자유치를 못할 뿐만아니라, 공산권의 전반적 추세에 역행하여 더욱 더 교조주의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세계군사정세와 세계경제정세속에서의 한반도의 위상이 과연 한반도의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겨레가 힘을 한데 모아 민족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이지만, 한반도가 지닌 특수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주변강대국의 대한반도 정책등 이른바 주변정세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문제이다. 즉,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민족내부문제로서의 성격과 국제정치적 문제로서의 성격이란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주변정세의 흐름을 잘 타서 민족주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통일은 과연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이제는 “백두산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는 의미의 통일”이란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이 「근대주권국가」를 한반도에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국토통일」을 당장 실현하겠다고 서두른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한라산 꼭대기에 「인민공화국기」를 꽂으려 할 것임으로 승자와 패자로 양분되어 통일의 길은 더욱 험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로 가는 길은 우선 남북한체제공존의 바탕위에서 남북한사회를 상호개방하여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신라통일 이래 1,300년 가까이 유지해 온 통일민족사를 배경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족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민족통일」의 길로 되는것이 오늘날 분단현실에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정책은 남북한 체제공존과 남북한 사회개방 문제가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체제공존을 우리 민족을 영구 분단시키기 위한 이른바 「美帝와 그 괴뢰가 결탁한 2개조선 조작책동」이라고 절대 반대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 방안은 “남북한 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함으로써 남북한체제공존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한반도군사문제와 “남조선정권의 聯共政權으로의 교체”란 이른바 ‘선결조건’을 앞세우는데서 읽을 수 있듯이 “남조선의 인민 민주주의혁명전략 수행”이 정책의 핵을 이루고 있음으로 남북한 체제공존방안이 아닌 것이다. 한편, 북한은 40여년 동안 북한체제를 가능케 했던 “북조선은 사회주의 지상낙원, 남조선은 인간 생지옥”이란 허구적 정치명분을 조작하여 「김일성·김정일공산세습체제」를 유지하여야 함으로 남북한 사회개방을 본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민족공동체」형성을 위한 「남북한사회의 상호개방을 통한 체제공존」문제가 주로 북한측 사정으로 민족내부적차원에서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세계군사정세와 경제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해결의 실마리가 한반도주변정세로 부터 한반도내부문제로 역류해 들어오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즉, 주변정세가 변화됨으로써 통일환경이 개선되어가고 있다.

첫째, 미·소군사대국사이의 신「데탕트」정책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긴장완화 추세는 군사전략적 요충인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편승하여 1988년 11월7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간의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① 통일지향 ② 미군철수 ③ 남북군축에 의한 보장 ④ 당사자협상이란 「평화보장 4원칙」과 더불어 ① 핵무기는 1990년까지 2단계로 철수하고 주한미군은 1991년까지 3단계로 철수하며, 철수 후 무력투입이나 군장비제공을 중지하며 ② 남북한의 감군은 각각 1989년까지 40만, 1990년까지 25만, 1991년까지 10만 그리고 1992년

까지 10만 이하로 유지하며, 군축시작후 6개월안에 모든 민간군사조직을 해체시키고 ③ 3자회담을 개최하여 미·북한간의 평화협정 체결 및 남북한불가침선언문제를 협의하며 ④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미군철수및 군축을 감시하며, 3자회담에 「옵서버」로 참석하도록 하고 ⑤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여 남북정상회담으로 발전시키고 ⑥ 상호비방 중지, 비난정치행사 중지, 상대방체제부정법규 철폐, 다방면적인 합작·교류실현,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행동 일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그리고 군고위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개설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의하였다.

이번 제의는 주한미군철수, 남북한군축 그리고 3자회담을 통한 미·북한평화협정체결 및 남북한불가침선언 채택이란 점에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였다는 특색이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 오던 것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동북아군사정세가 긴장완화 방향으로 더욱 진전되어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거나, 남북한사이에 편지 한장 오고가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무조건 무장해제부터 하라는 식의 남북한군축 주장은 결코 진정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은 1953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시키는 한반도군사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문제를 북한과 미국만을 당사자로 하겠다고 고집함으로써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취급하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북한 체제공존관계의 정착만이 통일로 가는 첩경이므로 북한은 마땅히 한국을 제1차적 당사자로 하여 「불가침협정」이나 「기본관계 잠정협정」, 아니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미국, 중국—휴전협정 서명당사자—나아가서 소련, 그리고 일본등 한반도 주변 강국이 공평히 참여하여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다. 그러

므로 1988년 10월18일, 남북한 및 주변4강이 참여하여 한반도 및 등 북아평화문제를 논의하자는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에서의 「6자평화협의회의」제의를 온당한 것이다. 여하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앞서 밝힌 바와같이 미「스토포드」大 전략문제연구소와 소련 과학아카데미가 한반도 평화방안을 공동으로 제시하며, 미국이 남북한직접대화를 권고하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내외적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통일환경의 큰 변화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는 소련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아직 부정적이다. 1988년 10월 「개스턴·시거」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와 「리처드·아미티지」국제안보담당차관보는 “소련은 ① 북한 및 베트남등 공격적 국가에 대한 군사원조계속 ② 서부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SS25 이동식미사일에 대한 緘口 ③ 지난 수년간 태평양함대에 40척의 군함 및 잠수함 증강배치 ④ 극동에 57개 사단의 지상군을 유지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고르바초프의 평화제스처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르바초프에게 「극동입장료」를 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美 실행정부의 대소정책이 어떻게 전개 될지 주목된다.

둘째, 중국과 소련의 대외개방 경제정책에 따른 한국과의 경제교류등 비정치적 영역으로 부터의 교류확대 추세는 아직은 요원하나 궁극적으로 한국을 (사실상) 국가승인하는 단계로 발전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불승인을 기조로 한 북한의 대남전략을 제동시켜 남북한 체제공존을 수락하도록 만들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대한 경제교류를 강화시키려 하면서도 북한을 강력히 의식, 省단위의 민간차원 교류로 엄격히 제한하여 정치적 승인은 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소련의 對韓 자세는 중국보다 다

소 전진적이다. 1988년 9월16일 서울올림픽전일 고르바초프서기장이 「크라스노야르스트선언」에서 ① 대한경제교류와 ② 소·중국, 일본 및 남북한사이의 연안국 해·공군력감축 다국간협상을 제의하면서 한국 국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이래, 1988년 10월11일 「이스베스차」의 정치평론가이며 고르바초프서기장의 외교브레인인 알렉산드르·보빈은 동경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의견임을 전제, “한반도에는 2개의 독립된 주권국가 존재하며,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이어서 1988년 10월14일 게라시모프 소련 외무부 대변인은 모스크바방송 인터뷰에서 “한국현실공식 인정”발언을 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블라디미르·골라노프 소련상공회의소 부회장이 방한, 「한소무역사무소 교환설치 협정」을 체결하였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헝가리의 상주대표부 설치등 동구권의 대한 접근도 소련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임으로 이러한 일련의 소련의 대한정책은 비록 공식적 외교수립까지는 아직 요원하나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에 앞선 소련의 대독정책을 연상케한다.²¹⁾

셋째, 중국과 소련의 「개혁」과 「개방」노선은 「주체사상」을 표방, 더욱 교조주의화되어 가는 북한체제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압력이 될 것이며, 북한도 결국은 개방에 따른 개혁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사실은 북한체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러 요인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① 「개방」과 「개혁」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함수관계에 있다. 개방이 되면 경제교류와 더불어 「외부의 바람」이 들어오게 마련이고 정보통제가 제동 당함으로 「지상낙원」이라는 허구적 정치명분 조작이

21) 소련의 대한정책은 비공식적 발언과는 달리 공식적주장은 1988년 「세바르드나제」蘇외상이 북한을 방문한 후 발표된 「共同報道」에 명백히 나타난 바와같이 한국과 국교수립은 안하겠다는 것임.

어려워 짐으로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개혁권 속에 들어있다. 180만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는 북한체제에 대한 외부 바람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②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자기발전적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밝힌 김정일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는 계급간 갈등으로 반드시 망한다”는 식의 북한의 교조적 「이데올로기」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③ 북한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증대되어 간다. 즉, 경제를 발전시키면 소비욕구가 가속적으로 증대되고, 이를 충족시키면 중·소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정치적 민주발전을 요구함으로써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④ 통치 「엘리트·그룹」의 교체에 따라 개혁압력이 증대된다. 김일성항일 빨치산세대가 정규교육을 받은 세대로 교체되면 합리적 정책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⑤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사실 우리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사이의 경제발전의 격차는 북한을 자극하여 합리적인 경제정책으로 유도할 것이며, 우리의 민주정치발전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제동시킴으로써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가능케 만들 것이다.

5. 結 言

이상으로 세계군사정세와 세계경제정세속에서 한반도의 位相을 살펴 보았거니와 남북한사이의 체제공존이란 방향으로 한반도의 통일환경이 급격히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한이 상호 사회를 개방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진전시키고 아울러 군사적 현안을 해결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면 40여년 분단으로 쌓여진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넘어 오랜 통일민족사를 배경으로 남북한을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차원에서 민족공동체를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민족통일의 첩경일 것이다.

이제 한반도는 주변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더 이상 동서냉전체제에서와 같이 미·소중심부로 부터의 「변경지역」으로서 양진영 사이의 힘을 겨누어 보는 전쟁지역이 아니다. 한반도는 미·소·중국 그리고 일본의 지정학적 중앙적위치로 부상하여 남북한이 힘을 모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느냐, 안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여부가 좌우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민족적화해를 하여 분단문제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20세기 「이데올로기」 갈등문명이 21세기의 보다 높은 인류문명으로 승화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므로 우리 한민족에게 부여된 민족사적·세계사적 책임이 실로 막중한 것이다.

이같은 막중한 민족사적·세계사적 책무를 완수하려면 남북한 우리 민족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를 본 “자주적 정신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즉, 민족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민족주의의 향방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주지하는 바와같이 민족주의는 서구의 「부르주아」민족주의, 제2

차 대전전의 식민지및 전후 후진국에 있어서의 저항민족주의 그리고 오늘날 발전도상국가의 현대민족주의로 크게 역사적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서구의 부르주아민족주의는 서구근대국가의 번영을 뒷받침한 긍정적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벗어나, 레닌의 분석대로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전을 뒷받침하는 이념으로 변질됨으로써 저항민족주의를 임태시킨 채 역사적기능을 종막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등장으로 이른바 「신식민지론」 및 「민족해방투쟁론」의 이론적배경으로서의 제국주의는 계속 정치선전상의 주제로 등장됨으로써 후진국 민족주의의 성향을 오직 「저항민족주의」로 고착시키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오늘날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의 민족주의, 특히 선진국 문턱을 바라보면서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민족주의의 向方은 외세라면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저항민족주의」 단계를 벗어나, 민족과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지향하는 「현대민족주의」—혹자는 「진보적민족주의」 또는 「창조적민족주의」라고도 호칭—로 마땅히 재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이 변화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철수주장이나, 대미무역흑자가 100억달러가 넘는 상황하에서도 우리 경제를 무조건 종속이론으로 매도하는 저항민족주의적 발상이나, 「세계에서 가장 비주체적인 인민」을 만들어 놓고 「주체사상」만을 내세우는 북한을 무조건 「민족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논리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민족주의의 향방이 정립될 때 남북한 체제공존, 사회개방을 통한 교류·협력의 확대, 그리고 한반도 군사문제의 해결을 통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민족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III. 分斷國 統一問題

(獨逸·中國)

張錫澥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우리는 지금 分斷時代에 살고 있다. 분단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最高價値와 民族의 至上課題가 있다면, 그것은 두 말할 나위없이 분단된 祖國의 統一 실현일 것이다.

人類歷史上 分斷國家는 여러 형태로 있어 왔다. 韓國과 獨逸처럼 그 나라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가의 일방적인 決定에 의해 강제분단된 國際型 분단국이 있고, 中國과 越南처럼 그 나라 內部革命이나 同族相殘에 의해 부득이 분단된 國內型 분단국이 있다.

그 밖에도 오스트리아, 라오스와 캄보디아, 몽고, 인도와 파키스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의 분단국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은 法理論上 分斷國家(Divided Nations)라기 보다 分裂國家(Partitioned Countries)로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분열국가는 同質性보다 異質性이 강하며 과거의 統合은 본질상 합의의 결과라기 보다는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外的 統合強制가 해소되면 속명적으로 분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韓國, 獨逸, 中國, 越南이 分斷國家로 분류된다면, 기타의 국가는 分裂國家의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우리는 第6共和國의 출범과 더불어 民主化의 힘찬 발걸음과 함께 分斷이후 일찌기 보기 어려웠던 통일논의가 各界各層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統一論議의 百家爭鳴時代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직면하여 政府는 1988년 7월 7일 「民族繁榮 統一時代」를 열어 갈 새 共和國의 統一政策에 관한 「大統領 特別宣言」을 발표했다.

이 宣言은, 최근 國際情勢와 統一環境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우리의 자주적 역량과 축적된 국민의 自信心을 바탕으로 「民

族自尊과 統一繁榮의 時代」를 열어야 하겠다는 汎國民의 熱望과 意志를 政策으로 구현코자 한 것이다.

우리가 숙원하는 祖國統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民族共同體意識에 바탕을 둔 民族內部的 여건조성과 韓半島 周邊情勢의 긍정적인 변화에 따른 統一環境造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통일을 가능케 하는 內外與件造成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다른 분단국가들이 統一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孔子는 일찌기 제자들에게 설파하기를 “三人行하면 必有我師라” 하였다. 즉, “세 사람이 동행하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느니라”라는 뜻이다.

우리가 分斷의 아픔을 안고 統一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길떠난 나 그네라면, 獨逸이나 中國, 越南은 우리와 같은 목적지를 향한 길동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착한 길동무도 스승이 되고, 나쁜 길동무도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民族和合과 신뢰를 회복하여 '70년대 부터 相扶相助하면서 二人三脚경주처럼 발마취 달려가는 東西獨은 착한 길동무로서 우리가 따라 배울 스승이 될 것이고, 同族相殘의 17년戰爭으로 우리보다 한 발 뒤지다가 1975년 4월 30일 赤化統一로 滅亡해 버린 越南은 나쁜 길동무로서 “左傾共產勢力的 척결로 安保를 튼튼히 하여 自由民主主義를 수호해야 한다”는 教訓을 일깨워주는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는 分斷國家中 獨逸과 中國의 통일문제만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전개 해야 할 「北方政策」에 있어 他山之石의 교훈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赤化統一의 비극으로 끝나버린 越南의 통일문제는 본고에서 제외했다.

東西獨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통일”을 위하여 벌써 오래전 부터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人的·物的 多方面的 交流를 증진하여 民族共

同體를 조성하면서 相互發展과 繁榮의 길을 마련하고 있다. 그들은 “분단은 있으나 고통은 없다”는 표현처럼 平和定着과 緊張緩和를 일찌기 이룩하고 國際社會에서 民族共榮의 實利를 추구해 가고 있다. 혹자는 東西獨의 접근방식이 永久分斷을 획책할 위험성이 있다고 혹평하지만, 「東方政策」의 성공을 우리의 「北方政策」의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참고자료로 삼는 데 있어서는 異論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편, 中國의 통일문제는 지금도 「三通」과 「三不」로 맞물려 있지만, 臺灣은 「三不政策」을 점차 포기하는 방향으로 大陸旅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教訓이 크다 하겠다.

이제 우리도 우월한 經濟力, 정부의 正統性 회복, 국제정세의 平和共存時代를 맞이하여 20여년전의 東西獨과 같은 好機를 맞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政府와 國民의 슬기와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유의하여 본고에서는 分斷過程, 統一政策의 變遷, 交流·協力の 現況, 統一展望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統一실현의 좌표를 再照明해 보려한다.

2. 獨逸의 統一問題

가. 東西獨의 分斷過程

1) 東西獨의 分斷

1945년 2월 12일 美國·英國·蘇聯은 알타에서 회담을 갖고 「戰後獨逸에 대한 占領·管理 및 賠償問題에 관한 秘密協定」을 맺었다.

그 후, 동년 5월 8일 마침내 독일이 무조건 항복하자 연합국은 6월 5일 「4大國共同宣言」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독일을 분할관리하

기로 확정하였다.

- ① 「알타協定」에 따른 독일의 主權을 연합국이 장악한다.
- ② 「聯合國獨逸賠償委員會」를 설치한다.
- ③ 美·英·佛·蘇 4國이 독일의 영토를 分割占領하고¹⁾, 베를린을 연합국 共同管理下에 둔다.

그리고 동년 8월에 연합국은 戰後 독일문제를 포츠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포츠담宣言」을 발표했다.

- ① 平和條約을 기초하기 위하여 「3國外相會議」를 구성한다.
- ② 독일의 4個 점령지역에서 통일적인 관리·조직을 수립하여 무장해제를 실시하고, 「非軍事化」한다.
- ③ 독일에 관련된 주요決定은 전체로서 공동결정한다.
- ④ 독일의 경제는 單一取扱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오데르·나이세線」以東地域은 폴란드의 行政管理下에 두고, 東프로이센 북반부는 소련의 행정관리하에 두며, 남반부는 폴란드의 행정관리하에 둔다.

이와 같은 내용의 國境協定은 暫定協定으로서 「對獨講和會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國境線으로 굳혀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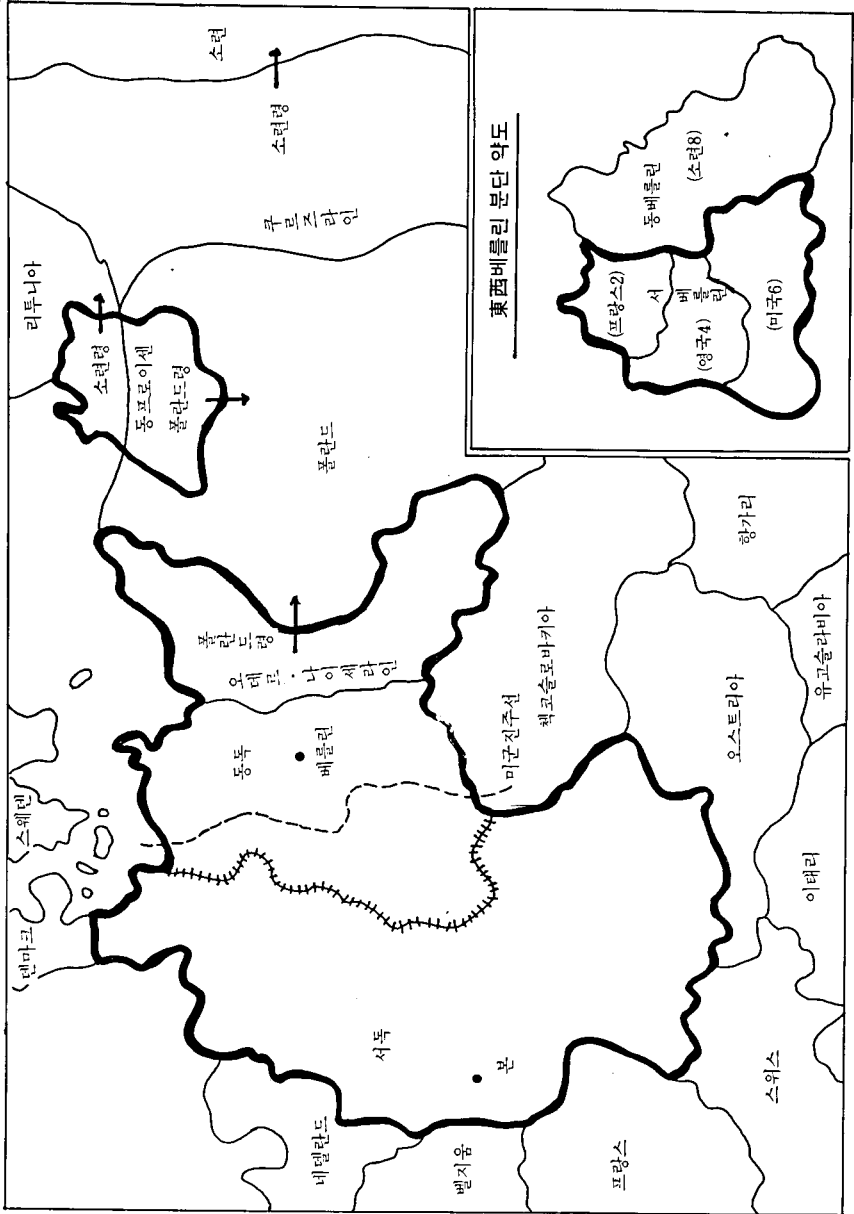
「오데르·나이세線」의 국경선 설정은 舊폴란드의 東部領土를 병합한 바 있는 소련이 독일의 희생으로서 폴란드에 代償을 부여하기 위하여 「알타協定」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포츠담宣言」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패전국 獨逸은 「오데르·나이세線」의 설정으로 인하여 국경선은 東쪽에서 西쪽으로 크게 변경되었고, 전쟁 이전의 국토를 4분의 1정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의 분단은 「알타協定」에서 合意하였고, 「포츠담宣言」으로 확정되었으며, 暫定的인 조치로서 戰後

1) 獨逸國土는 4分割하여 東쪽은 소련, 西쪽은 미국, 南쪽은 영국, 北쪽은 프랑스가 分割占領하였다.

東西獨本단약도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產物이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西方陣營과 소련은 패전獨逸에 대한 戰後처리과정에서 점차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견해차이를 보여 왔으며, 중국에는 對立狀態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독일의 分斷은 사실상 凍結되고 固定化되어 갔다.

1947년 3월과 11월에 모스크바와 런던에서 「4國外相會議」를 개최하였으나 의견 대립으로 결렬되었고, 1948년 2월 23일 美·英·佛 3國은 占領地域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에 합의하여 「3個國統合」을 이룩함으로써 오늘의 西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소련은 「3個國統合」에 반발하고 1948년 3월 30일 「獨逸占領共同管理理事會」로 부터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써, 오늘의 東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결국 독일의 국토는 크게 東西兩斷으로 分斷國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2) 東西베를린의 分斷

獨逸歷史의 본 고장인 古都 베를린을 다시 分斷統治하기 위하여 연합국은 당초 美軍占領下에 있던 지역으로 부터 뒤로 물러나고, 이 지역을 소련점령지역으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베를린을 4分割키로 합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獨逸帝國의 영광과 게르만民族의 힘의 源泉이기도 한 首都 베를린은 4分斷의 비극을 맞게 되었다.

1948년 12월 21일 美·英·佛 3個國은 베를린에 「聯合國統治委員會」를 설치하고, 베를린을 4分斷하여 東쪽은 소련, 西쪽은 미국, 南쪽은 영국, 北쪽은 프랑스가 분할통치하게 되었다.²⁾

그러나 美·英·佛 3國은 독일분단에서와 마찬가지로 「3國統治方式」에 따라 全12個地域을 聯合 統括함으로써 東西베를린으로 분단되

2) 東베를린은 소련(8區域), 西베를린은 미국(6區域), 南베를린은 영국(4區域), 北베를린은 프랑스(2區域)가 分割統治하게 되었다.

었다.

소련은 1948년 6월 부터 1949년 5월 까지 서독의 일방적인 通貨改革에 불만을 품고, 그 보복조치로서 西獨과 西베를린間의 모든 지상 교통 및 운수기관의 통로를 차단하는 「베를린封鎖措置」를 단행했다. 이때 부터 西베를린은 「陸地 속의 孤島」 또는 「自由의 섬」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西方3國의 管轄하에 들어간 西베를린은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이룩하고, 따라서 서독에 의한 自治行政을 실시토록 하였다.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西베를린은 서독에도 동독에도 속하지 못하는 特殊都市로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西베를린은 西方3國의 보호를 받고 있을 뿐, 「나라 없는 都市」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서독은 西베를린을 1個의 聯邦(11個의 聯邦中 1個)으로 간주하고 西베를린出身 聯邦議員을 선출하고 있다. “西베를린에도 西獨의 憲法上 主權이 미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西베를린은 서독의 다른 州와 마찬가지로 모든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동독은 항상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西베를린에는 아직도 「3國聯合代表團」이 常駐하고 있다.

나. 東西獨의 接近過程

1) 聯合國 共同管理期(1945-49)

獨逸이 第2次 世界大戰에서 패망하여 獨逸政府가 해체되고 聯合國이 4년동안 軍政을 실시하였던 시기이다.

독일은 無政府狀態로 방치되었고, 국토는 연합국에 의한 分割統治가 실시되던 비참한 시기였다. 이 시기는 西方側과 소련의 對立狀態가 지속되고 의견차이가 심화되어 「오데르·나이세線」 국경문제를 비롯하여 분단이 固着化되면서 피난민문제 등으로 혼란이 야기되던

「統一政策의 空白期」였다.

2) 東西獨의 政權形成期(1949-55)

두 개의 독일정권이 형성된 시기로서 1949년 9월 7일 「獨逸聯邦共和國」이 西獨에서 수립되고, 1949년 10월 7일 「獨逸民主共和國」이 東獨에서 출범한 시기이다.

1948년 6월 20일 西方3國은 서독에서만 貨幣改革을 단행했고, 1949년 5월 8일 基本法³⁾을 제정·공포하였으며, 동년 8월 14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9월 7일 「獨逸聯邦共和國(Bundesrepublik Deutschland)」를 수립하게 되었다.

소련도 이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1949년 5월 30일 憲法을 제정하고 公布하였으며, 동년 10월 7일 「獨逸民主共和國(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을 수립하였다.

東西獨의 헌법상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西獨의 基本法〉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民主社會의 聯邦國家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② 立法·行政·司法은 독자적인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③ 이로 인하여 國家權力의 交互的 統制와 均衡의 체제가 보장된다.

특히, 前文에 “獨逸民族은 하나이다”라고 특기했다.

〈東獨의 憲法〉

①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민족의 社會主義國家이다.

② 모든 정치적 권력은 勞動者에 의해 행사된다.

③ 독일민주공화국은 영구히 소련에 連繫되며 社會主義 國際社會의 일부를 구성한다.

3) 西獨은 헌법을 憲法이라 하지 않고,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基本法(Grundgesetz)이라 부르고 있다.

특히, 前文에 “독일민족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서 공교롭게도 東西獨의 憲法에는 統一意志에 대한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東獨은 1974년 헌법개정으로 統一意志에 관한 표현을 前文에서 삭제해 버렸다.

그렇지만 동독의 헌법에는 “소련에 連繫된다”는 내용이 있어 소련의 衛星國家임을 공공연히 자처하고 나왔다는 특이점이 있다.

서독의 초대首相 아데나워는 서방측 同盟國과의 결속을 바탕으로 한 「힘의 政治」를 표방하여, 自由民主體制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自由 속에서의 통일 실현」을 주장하는 統一政策을 내 세웠다.

그 통일정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미국과 소련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信念的 原則」
- ② 「힘의 均衡」을 西方側에 유리하게 만들어 소련이 이에 굴복하게 해야 한다는 힘에 의한 「政策的 原則」

초대수상 아데나워는 東獨이 「소련점령지역」임을 이유로 동독정권을 인정치 않고, 스스로 西獨정부만이 全獨逸을 대표하는 唯一合法政府로서 단독대표권을 행사 할 것을 선언하였다. 즉, “西獨만이 全獨逸의 主權을 대표하며, 국제적 발언권을 갖는 正統性을 지닌 唯一合法政府이다”라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아데나워는 서독이 共產國家의 위협으로 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또 연합국과의 관계에서 後見國家의 지위에서 벗어나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同伴者的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西歐 내지 大西洋을 묶는 다양한 統合機構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믿었다.

3) 對決膠着期(1955-66)

소련은 1954년 3월 25일 동독을 승인하였고, 1955년 1월 25일 서독에 대하여 “戰爭狀態를 종식한다”고 선언하였다.

1955년 아데나워首相은 소련을 방문하여 서독과 소련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소련대사가 서독에 着任하게 되

있고, 서독도 소련에 대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한편 동독은 소련의 사주에 따라 통일정책으로 「中立化方案」을 제의하게 되었다. 소련의 속셈은 서독이 서방측의 統合機構에 가입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위협의 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차라리 獨逸을 中立地帶로 묶어두어야 하겠다는 저의에서 동독을 부추겨 이른바 「中立化方案」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독은 「중립화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955년 5월 5일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에 가입했고, 이어서 「歐洲會議(Europarat)」에 가입했다. 그리고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와 「歐洲共同體(EEC)」에 가입함으로써 서방측의 다양한 통합기구의 主軸國家로 등장하게 되었다.

소련은 「中立化방안」의 실현불가능성을 인식하고, 1955년 5월 14일 동독을 재빨리 「바르샤바條約機構(WTO)」에 가입시키고 東歐共產圈의 경제협력기구인 「經濟相互援助會議(COMECON)」에 가입시킴으로써 東西陣營의 分極化過程에 발맞춰 「東西獨의 대결」은 「東西陣營의 대결」로 外延이 확대되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띄우게 되었다.

한편 서독은 동독을 인정하는 第3國(소련을 除外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내용의 「할슈타인原則(Hallstein)」⁴⁾을 1955년 12월 9일 발표함으로써 동독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아데나워首相은 “「國際監視下의 全獨自由總選舉」를 실시하여 통일을 실현하자”고 제의하였고, 그 전제조건으로 “소련 占領地域에서의 民權回復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할슈타인原則(Hallstein Doctrine)이란, 빌헬름 그레베 大使가 創案하여 1955. 12. 9. 서독 外務次官 할슈타인이 發表한 정책으로서 “동독의 승인은 커녕 동독과 외교 관계를 갖는 국가와도 서독은 外交關係를 단절하겠다”는 일종의 國際法的 報復措置를 말한다.

이와 같은 서독의 통일정책은 다분히 宣言의 성격을 띄우고 있었고, 동독이 수락할 수 있는 代案제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 후 1956년 12월 9일 東獨의 울부리히트는 「國家聯合案 (Confederation)」⁵⁾을 제의했다. 그 내용은 “두 개 이상의 주권국가 가 공통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법상의 조약에 의하여 결합 되고 공동기구에 의하여 主權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綜合形態의 國家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 方案은 政治的 명분으로 주장한 것이며, 실제로 성사되지 못할 것을 공산국가들의 協商戰略을 援用해서 赤化統一을 실현해 보려는 기만적인 제의인 것이다. 왜냐하면, 思想과 制度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國家聯合을 이룩한 例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울부리히트의 「國家聯合案」은 “독일 내에 서로 다른 社會體制의 兩國家가 접근을 시도하고 「統一國民會議」의 구성을 위한 민주선거가 가능한 시기까지는 「國家聯合形態」로 약 10년간 (1957-1967) 과도적인 體制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1961년 東獨은 갑자기 베를린 障壁을 構築함으로써 동서독의 관계는 戰後 최악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다.

서독은 「아데나워時代」가 점차 終章에 이르면서 對東歐 및 東獨政策에 새로운 定向이 성숙되어가는 「에르하르트時代」의 序章을 펼치게 되었다.

1963년 「에르하르트時代」의 출범과 더불어 親美路線을 견지하면서, 동독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東歐圈과는 외교관계는 맺지 않으나 經濟協力은 시도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키는 한편, 동서독의 관계는 對決狀態로 계속 내 달리게 되었다.

동독은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 對蘇依存度を 심화시키며, 서독에

5) 1956. 12. 9. 東獨 울부리히트의 「國家聯合案(Confederation)」은, 1960. 8. 15. 金日成의 「高麗聯邦制」와 비슷한 내용으로 共產國家들의 赤化統一을 위한 상투적인 戰略을 간과할 수 없다.

비해 크게 열세한 위치에서 국가로서의 완전한 國際法上 승인을 겨냥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동독은 「東西獨協定」을 다시 提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른 독일국가의 存在를 인정 ② 武力·暴力行使의 포기 ③ 境界線의 존중 ④ 核武器의 설치 및 사용중지 ⑤ 軍縮問題 ⑥ 交流·協力增進 ⑦ 對外關係의 무차별원칙 ⑧ 相互往來의 정상화 ⑨ 通商條約의 체결 등이다.

그러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다.

서독은 1966년 「키징거時代」를 맞으면서 「大聯政時代」⁶⁾의 막을 올렸다.

키징거首相은 동독에게 「武力不行使宣言」을 하고, “軍事·安保問題와 統一問題를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하겠다”는 정책구상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키징거首相은 “兩獨間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東西獨官吏間의 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동독은 “서독이 「單獨代表權」을 포기할 것”을 거듭 주장하면서, “官吏접촉에 앞서 兩當局最高責任者間의 直接協商 부터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당시의 國際情勢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냉전상태는 점차 平和共存의 양상으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속에서 동서독관계도 새로운 관계, 즉, 平和共存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戰後 급격한 經濟成長으로 풍요로운 民主社會에서 성장해 온 서독의 젊은 세대들은 쉽게 冷戰意識에서 벗어나, 그 중 많은 수가 동독과의 民族共榮의 관계개선을 열망하게 되었고, 이는 서독의 統一政策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6) 키징거時代의 「大聯政時代」란, 1966. 12. 基民黨(CDU)과 社民黨(SPD)의 「키징거-브란트의 聯政」을 말한다.

한편, 동독도 뒤늦게 성취하기 시작한 경제발전 속에서 점차 西獨과의 관계개선을 바라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변화는 서서히 東西獨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새로운 平和共存과 關係改善의 진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

4) 平和共存秩序 摸索期(1966-72)

1967년 1월 31일 서독은 루마니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브란트首相은 同年 4월 12일 서독의 平和政策 및 緊張緩和政策을 발표하였으며, 「할슈타인原則」폐기와 東獨承認의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기존정책방향의 일대전환을 예상케 하였다.

1969년 10월 總選에서 브란트가 이끄는 社民黨(SPD)이 승리함으로써 社民黨과 自民黨(FDP)의 연립정부가 탄생되었다. 새 聯立政府는 「政府宣言」을 통하여 「오데르·나이세線」의 인정과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면서 동독, 소련 및 동구권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새 정부가 聯邦議會에 제출한 「對外政策에 관한 計劃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적 차원에서 동독과 協商할 것을 제의한다.
- ② 兩獨關係는 特殊關係이며, 상호 外國이 아니다. 두 개의 독일은 인정하나 국제법적인 두 개의 國家를 인정치 않으며 兩獨관계는 內獨關係이다.
- ③ 서독은 동독을 포함하여 東歐諸國과 어떠한 武力行使도 거부한다는 조약체결을 제의한다.
- ④ 서독은 4大強國과의 협상을 통하여 베를린의 地位가 신장되기를 원한다. 서베를린은 同盟國들의 책임하에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 ⑤ 동독과의 貿易관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
- ⑥ 「全獨省」을 이제부터 「內獨省」으로 그 명칭을 바꾸며, 서독이 이후 全體獨逸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는 서독에 있어서 統一政策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이

다.

60년대 전반기에 통일이 실현될 것으로 믿었던 것이 실현되지 않았고, 후반기를 맞는 서독의 입장은 통일전망이 어두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統一은 역사적 課業」으로 미루고, 우선 당장 급한 것이 통일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어떤 暫定的 措置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서독은 “獨逸民族은 하나”라는 理想에는 변함 없지만 오랫동안 고수해 온 원칙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수정해서 현실에 적용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할슈타인原則」을 과감히 수정하여 東獨承認을 인정하고, 현재의 국경선을 인정해야 하며, 東歐諸國과도 善隣關係를 맺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즉, 1967년 루마니아와, 1968년 유고슬라비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關係正常化를 추진한 것이, 그 한 例라 하겠다.

브란트首相은 “西獨정부는 새로이 동독에 교섭을 제의하며, 동독의 존재를 獨逸영토내에서 다른 국가로 인정하며, 동등한 자격의 기초위에서 동독정부와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獨逸問題의 해결없이 歐洲의 緊張緩和 없고, 따라서 歐洲의 平和維持를 위하여 독일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독일문제의 해결이 긴장완화의 선결조건이고, 긴장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독일문제도 점차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가) 東方政策(Ostpolitik)

브란트首相은 집권이후 슈미트를 團長으로 하는 「對蘇使節團」을 파견하여, 소련의 意中을 확인한 후, 1969년 10월 28일 「東方政策」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독일내 2國家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는 동독에 대한 국제법상의 承

認이 아니며, 다만 國內法上的 승인이다.

② 兩獨은 상호 외국이 아니라 특수관계이나 동독과 일반적인 國家間 관계에 입각하여 「不可侵條約」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

③ 독일에 대한 4大強國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존중한다.

④ 「核擴散禁止條約」에 서명할 예정이다.

⑤ 兩獨間의 經濟·文化部門에 상호협력할 것이다.

⑥ 폴란드와 소련에게 武力使用 포기를 위한 협상을 제의한다.

⑦ 「할슈타인原則」을 公式的으로 폐기한다.

⑧ 폴란드와 「오데르·나이세線」에 관한 國境協商을 성실히 전개 할 용의가 있다.

이와같은 「東方政策」은 독일이 당면한 현실문제를 직시하고 “緊張狀態로 부터 平和定着의 길로” 전환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여 東歐諸國과의 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브란트首相은 獨逸統一의 실현은 國際政治와 軍事的 여건변화, 歐洲에서의 勢力均衡의 변화, 독일민족의 統一意志에 따라 이룩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선 東西獨의 交流協力을 증진시킴으로써 民族繁榮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信賴回復과 民族和合을 이룩해야 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독일민족의 共同體意識을 확립하는 방안으로 獨逸政策(Deutschland Politik)을 수립하였다. 그 것이 바로 緊張을 완화하여 平和를 정착시키고, 사회를 開放하여 교류협력하고, 信賴를 회복하여 民族共榮의 길을 개척하게 된 「東方政策」이었다.

나) 頂上會談

i) 第1次 頂上會談

1970년 3월 19일 서독수상으로는 처음으로 브란트수상이 동독을 방문하여 슈토프수상과 에르프르트에서 第1次 頂上會談을 가졌다.

〈東獨 슈토프首相의 提議〉

① 東西獨間에 모든 차별없이 國際法에 기초한 동등한 자격의 關係正常化 수립, 西獨의 唯一代表權 포기.

- ② 상호간 對外政策에 대한 불간섭 및 「할슈타인原則」의 최종적 포기.
- ③ UN 憲章(第2條4項)에 입각한 동서독간의 무력행사포기, 상호 완전한 國際法的 承認, 領土保全, 現存國境線 준수.
- ④ 東西獨의 UN 加入 신청.
- ⑤ 核武器의 획득 및 여하한 형태로든 核武器 사용포기, 化學·細菌무기의 제조·사용·저장의 포기, 軍事費 50%의 삭감.
- ⑥ 第2次世界大戰의 殘滓 處理問題와 관련된 협의사항.
- ⑦ 東獨에 대한 西獨側의 모든 負債清算 및 서독측의 報償義務에 대한 協議.

<브란트首相의 提議>

西獨首相 빌리·브란트는 1970년 1월 22일 書翰으로 東獨에 提議했던 다음과 같은 基本立場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 ① 東西獨은 서로 外國이 아니며, 독일민족은 單一性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② 그 외에 국제법의 一般原則을 적용, 특히 모든 차별철폐, 領土保全,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義務, 兩獨 국경선의 존중.
- ③ 條約雙方 領域의 社會構造를 강제적으로 변경시키지 않을 의무.
- ④ 相互 선린적 협력, 특히 전문적, 기술적 협력의 도모, 이를 위한 兩政府間의 協定을 통한 공동의 해결책 협의.
- ⑤ 獨逸全體 및 베를린에 대한 기존 4大強國의 권리와 의무 존중.
- ⑥ 베를린 地位改善에 관해 합의하려는 4大強國의 노력支持.

그러나 第1次 頂上會談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다만 東西獨 頂上들이 對面 接觸함으로써 수년동안 凍結되어 있던 獨逸問題가 다시 國際政治舞臺에 오르게 되었다는 意義를 갖게 되었다.

獨逸人들은 희망에 부풀게 되었고, 第2次 頂上會談을 1970년 5월 21일 서독의 캄셀에서 다시열기로 合意함으로써 兩獨間의 왕래가 자유로워 지고 相互協力이 增大될 것이라는 기대는 한층 高潮되었다.

ii) 第2次 頂上會談

西獨은 당시 進行中인 「모스크바會談」과 「바르샤바會談」 및 「베를린에 관한 4大強國 會談」에 대한 방침과 일관되도록 調整하여 「第2次 頂上會談」에 임했다. 즉, 최대한의 주장을 내 놓지 않고 장기간

의 협상을 통하여 관철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필요한 신축성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1970년 5월 21일 서독의 카셀에서 「第2次 頂上會談」은 이미 合意한대로 열렸다.

〈브란트首相의 「카셀20個項」提議〉

① 각기 獨逸民族의 單一性을 그 헌법에 명기하고 있는 양국은 獨逸民族의 평화와 미래 그리고 단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條約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양독간의 關係正常化 및 兩獨國民들의 連帶性을 강화,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不利益 해소를 도모한다.

② 이 조약은 쌍방 憲法에 부합되는 절차를 밟아 쌍방 입법기관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③ 쌍방은 國際法의 일반원칙으로서 人權, 同等權, 平和共存 그리고 무차별原則의 기초위에 關係正常化를 도모한다.

④ 쌍방은 상호 暴力의 사용과 威脅을 포기하며, 諸般懸案問題를 平和의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相互領土保全과 國境線을 존중한다.

⑤ 쌍방은 국가의 主權과 관련되는 제반문제에 있어 獨立性과 自主性을 존중한다.

⑥ 쌍방은 일방이 他方을 代理 또는 代表할 수 없다.

⑦ 쌍방은 “獨逸領土內에서는 다시는 戰爭이 야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宣言한다.

⑧ 쌍방은 국제적 平和共存에 有害한 일체의 行동을 금지할 義務를 지닌다.

⑨ 쌍방은 歐洲의 保安을 提高시키는데 기여하는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⑩ 이 조약은 2次大戰의 결과 및 독일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두 국가에서 살고 있으나 「한 獨逸民族」이라는 單一性으로 부터 출발한다.

⑪ 베를린 및 獨逸全體에 관한 4大強國의 特殊權利와 합의에 따른 美·英·佛·蘇의 제반책임은 존속된다.

⑫ 베를린과 4大強國協定은 존중되며 서독과 서베를린의 結束관계도 보장된다. 쌍방은 4大強國의 베를린問題 正常化 노력을 支持할 의무를 지닌다.

⑬ 쌍방은 兩獨의 立法活動에 어떤 분야에서 충돌이 발생하는지 검토한다. 쌍방은 兩獨國民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입법상의

충돌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쌍방은 자기主權을 각자의 國家領域에 국한시킨다.

⑭ 이 조약은 兩獨間의 相互往來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⑮ 離散家族문제를 解決한다.

⑯ 쌍방 경계선상의 地方行政區域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선린정신에 의하여 해결한다.

⑰ 쌍방은 교통, 우편, 통신, 정보교환, 학술, 교육, 문화, 환경문제, 체육 등, 諸般分野의 협력을 통하여 相互利益을 증진, 확대하며 구체적인 問題協議에 임한다.

⑱ 쌍방은 交易을 위하여 기존 協定, 委任, 合意 등은 계속 유효하며 교역관계를 계속 擴大한다.

⑲ 쌍방은 閣僚級 全權代表를 임명하고 「常駐全權代表部」를 각각 설치한다. 그리고 管轄地域內에 주재하는 상대편 全權代表部의 任務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한다.

⑳ 쌍방이 합의하는 條約의 원칙에 의하여 國際機構加入 및 協力を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東獨首相 슈토프는 從前의 提議를 다시 내 놓았다. 그는 특히 東獨의 國際的 地位에서의 主權과 同等權에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

동독의 입장은 아직 頂上會談 이하의 실무급 협상에 임할 태도를 갖추지 못한 처지였고, 우선 “생각할 時間을 갖자”고 提議하면서 會談 終了를 서둘렀다.

그러나 서독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하여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한 關係長官 및 實務者들의 접촉을 시도하면서 끈질기게 對話窓口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다) 獨·蘇不可侵條約

서독과 소련은 相互 平和條約이 체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考慮하여 1970년 1월 부터 5월 까지 서독의 바르次官과 소련의 그로미코外相間에 相互 武力行使 포기의 원칙에서 부터 國境線 준수문제에 이르기 까지 협상을 시작했다.

1970년 7월 16일 동독의 울브리히트는 “서독과 소련의 不可侵條約

이 체결되면 中斷된 兩獨對話를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드디어 1970년 8월 12일 「獨·蘇不可侵條約」이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다. 全文 5個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歐洲의 平和維持 ② 분쟁의 平和的 해결 ③ 武力行使의 포기
④ 「오데르·나이세線」을 포함한 현재의 國境線 존중 ⑤ 獨逸民族의 自決權에 의한 統一意志 존중

이 條約 締結이 독일의 永久分斷을 가져오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하여 謝外相은 그로미코外相에게 전달한 「獨逸統一을 위한 書翰」에서 “同條約이 獨逸國民의 자유로운 自決에 바탕을 두고, 그의 통일을 다시 회복하고 歐洲의 平和를 유지하는 서독의 政治的 目的과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라면서 民族自決에 의한 독일 再統一의 가능성을 재확인하여 소련도 이에 수락하였다. 이는 서독이 이로 인한 獨逸分斷의 永久化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라) 獨·波友好條約

1970년 12월 7일 서독은 폴란드와 여러차례의 豫備會談을 거쳐서 바르샤바에서 역사적인 「獨·波友好條約」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兩國間의 國交수립에 관한 一般狀況을 골자로 하고, 그 밖에는 「獨·蘇不可侵條約」의 내용과 類似하다.

- 즉 ① 폴란드와 현존 國境線을 존중하며 각기 領土權을 尊重한다. ② 武力使用을 拋棄한다. ③ 經濟的, 科學的, 技術的 文化關係를 正常화한다.

결국, 이 두 조약의 체결로서 그간 서독의 對東歐圈外交 및 동독과의 基本條約協定에 대한 소련의 거부요인이 제거되었으며, 베를린 協定の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브란트首相은 東獨과의 頂上會談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동독의 盟邦들을 서독에 끌어 들임으로써 종국적으로 동독을 끌어내리는 戰略을 세우고 우회적인 외교접근을 시도한 것이었다.

5) 交流協力期(1972-現在)

가) 4大國의 베를린協定

1972년 6월 3일 4大強國은 「베를린協定」을 締結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서독과 서베를린 사이의 自由通行을 保障한다.
- ② 서독과 서베를린의 連結維持, 서베를린은 西獨領土의 일부가 아니며, 서독에 의하여 統治되지 않는다.
- ③ 서베를린 시민의 東獨訪問을 인정한다.
- ④ 서독은 소련과 東歐地域을 여행하는 서베를린 시민의 領事保護國이 되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서베를린을 대표한다.
- ⑤ 서베를린에 蘇聯領事館을 설치한다.
- ⑥ 서독의 法律은 서베를린에 적용되지만 서독의 聯邦會議은 서베를린에서 會晤를 가질 수 없다.

이와 같이 「베를린協定」이 체결됨으로써, 그동안 동서독간의 對話를 막아온 主要爭點이 제거되었다. 결국, 「베를린協定」은 東西獨 關係改善을 재촉하는 소련으로부터 새로운 압력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우회적 과정을 거쳐 1972년 5월 26일 兩獨間 최초의 국가간 條約인 「一般通行協定」⁷⁾이 체결되었다.

나) 東西獨 基本條約

1972년 12월 21일 동베를린에서 서독 國務省 에곤·바르次官과 동독 미카엘·콜次官에 의하여 「東西獨 基本條約」이 마침내 체결되었다.⁸⁾ 全文 10個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兩國은 同等資格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정상적 善隣關係를 발전시킨다.
- ② 양국은 UN 憲章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主權平等, 獨立, 自主性 및 領土保全의 존중, 自決權, 人權保護 및 無差別에 관한 목적과 원칙에 따른다.

7) 1972. 5. 26. 西獨國務省 바르次官과 東獨 콜次官에 의한 「一般通行協定」이 체결되었다. 全文33條項(一般規程 9個項, 鐵道交通7個項, 內陸·船舶交通 7個項, 自動車交通5個項, 海上交通3個項, 終結規定2個項)으로 구성되었다.

8) 「東西獨 基本條約」締結이 있기까지는 項上會談2回, 長次官會談 70回, 실국장급회담 200回, 모두 2년간 무려 272회의 會談 끝에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③ UN 憲章에 따라 양국은 그들의 紛爭問題를 해결하고 武力에 의한 위협이나 그 사용을 止揚한다. 그들은 현재나 장래에도 그들의 현존 境界線의 불가침을 재확인하며 그들의 영토보전을 무조건 존중할 책임을 진다.

④ 양국의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를 國際的으로 代表하거나 다른 국가를 代表하여 행동할 수 없다.

⑤ 양국은 歐洲諸國間의 平和的 關係를 촉진시키고 歐洲에서의 安全과 協力을 위해 기여한다. 쌍방은 歐洲內에서 武力과 軍備를 減縮시키려는 노력을 지지하며, 이로 인하여 참가국의 안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쌍방은 歐洲內 국제적 安全保障을 위해 실효성 있는 國際的 감시하에 전반적이고 완전한 軍備縮小를 목표로 하여, 특히 核武器와 기타 대량학살무기 분야에 있어서의 군비제한과 감축을 위한 노력을 支持한다.

⑥ 양국의 統治權이 각자의 영토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쌍방은 양국의 對內外問題에 있어서 상호獨立성과 自主성을 존중한다.

⑦ 양국은 關係正常化 과정에서 실제적이고 人道的 문제를 규제할 용의가 있음을 宣言한다. 쌍방은 本條約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호이익을 위하여 經濟, 學術, 技術, 交通, 司法, 郵便, 電信業務, 保健, 文化, 體育, 環境保護 등의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協定을 체결할 것이다.

⑧ 양국은 常駐代表部를 서로 교환한다. 대표부는 쌍방의 政府 소재지에 각기 설치한다.

⑨ 양국은 本 조약이 이전에 쌍방이 체결한 모든 雙務的, 多務的 國際條約과 協定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다.

⑩ 본 조약은 批准을 요하며, 비준에 관한 兌換을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양국의 全權代表는 본 조약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조약의 체결은 안으로 獨逸民族의 分斷으로 인한 苦痛輕減을 위한 정치적 명분이 있으며, 새로운 關係正常化를 모색함으로써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에 기여하고, 밖으로 歐洲平和와 東西陣營의 緊張解消에 공헌하는 함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暫定協定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즉, 境界線의 不可侵과 같은 특정한 원칙을 포함시켰으나, 그 내용은 內獨關係를 규율하기 위한 一般原則 내지는 「최소한의 틀」을

마련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東西獨 體制間의 敵對關係를 극복한 조약이 아니라 일종의 敵對的 協力關係를 규정한 조약으로 오히려 體制間의 적대관계를 論理的 바탕으로 하여, 다만 서로를 위하여 선택된 分野에서의 協力を 추구하자는 것이다. 즉, 「좋은 이웃 관계」의 形成을 겨냥하는 비교적 소극적인 條約이라는 評價를 받았다.⁹⁾

이 조약은 서독이 동독의 法的 存在를 인정하고 國際法的 承認은 아니나 國內法的으로 「1民族 2國家」라는 특별한 관계를 인정한 데 意義가 있다. 그러나 東獨側은 이조약을 分斷條約으로 해석했고, 그래서 “실제로 「社會主義的 民族」과 「資本主義的 民族」이라는 상이한 두 民族이 생겼고, 이들은 서로 統合할수 없다”고 「2民族 2國家」를 주장함으로써 再統一의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특히, 1971년 에리히·호네커가 東獨의 指導者로 執權하면서 이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에 반해 서독은 基本條約을 暫定的인 協定으로 보고, 결코 再統一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分斷苦痛을 완화시키는 방도라고 보았다. 그리고 기본조약은 어떠한 핵심적인 서독의 입장을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다. 동조약은 中短期的 觀點에서는 自由往來, 長期的인 展望에서는 獨逸統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自決權으로 東西獨間의 緊張緩和의 수단으로 언제나 남아있다고 보았다.

다) UN 同時加入

1972년 11월 5일 4대強國은 「4大國宣言」을 통하여 동서독의 UN 同時加入신청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972년 11월 8일 兩獨은 「UN 加入申請에 관한 議定書」에 대한 聲明으로 “兩國家의 政府는 UN 加入申請書를 동시에 제출하기로 상호 通告한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1973년 9월 18일 第28次 UN 總會에서 東西獨 同時加入

9) 安秉永, 「東西獨關係와 歐洲國際關係」 延世大, 1982. p.168

案이 可決되어 동시가입이 실현되었고 그 후, 1975년 「歐洲安保協力會議」에서 正式調印됨으로써 최종적인 매듭을 지었다.

라) 諸般協定

東西獨基本條約의 체결을 前後하여 많은 懸案問題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主要協定들이 계속하여 순조롭게 체결되었는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旅行 및 區域間 交流협정 (1971. 12. 20)
 - ② 一般通行協定 (1972. 5. 8)
 - ③ 자동차화의 개통 및 증설에 관한 협정 (1972. 7. 24)
 - ④ 경계지역 河川정비와 확장에 관한 협정 (1973. 9. 20)
 - ⑤ 旅行者의 무료입원가료에 관한 保健협정 (1974. 4. 25)
 - ⑥ 扶養料 支拂移轉에 관한 협정 (1974. 4. 25)
 - ⑦ 뤼베크灣 부근영해 및 漁業협정 (1974. 6. 29)
 - ⑧ 쓰레기·下水流入에 따른 補償협정 (1974. 12. 10)
 - ⑨ Swing 借款 규칙의 연장에 관한 협정「1974. 12. 12)
 - ⑩ 郵便 및 電話에 관한 협정 (1976. 3. 30)
 - ⑪ 에거뎀地域 送水管 설치에 관한 협정 (1978. 5. 3)
 - ⑫ 북부高速道路(베를린→함부르크) 건설 및 왕래에 관한 협정 (1978. 11. 16)
 - ⑬ 홍수방지용 貯水池 설치·운영에 관한 협정 (1978. 11. 29)
 - ⑭ 獸醫師 協力에 관한 협정 (1979. 12. 21)
 - ⑮ 鐵道複線(베를린→헬름슈테르) 건설 및 運河(미테레랜드→카날), 高速道路(바르타→헤레스하우젠) 건설에 관한 협정 (1980. 4. 30)
 - ⑯ 東西獨 移住협정 (1981. 4. 25)
 - ⑰ 靑少年 交流협정 (1982. 6. 18)
 - ⑱ 서베를린地域 電鐵경영권 移轉협정 (1982. 6. 18)
 - ⑲ 文化협정 (1986. 5. 8)
 - ⑳ 環境保護에 관한 협정 (1987. 9. 8)¹⁰⁾
 - ㉑ 放射能 分野의 情報 및 경험교환에 관한 협정 (1987. 9. 8)
 - ㉒ 科學技術 協力에 관한 협정 (1987. 9. 8)
- 이 밖에도 약 15個 정도의 諸般協定이 체결되었고, 결국 東西獨은

10) 上記 20, 21, 22 項의 協定은 1987. 9. 7~11, 東獨의 에리히·호네커 總書記長이 西獨을 訪問한 期間中에 締結된 것임.

「對決의 時代」로 부터 「交流協力の 時代」로 轉換되었다.

이와 같은 時代轉換에 따라 東西獨은 人的·物的·文化的 多방면의 교류를 증대시켰고, 상호간의 信賴回復과 社會開放을 실현하여 統一된 상태를 방불하리 만큼 民族共榮의 길로 相扶相助해 나아갔다. “分斷은 있으나 苦痛은 없다”는 말이 나왔고, 平和定着의 터전을 착실히 마련해 나아갔다.

결국 동서독은 統一이 실현될 때 까지 가능한 모든 交流와 協力으로 共同實利를 추구하면서 國際情勢의 변화가 統一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때를 기다려 그 때를 대비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 東西獨의 交流現況

1) 人的交流

동서독은 分斷直後부터 4大國命令(1946. 10. 29. 명령제56호)에 따라 동서독간의 交通왕래가 베를린 봉쇄기간(1948. 6-1949. 5)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져 왔다.

동독은 1964년 9월9일 「年金生活者 西獨訪問許容」을 법령으로 공포하고, 노동력이 없는 노인(男子65歲, 女子60歲이상)들의 西獨訪問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제한된 人的交流가 실시되었다.

1972년 5월8일 「一般通行協定」이 체결된 후, 근본적으로 여행규제의 완화 및 개선이 실시되었다.

지난 1987년에는 1千萬名이상(西獨住民740萬名, 東獨住民340萬名)이 家族과 親戚을 만나기 위해 東西獨을 방문했다.

가) 西獨住民의 東獨訪問

동독은 서독주민의 東獨內 親知訪問을 허용하고, 연간 총 60日間 체류를 허용했다. 서독은 동독의 招請을 받은 商工人, 文化人, 體育

人, 宗敎人들의 동독방문을 허용했다.

서독주민은 일정한 조건¹¹⁾을 받아들이는 전제하에 자동차로 방문하게 되었다.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은 미리 東獨政府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동독정부의 허가만 받으면 방문목적, 地域에 따라 방문할 수 있고, 가족과 친척을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VISA) 발급시 5마르크(DM)의 수수료와 방문지 거리에 따라 통행료를 내야하고,

〈表 1〉 서독인의 동독과 동베를린 여행 (단위: 천명)

연 도	동독과 동베를린 여행	서독인의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의 당일여행
1970	약1,254	약1,400
1971	약1,267	약1,400
1972	약1,540	약1,400
1973	약2,279	약1,400
1974	약1,919	약1,400
1975	약3,124	약1,400
1976	약3,121	약1,400
1977	약2,988	약1,400
1978	약3,177	약1,400
1979	약2,923	약1,400
1980	약2,746	약1,400
1981	약2,088	약1,120
1982	약2,218	약1,120
1983	약2,219	약1,120
1984	약2,499	약1,120
1985	약2,600	
1986	약3,800	
1987	약5,500	

출처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 Bericht 1987, p.21.

11) 自動車旅行條件; ① 긴급한 傍무가 인정된 때, ② 3歲미만 어린이 동반시, ③ 신체 장애자, ④ 상업, 문화, 체육, 종교상 목적으로 여행할 때에 한함.

東獨에서의 滞在日數에 따라 1日 25DM 씩 西獨貨幣를 東獨貨幣로 強制換金¹²⁾을 해야 한다.

1981년 4월25日「移住協定」締結에 따라 東獨住民의 西獨移住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1983년 동독주민 8천명이 처음으로 서독으로 이주해 왔고, 최근 연간 약3만여명의 이주가 실현되고 있다.

서독은 동독에게 移住者의 「教育費返還」¹³⁾ 및 「Swing 借款(10억 DM)」¹⁴⁾을 제공해 왔다.

이와 같은 西獨移住를 허용하는 東獨의 입장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大義名分을 과시하고, 한편으로는 東獨內의 불평불만이 많은 不純勢力, 反體制人士를 제거하는 방편으로 삼고, 「教育費返還」 및 「Swing 借款」에 의한 實利追求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一舉三得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나) 東獨住民의 西獨訪問

동독주민이 서독을 방문할 때에도 동독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독은 東獨住民의 西獨訪問時 強制換金이나 통행료를 받지않고 아무런 제한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기간도 1년에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고, 또한 긴급한 家事問題가 발생했을 때, 哀慶事에는 제한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중요한 家族行事的 참석을 위한 여행편의규정」을 만들어 訪問기회를 대폭확대시켰다.

東獨住民의 西獨訪問은 1964년 부터 年金生活者인 노인의 1년 1회

12) 강제환금이란 東西獨의 화폐가 같지 않으므로 相對國의 貨幣로 換金하는 것을 말한다. (1985年 1:2 1988年 1:3의 換率로 서독화폐 가치가 높으나 1:1로 交換한다) 東獨訪問을 마치고 歸國時, 동독화폐의 잔액은 다시 교환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最近 西獨政府는 동독방문자의 동독화폐를 換率時勢대로 교환해 주고 있다.

13) 교육비반환이란, 동독에서 서독으로 移住한 者의 학력에 따라 東獨에서 履修한 교육비를 현재 서독의 登錄金時勢로 換算하여 서독이 동독에게 반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4) Swing 借款이란, 일정기간 원금과 이자를 연기해주는 借款을 말한다. (독일의 Swing 借款은 7년마다 원금, 이자연장을 協議한다)

4주간의 滞在기간으로 서독 및 서베를린에 거주하는 친척을 방문토록 하던 制限規程을 최근 完化하여 연금생활자가 아닌 住民도 허용됨으로써 서독방문자가 급증했다. 특히, 1987년 東獨住民이 5萬回 以上 西獨을 방문했고, 2년전 부터 東西獨의 都市間 姉妹結緣이 46個 이루어져 동독주민을 초청함으로써 많은 방문이 실현되었다.¹⁵⁾

〈表 2〉 동독인의 서독 여행 (단위: 명)

연 도	동독 연금 수혜자의 서독과 서베를린 여행	연금 수혜 해당연령 미달인 동독주민의 서독여행(서베를린 제외)
1970	1,048,000	
1971	1,045,000	
1972	1,068,000	11,421(11월/12일)
1973	1,257,000	41,498
1974	1,316,000	38,298
1975	1,330,000	40,442
1976	1,328,000	42,751
1977	1,323,000	41,462
1978	1,384,000	48,659
1979	1,369,000	41,474
1980	1,554,000	40,455
1981	1,563,000	36,767
1982	1,554,000	45,709
1983	1,463,000	64,025
1984	1,546,000	61,133
1985	1,609,000	66,000
1986	1,757,700	59,300
1987	2,204,200	1,200,000

출처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 Bericht 1987, p.23 : *Zahlenspiegel BRD/DDR ein Vergleich*(Bonn : 1985). p.118.

15) 1987. 9.7~11. 호네커 西獨訪問時, 폴首相과 「東西獨間 자매결연의 합의에 따라 46개 市間에 招請事業이 이루어졌다. (1988. 9. 15. 내독성 빌름스長官의 慶北大學校에서 行한 演說文 參照)

〈表 3〉 서베를린 시민들의 동독과 동베를린 여행 (단위 : 천명)

연 도	인 원	연 도	인 원
1972	3,320	1980	2,600
1973	3,382	1981	1,800
1974	2,560	1982	1,730
1975	3,210	1983	1,500
1976	3,400	1984	1,600
1977	3,400	1985	1,900
1978	3,260	1986	1,880
1979	3,100	1987	1,940

출처 : Bundesministerium fu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 Bericht 1987, p.21.

2) 經濟交流

동서독은 基本條約締結 이전에도 소규모의 경제교류를 해 왔다.

경제교류는 당초 共存體制下에서 공동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全體獨逸의 單一經濟單位를 지향했던 占領4大強國에 의해 추진되었다. 前後 부족했던 생활필수품과 産業原資材 등의 상호교환을 4大強國이 증용했으며, 점령지역간의 경제교류가 서독 측에는 큰 이익을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30여년간 지속시켜 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東西獨은 현재 單一經濟單位를 원칙으로 하여 外國貿易이 아닌 國內交易(域內交易)으로 하고, 無關稅原則을 바탕으로 하여 經濟交流를 실시하고 있다.

서독은 유류, 섬유제품, 농산물, 갈탄 등을 비롯한 에너지源과 原資材를 동독에서 수입하고, 동독은 철강, 化學製品, 工業生産材, 機械類 등을 서독에서 수입한다.¹⁶⁾

서독은 對東獨 Swing 借款을 비롯하여 차관기간의 연장설치, 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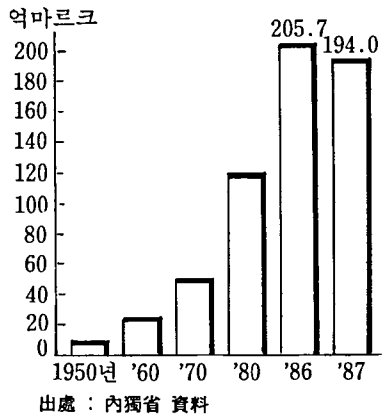
16) 東西獨은 經濟交流에 있어서 「수입」을 「到着」, 「수출」을 「供給」, 「무역」을 「交易」이라는 用語를 使用함으로써 國內交易(域內交易)임을 강조하고 있다.

東獨銀行借款에 대한 政府保證, 10억 DM 借款승인 등 많은 특혜를 동독에게 제공하면서 경제교류를 추진했다.

최근 東西獨 經濟交流는 더욱 활발히 進行되었다. 1984년 12월 兩獨間 國境地域에 산재한 「假性칼리 채굴에 관한 協定」을 締結했고, 1984년 11월 「自動車合作生産協定」에 따라 서독의 폴크스바겐自動車주식회사는 동독의 리첸츠에서 연간 30만대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동차산업의 合作生産은 東西獨 經濟交流의 밝은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經濟交流가 최근 2~3년간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분단이후 대체로 增加 추세를 지속하여 西獨의 內獨省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東西獨 交易量은 1986년 처음으로 200億 DM(117억불)를 뛰어넘어 205億 7千萬 DM를 기록했다. 그리고 東西獨企業間 계약건수는 연평균 4萬5千件을 웃돌고 있다.¹⁷⁾

〈表 4〉 동·서독 교역규모



〈表 5〉 서독과 동독간의 수출현황 (1985.12 현재)

연 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수출		동독에서 서독으로 수출	
	금액 (단위 : 100萬마르크)	비고	금액 (단위 : 100萬마르크)	비고
1980	5,870		5,850	
1981	6,130	증가	6,350	증가
1982	7,080	증가	6,990	증가
1983	7,680	증가	7,560	증가
1984	7,250	감소	8,240	증가
1985	8,590	증가	8,160	감소

17) 韓國經濟新聞, 1988. 9. 29字 參照.

3) 體育交流

동서독은 분단이래 꾸준히 체육교류를 계속해 왔다.

1955년·올림픽單一팀構成에 합의하여 1956년 멜버른올림픽대회, 1960년 로마올림픽대회, 1964년 東京올림픽대회에도 「東西獨單一팀」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동독선수들의 정치적 亡命과 脫出事件이

〈表 6〉 1966년 교류 재개 이후 동서독 스포츠 교류 실적

연 도	교류횟수(회)		참가인원(명)	
	서독 및 서베를린 지역개최	동독 및 동베를린 지역개최	서독측	동독측
1966	30	52	535	915
1967	40	48	707	832
1968	14	32	221	579
1969	14	43	157	835
1970	6	13	60	224
1971	10	8	123	101
1972	10	7	133	107
1973	9	2	124	2
1974	19	16	295	191
1975	28	25	376	235
1976	29	32	316	307
1977	27	35	298	335
1978	41	33	516	351
1979	35	33	435	301
1980	26	30	—	—
1981	32	31	—	—
1982	37	41	—	—
1983	37	38	—	—
1984	40	33	—	—
1985	36	35	—	—
1986	43	41	—	—

出處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 Bericht 1984(Bonn : 1935). p.43. : 국토통일원, 「동서독 스포츠 협상 사례연구」 (서울 : 1988), p.54

자주 발생하자 中斷되고 말았다.¹⁸⁾

서독은 1968년 민헨올림픽(1972)에 동독의 個別참가를 허용하였고, 그 외에도 서독에서 개최되는 모든 國際體育大會에 동독의 참가는 물론 서독내에서의 東獨國旗揭揚, 國歌연주를 허용함으로써 體育交流를 정상적으로 실현했으며, 1974년 「體育關係규칙에 관한 議定書」의 합의에 따라 더욱 활발히 추진되었다.

東西獨은 매년 두 국가의 體育團體本部들 사이에 行事日程을 협의한다. 동독은 體育行事を 첨단스포츠領域만으로 제한하려는 반면, 서독은 대중 및 청소년 스포츠의 交流擴大를 실현하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의견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體育交流는 순조롭게 이루어 가고 있다.

4) 遞信交流

동서독의 체신교류는 「東西獨 基本條約」체결 이전 부터 실시되어 왔다.

1970년 까지 手動式電話가 34회선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설되어 현재 장거리直通電話回線이 1,517회선으로 연간 약 4千萬通話를 하고 있다.¹⁹⁾

그리고 郵便物交流도 활발히 추진되어 1968년 「郵便·電話疏通料清算協定」이 체결된 이후부터 우편물의 교류는 본격적으로 실현되었다.

동서독은 1976년 상호간의 우편·전화소통을 國際郵便이 아닌 國內郵便으로 취급하기로 합의한 「郵便·電話協定」을 체결함으로써 國際手數料, 세관용 내용설명서 등 國際電話業務에 필요한 수속을 생략하고, 간소하고 편리한 遞信交流를 실현하게 되었다.

18) 單一팀에서 國旗는 黑·赤·朱黃 三色의 獨逸帝國 당시의 國旗에 올림픽마크를 넣어 사용했고, 國歌는 베에토벤 교향곡9번(환희)을 사용 연주했고, 선수의 유니폼에는 Germany 라는 英文標識으로 사용했다.

19) 韓國經濟新聞, 1988. 9. 29日 參照

서독은 동독에게 1976년 부터 1982년까지 해마다 8千5百萬 DM 의 遞信料金を 支拂해 왔다. 그리고 1983년 부터 1990년 까지 매년 2億 DM 의 遞信料金を 지불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체신협정을 맺기로 하였다.

현재 서독에서 住民들이 동독으로 하는 電話料는 無料로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나, 동독에서 서독으로 하는 電話料는 東獨住民의 부담으로, 受益者負擔原則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대부분 서독 주민들이 電話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단위 : 백만)

<表 7> 서독과 동독의 전화통화 통계

연도	서독과 동독 간의 전화	그 가운데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간의 전화
1969	0.5	
1970	1.7	
1971	1.8	0.8
1972	5.1	2.9
1973	5.8	2.8
1974	6.1	2.7
1975	9.7	3.8
1976	11.3	6.3
1977	12.8	7.2
1978	16.7	8.3
1979	20.6	8.9
1980	23.0	9.5
1981	23.4	8.7
1982	23.1	7.9
1983	23.2	8.2
1984	25.6	8.6
1985	26.4	8.8
1986	30.0	9.5
1987	30.0	10.0

그리고 郵便物교류는 1日 1回式 境界線の 交換장소에서 편지, 소포 등, 하루에 10만여건의 우편물을 상호교환하고 있다. 특히, 便紙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發送하는 것이 많고, 소포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우송되는 것이

<表 8> 동서독 우편교류 현황 (1984현재) (단위 : 100만통)

연도	편 지		소 포	
	서독→ 동독	동독→ 서독	서독→ 동독	동독→ 서독
1980	75	70	27	9
1982	74	98	25	9
1983	59	88	25	9

출처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 Bericht 1987, p.32.

出處 : 內獨省 資料

많다. 西獨住民들은 급한 용건은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편지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5) 文化交流

동서독의 문화교류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류가 많았다. 그러나 文化交流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어 오랫동안 宿題로 남아 오게 되었다.

그러던중 1986년 5월6일 「東西獨 文化協定」이 체결됨으로써 양국은 文化, 藝術, 教育, 學術, 出版, 圖書館, 記錄保管所, 言論(TV·Radio), 靑少年交流등, 전반에 걸쳐 활발한 교류증진의 터전을 마련했다. 이러한 文化交流사업은 오케스트라, 연극공연에서 부터 詩 낭송에 까지 포함되며, 많은 관중들이 집중하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즉, 獨逸民族 公同의 文化와 歷史를 접하게되고, 토의함으로써 民族的 一體感과 民族共同體의 認識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가) 藝術交流

1953년 부터 라이프치히합창團, 함부르크오페라團, 뮌헨필하모니 등의 交換公演을 실시 해 왔다.

최근 동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한 디자인 展示會에는 서독주민 20여만명이 관람했다.

1972년 서베를린에서 동독의 오페라公演이 있었고, 서독의 부피탈에서는 같은 해 11월 「엔겔스出生 150주년 기념公演會」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72년 12월 서독의 비스바덴에서 헨델의 오페라公演을 개최하였다. 특히, 동독은 서독에서 개최되는 「제20회 뮌헨올림픽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民間藝術團으로 구성된 「뮌헨올림픽대회 축하공연단」을 조직하여 서독을 방문하여 수 개 도시를 순회공연함으로써 서독주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 밖에 동독의 라이프치히劇團은 서독의 주요도시에서 셰익스피어·햄릿을 巡廻公演한 바 있고, 동독의 피아니스트 안네로스·스미

트의 피아노獨奏會를 서독의 數個都市에서 演奏했다.

美術分野에도 교류는 활발하다. 「博物館展示品 교환전시회」를 비롯하여 「印象主義派展示會」 등이 개최되었다. 특히, 1986년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열린 「바로크展示會」에도 西獨住民들이 무려 10餘萬 명이 관람하였다.

이와 같은 招請公演形式의 藝術交流은 東西獨間의 긴밀한 文化協力關係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造形藝術분야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社會主義的 寫實主義」가 동독에서 主流를 이루고 있다는 상황으로 인해서 影響을 받고 있다.

앞으로 東獨의 藝術家들에게 “藝術家의 多樣한 技法”이 허용되어 抽象的 表現樣式을 위한 機會가 주어질 것인지,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가까운 傾向의 作家들에게만 交換展示의 가능성을 주게 될 것인지의 문제는 아직도 시간을 요한다.

나) 言論人·放送交流

동서독간의 언론인교류는 현재 서독의 首都 본(Bonn)에 동독의 言論人 6명이 주재하고 있고, 서독의 TV·라디오放送 등, 17개 기관의 特派員 19名, 編輯記者 32명이 동베를린에 주재하고 있다. 특히, 서독의 TV社 3個 支局이 동베를린에 주재하면서 直接放送을 하고 있고, 동서독은 아무런 제한없이 相對方의 TV를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유롭게 視聽하고 있다.

서독은 1974년 7개 言論機關에서 동베를린에 支社를 설치하고 특파원을 파견하였다. 반면, 동독은 6개 언론기관의 기자들을 본에 파견하였다.

다음으로 동서독의 放送交流은 “상호 비방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따라 아무런 제한없이 放送取材활동이 보장되며, 電波도 자유롭게 送受信하고 있다. 1971년 9월 30일 「兩獨間 칼라 TV 放送帶 설치 및 운영에 관한 協定」이 체결되면서 放送프로그램 및 상호간의 TV 방

송 送受信이 용이하게 되었다. 그 후 「뮌헨올림픽大會」 때는 TV 방송중계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新聞·雜誌交流는 서독에서 출간된 신문·잡지가 동독과 동베를린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반출·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街頭販賣는 불가능하다. 외나하면 街販할 수 있는 조직이 없을뿐 아니라 동독측이 미리 책정해 놓은 신문·잡지의 配當部數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독에서 동독으로 반출되는 신문·잡지는 약 600種에 이르고 있다.

다) 學術交流

동서독은 학술분야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일찌기 동서독은 서독의 經費負擔으로 동서독 同數의 학자들로 「獨逸語大辭典編纂委員會」를 구성하여 「獨逸語大辭典」을 편찬하였고, 이를 토대로 國語教育을 시켜온 결과, 오늘날 동서독은 言語의 異質化 현상이 심각하지 않게 되었다.

동서독은 政治·이데올로기 분야가 아닌 自然科學 분야의 學術雜誌 및 研究論叢, 辭典類 등의 발간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출판비용은 서독이 부담하였다. 學術誌, 研究論叢, 蒐集資料를 출간할 경우 및 學術誌 시리즈를 출간할 경우에 協力方法은 다양하다. 즉, 發行者와 編輯者의 일부는 서독내 혹은 동독내에 그들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 처리와 印刷는 대개 동독에서 이루어 지고, 보수, 인쇄비, 기타 비용은 協約의 범위내에서 대개 서독이 지불한다.

또한 저명한 學者들의 학술강의 및 초청강연도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學者를 서독에서 초청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서독學者들이 동독에 초청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동독의 스테판·헤임은 서독의 8個 主要都市를 순회하면서 「文學講演會」를 했고, 헤르만·칸트도 동서독에서 同時出版된 그의 소설

에 관한 「特別講演會」를 서독의 여러 대학에서 가졌다.

그리고 동독에서 발간된 社會主義的 性格이 뚜렷한 小說도 서독의 출판사에서 공공연히 출판되고 있다. 그러나 동독의 경우는 다르다.

동서독간의 書籍交流는, 敎養圖書, 日刊新聞, 專門雜誌 등의 교류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이데올로기性的의 專門書籍의 교류는 대부분 억제되고 있다. 근래 동서독은 「共同圖書展示會」를 해마다 개최하여 왔고, 古典類, 歷史專門書籍 등에 한하여 一定期間 貸與도 실시 해 주고 있다.

3. 中國의 統一問題

가. 中國·臺灣의 分斷過程

1) 第1次 國共合作(1924~27)

中國共產黨이 國民黨과 合作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1922년 11월 「코민테른 第4次 大會」에서였다. 이 대회에서 “中國은 帝國主義 타도를 위해 「反帝國主義 統一戰線」 수립이 필요하므로 中國共產黨員은 개인자격으로 國民黨에 가입하여 民族革命運動에 가담한 노동자·농민을 포섭하여 선동하고, 小부르주아계급과 연합하여 反帝國主義 투쟁을 전개하도록 한다”는 決議文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1923년 1월 「코민테른 執行委員會」에서 다음과 같은 國共合作指示를 발표했다.

- ① 國民革命의 主體勢力은 國民黨이다.
- ② 고립된 勞動運動세력이 미약하며, 당면과제로서 帝國主義와 軍閥을 반대하는 民族運動을 전개한다.
- ③ 中國共產黨은 統一戰線內에서 공산당의 독자성을 유지한다.
- ④ 國民黨에 加入하여 노동자를 포섭한다.

당시 國民黨을 領導하고 있던 孫文은 1921년 廣東政府의 總統이

되자, 奉天軍閥 張作霖과 段祺瑞와 3角同盟을 맺어 北京政權을 장악한 오패부를 타도하려 하였으나 陳炯明의 背反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孫文은 歐美諸國과 日本에 國民革命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냉담하였고, 소련만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國共合作이 성사된 것은 孫文의 親蘇政策 때문인 데, 孫文이 공식적으로 親蘇政策을 밝힌 것은 1922년 1월 소련 特命全權大使 요페와 회담후 발표한 4個項의 공동선언²⁰⁾이 처음이었다.

1924년 1월 廣東에서 「國民黨 第1次大會」를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에서 공산당원의 國民黨 가입이 허용되었다. 國共合作은 표면상 孫文이 제시한 共產黨吸收方式이었으나 中國共產黨의 자발적인 합작이 아니었고, 소련과 코민테른의 操縱에 의한 合作이었다.

그러나 國共合作後 공산당원들은 二重黨籍을 가진채 각종 출판물을 통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宣傳하고, 國民黨員들은 三民主義로 맞서 심한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 결과 三民主義 기치하에 집결되었던 國民黨員의 상당수가 共產黨側으로 넘어갔다.

1925년 3월 孫文이 急逝하자 國民黨은 求心點을 잃었고, 黨지도부는 合作찬성파와 반대파로 분열되었으며, 1926년 1월에 「國民黨 第2次大會」를 개최, 새로운 指導部를 구성하여 左派인 王朝明이 主席로 선출되었다. 이에 共產黨의 활동은 더욱 양성화되었다.

드디어 1926년 3월 20일 蔣介石은 害黨分子 50여명을 제거하고, 6월5일 國民革命軍 總司令官이 되었다. 國民黨 左派들은 蔣介石과는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1927년 1월 1일 武漢으로 옮겨 武漢政府를 발족하자. 蔣介石은 본격적인 共產黨 소탕작전을 폈고, 左派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으로 南京政府를 수립함으로써 國共合作은 사실상

20) ① 中國의 當面問題는 統一完成과 獨立國家 수립이다. 소련은 支援할 용의가 있다.

② 과거의 「中·蘇不平等條約」을 폐기하고 새로이 中·蘇交渉을 희망한다.

③ 東支那鐵道問題를 中·蘇會談에서 解決하자. ④ 소련은 外蒙古에서 철수할 필요가 없다.

결렬되었다.

2) 第2次 國共合作(1937~46)

1931년 7월 일어난 滿洲事變은 급속히 확대되어 1932년 1월 上海市街戰으로 돌입하자 中國國民들의 抗日感情은 격증하게 되었고, 共產黨은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세력확장을 위한 心理戰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드디어 共產黨은 對日抗戰을 宣言하고, 內戰中止와 民衆武裝에 의한 抗日戰에 踴기할 것을 호소했다. 1936年 8月 25日 공산당은 “國民黨에 보내는 中國共產黨의 글”을 발표하여 정식으로 國共合作을 제의하였다.

한편 中國國民들은 日本의 침략이 심해지는 형편에 內戰助長은 非愛國的이며, 滿洲를 잃으면서 까지 掃共強硬策을 지속함은 반국가적이라는 여론이 비등해 갔다. 특히 毛澤東의 「抗日民族統一戰線宣言」은 지식층, 학생, 노동자, 농민 등, 각 계층의 支持를 받게 되었고, 國民軍 내부의 반발까지 겹쳐 蔣介石의 掃共作戰은 더 이상 감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蔣介石은 西安에 있는 張學良部隊를 방문, 「先掃共·後抗日」을 지시했으나, 張學良과 양호성(第17路軍)은 이에 반대했고, 蔣介石을 감금하고, 모든 內戰中止, 政治犯釋放 등 8개 항을 요구했다. 이 사태를 「西安事變」이라 한다.

1937년 9월 27일 蔣介石은 “第2次 國共合作에 관한 談話”를 발표하였으며, 國民黨軍事委員會는 國民軍산하 紅軍을 접수·개편하였다.

國共合作은 “抗日鬭爭을 하자”는 것이었으나, 共產黨은 세력확대에 목적이 있었고, 毛澤東은 「7分發展, 2分對應, 1分抗日」이라는 3元的 戰略을 내 세워 국민당 정부를 공산화하려 했다. 共產黨은 그 후 中央軍事委員會의 명령에 불복하고 抗日鬭爭보다 國府軍을 공격함으로써 國共合作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파괴하였던 것이다.

。 1945년 8월 15일 日本이 무조건 항복하자 國共間에는 內戰이 본격화되었다. 國府軍은 共產軍 討伐에 전력을 다했고, 共產軍은 반격을 가하면서 毛澤東은 「飢餓反對·內戰反對·迫害反對」의 시위를 일으켜 국민들의 國府信賴를 저하시키려고 心理戰을 펼치는 한편, 전국 도처에서 遊擊戰術로 國府軍을 급습하였다. 共產軍은 2백만으로 급증했고, 1949년 5월 楊子江流域의 여러 도시를 점령했다. 國府軍은 날로 열세를 면치 못했고, 戰意를 상실하여 廣東으로 후퇴했던 國民黨政府는 12월에 台灣으로 급거 천도하는 悲運을 맞게 되어, 1949년 10월 1일 中國大陸은 공산화 되었고, 드디어 「中華人民共和國」을 수립하게 되었다.

한편 대만으로 遷都한 「中華民國」은 1911년 10월 10일 孫文의 「民族·民權·民生」의 三民主義를 建國理念으로 政統성을 承繼한 政府의 출범을 선언함으로써 결국 分斷이 되었던 것이다.

나. 中國·臺灣의 統一政策

1) 中國의 統一政策

가) 毛澤東時代(1949~76)

1949년 中國大陸을 장악한 毛澤東은 政權의 성질을 「人民民主專政」²¹⁾이라고 칭했다. 中國은 政權樹立이후 부터 “피로써 대만을 解放하자”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武力統一政策을 추구했다. 戰術적으로는 “시기가 성숙하면 臺灣人의 봉기와 中國軍의 결합으로 대만을 해방시킨다”는 견지아래 지식인, 학생, 노동자, 農民運動을 유도하기 위해 대만 각지에 공작원을 투입하여 地下組織을 構築하기에 주력했다.

21) 1949. 6. 30. 中共黨 創黨 第38周年記念式에서 “人民民主獨裁를 論함”의 연설문을 발표한 내용 參照(國土統一院, 1987. 「中國의 統一戰線戰略」, p.97

그러나 1950년 6월에 韓國戰爭이 勃發함으로써 武力統一政策은 좌절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북한의 남침은 남한과 대만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美國의 개입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國戰爭은 毛澤東의 대만침공계획을 와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만문제를 國際的 紛爭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한편, 美國은 共產勢力의 擴張을 견제하기 위하여 臺灣에 대한 대대적인 원조를 시작하였고, 1954년에는 美國과 臺灣間에 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여 대만의 安保를 美國이 보장하게 되었다.

中國은 1954년 부터는 平和的 宣傳攻勢와 武力統一政策을 배합한 方案을 새로이 모색하여 대만에 대한 領有權과 支配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즉, 1954년 7월 周恩來外交部長은 “臺灣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평화적 방법으로 대만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다.

1958년 8월 中國은 美·蘇의 대만정책을 시험할 목적에서 「金門島事件」²²⁾을 도발했다.

1960년에 들어서면서 「三面紅旗運動」²³⁾이 전개되면서 大饑饉이 있었고, 「文化大革命」²⁴⁾으로 政治的인 權力鬭爭의 혼란이 거듭되면서 統一戰線의 공세가 약화되었다.

1964년 周恩來는 “臺灣을 期限附 武力統一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臺灣解放問題는 中國의 內政問題이며 UN 혹은 어떠한 外國도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22) 中國은 40日間 대규모의 砲擊을 金門島에 가하여 무려 45만발의 포탄을 퍼부은 무력 도발 사건이다.

23) 三面紅旗運動: ① 社會主義總路線, ② 生産大躍進, ③ 人民公社化운동을 말하며, 이 三面紅旗運動은 실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24) 文化大革命(1965. 11-1971. 9)은 毛澤東의 측근 文藝批評家 姚文元이 北京副市長 吳晗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고, 毛澤東 主流派가 劉少奇, 鄧小平, 彭真등, 實權派를 축적하는 3년간의 치열한 투쟁을 거쳐 毛澤東의 절대적인 指導體制的 확립과 林彪의 후계자 지명으로 귀착되었다. 文化革命을 “意識形態領域에서의 階級鬭爭”이라 규정했지만, 결국 三面紅旗運動의 失敗로 批判이 일자, 毛澤東 자신이 群衆과 紅衛兵을 동원하여 권력투쟁을 펼친 것이 되었다.

1971년 10월 25일 中國은 UN에 가입하여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 놓고, 다시 和戰兩面의 二重壓力을 가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결국 中國은 대만의 해방을 주장했고, 대만통합을 가장 중요한 統一政策으로 내 세워 國家的 課業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中國은 하나이고, 대만은 中國의 一個省에 불과하다. 따라서 「2個中國」, 혹은 「1個中國 1個臺灣」 등의 정책을 반대하며, 또한 北京政權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는 모든 국가는 대만과는 외교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정책을 견지해 왔다.

中國은 1972년 이후 臺灣問題의 평화적 해결을 할 의향이 있음을 표시하여 왔지만, 統一問題는 國內的 問題이므로 主權行使를 하기 위한 武力行使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리고 1976년 9월 9일 毛澤東의 사망으로 「毛澤東時代」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나) 鄧小平時代(1977~현재)

鄧小平은 1976년 4월 「天安門事件」²⁵⁾으로 실각하였다가 1977년 7월 復權²⁶⁾됨으로써 毛澤東의 後繼者인 華國鋒은 권력투쟁에서 밀려나고 마침내 「鄧小平時代」의 序幕을 올리게 되었다.

1978년 12월 제11기 黨中央委 3次會議에서 「4大現代化路線」의 적극추진, 毛澤東思想의 재평가, 黨의 중점활동을 階級鬭爭 보다는 社會主義의 近代化를 주장한 鄧小平派가 승리함으로써 實權을 장악하게 되었다.

1979년 1월 1일 中國과 美國이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美國이 臺灣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게 되자, 中國은 이를 계기

25) 天安門事件 ; 1976. 4. 周恩來, 鄧小平등 「走資派」들이 「4大現代化」를 제기, 文革路線에서의 일대전환을 모색하게 되자 文革派들과 主權鬭爭이 일어난 事件이다.

26) 1977. 7 復權—中共黨 中央政治局 常務委員, 中央黨 副主席, 中央軍事委副主席, 國務院 副總理, 總參謀長,

로 하여 武力統一政策을 止揚하고 平和的인 統一政策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동년 1월 1일 全國人民代表會議은 中國本土와 대만의 평화적 통일을 제의하는 公開狀을 대만에 발송하여 “中國은 대만의 현존 社會·經濟體制를 존중하고 또한 대만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의했다.

i) 平和統一 9個方案(第3次 國共合作)

1981년 9월 30일 「全人代」 常設委員長 葉劍英에 의하여 발표된 「平和統一 9個方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中華民族이 분열되어 있는 불행한 국면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中國共產黨과 中國國民黨 사이에 대등한 회담을 진행하고, 第3次 國共合作을 실현하여 祖國統一을 완수하자. 쌍방은 대표를 보내 협상을 시작하자.
- ② 대만해협 양편의 住民들은 相互間 소식을 전하며 친척방문과 무역을 전개하자. 쌍방은 郵便, 通商, 海上往來, 親戚訪問, 觀光, 그리고 學術·文化·體育交流에 관한 협상을 하자.
- ③ 統一後 臺灣은 特別行政區로서 自治權을 인정하며, 독자적인 군대를 保有할 수 있다. 中央政府는 臺灣의 地方事業에 참여하지 않는다.
- ④ 대만의 사회, 경제, 생활방식, 외국과의 경제, 문화관계는 개척시키지 않는다. 개인재산과 주택, 토지, 기업소유권, 합법적인 繼承權, 外國投資는 侵害되지 않는다.
- ⑤ 대만당국과 각계대표인사들은 전국적인 政治機關의 지도적 직무를 맡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 참여할 수 있다.
- ⑥ 대만의 지방재정이 난관에 부딪칠 때에는 중앙정부가 협조한다.
- ⑦ 本土에 돌아와 居住하려는 臺灣住民들은 자유롭게 하고, 差別待遇를 받지 않는다.
- ⑧ 대만의 경제인들은 本土에 投資하고, 경제활동하는 것을 환영하며 합법적 이익을 보장한다.
- ⑨ 祖國統一은 國民義務이다. 中國은 臺灣과 협상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와 같은 제안은 비록 「1國家 2制度」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提案은 이른바 「3通」(通郵·通商·通航), 「4流」(經濟·文化·

體育·科學)을 중심으로한 平和的 政治攻勢를 본격적으로 전개 함으로써 中國의 합리적인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고, 동시에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특히, 대만에 대한 미국의 武器販賣를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한 대만에 대한 반응도 探查해 보려는 저의도 있었다.

1981년 5월 15일 鄧小平은 「祖國統一 6個原則」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대만의 現政權 인정
- ② 대만주민의 現生活水準 유지보장
- ③ 대만에 대한 外國投資 보장
- ④ 대만의 軍隊 유지보장
- ⑤ 대만 地方政府의 人事決定權 인정
- ⑥ 대만의 對外關係 維持保障

위의 내용으로 보아 平和統一 9個方案의 主要事項을 「6個原則」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中國의 統一政策은 臺灣統合方案으로 제1단계에서 대만의 自治化, 또는 特區化, 제2단계에서는 社會主義 國家에로의 統一完成이다.

ii) 「1國家 2制度論」의 대두

鄧小平은 1984년 2월 22일 美國大統領 安보擔當特別補佐官 브레진스키에게 “中國統一 이후 臺灣은 資本主義를 유지할 수 있으며, 大陸은 社會主義를 실행한다. 즉, 1個中國에 2個制度를 유지할 수 있고 쌍방은 서로 해치지 않는다”고 언급함으로써 「1國家 2制度」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그리고 鄧小平은 1984년 6월 30일 中國시사주간지 「遼望」과의 회견에서 “中國과 臺灣은 서로 상대방을 삼킬 수 없을 것이며, 홍콩問題를 해결한 「1國家 2制度」방식이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언급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國家 2制度論」의 내용이 「홍

「홍콩返還協定」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참고로 「홍콩返還協定」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4년 12월 19일 「홍콩返還協定」이 中國의 鄧小平과 英國의 대처首相 사이에 체결되었다.)

① 홍콩은 1997년 7월 1일을 기해 中國 中央政府에 직속되는 「特別行政區」가 되며 外交·國防 이외의 분야에서는 自治權을 보유함.

② 홍콩特區에는 독자적인 行政·立法·司法權을 부여하며 현재의 司法制度는 그대로 유지함.

③ 홍콩政府는 현지주민으로 구성되며 行政府의 首班은 選舉 또는 協議에 의해 선출하고 中國이 임명함.

④ 현행의 社會·經濟制度 및 생활방식은 그대로 존속하며 思想, 言論, 集會, 宗教, 人身의 自由는 법률로 보장되고 개인의 所有權, 財產繼承權, 外國資本은 법률의 보장을 받음.

⑤ 홍콩은 自由港, 國際金融중심지로서의 지위와 독립된 關稅區域을 유지하며 홍콩달러의 통용을 보장함.

⑥ 홍콩은 獨立財政을 수립, 집행하며 中國은 홍콩에서 稅金을 징수하지 않음.

⑦ 홍콩은 「홍콩·차이나」란 이름으로 세계 각국 및 國際組織과 相互互惠의 경제·문화관계를 수립하여 필요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⑧ 홍콩 자체의 治安은 홍콩에서 책임을 짐.

이와 같은 「1國家 2制度論」은 中國政權을 중국유일의 정부로 하고, 다만 일부지역에서 資本主義制度, 「特別行政區」를 모델로 실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사회의 정치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즉, 1國家內에 상호 대립되는 2個의 독립된 政治實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1985년 1월 1일 鄧小平은 蔣經國總統에게 「1國家 2制度」에 입각한 統一協商을 제안했다.

그러나 「홍콩返還協定」이 대만문제의 해결을 희구하는 촉매적인 작용은 했지만, 반드시 홍콩問題의 해결에 의거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951년 5월 23일 「中國·티베트協商」에서 「1國家 2制度論」

은 이미 적용했었기 때문이다. 1959년 中國은 티베트 民主改革을 단행하여 티베트폭동을 야기시켰고, 달라이·라마를 印度로 추방시킨 바 있다.

최근 中國指導者들은 臺灣과 제3차 國共合作 協商을 개시해야 한다는 초조감에 잡혀 있으며, 대만의 움직임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統一보다 獨立의 길로 가게 될 위험성이 많은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中國本土에서 건너간 臺灣의 現指導者들은 “中國은 하나”라는 원칙은 고수하고 있지만, 이들이 政界로 부터 은퇴하고 사라지게 되고, 동시에 현지 臺灣人들의 政治的 영향력이 강화되면 대만은 本土와 영구분리되고 獨立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현상유지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대만의 장래는 불투명하게 된다고 中國은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의 統一政策은 臺灣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2) 臺灣의 統一政策

가) 蔣介石時代(1949~75)

1949년 臺灣으로 遷都한 蔣介石은 共產黨에게 빼앗긴 本土를 회복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당시 臺灣의 統一觀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다”는 失地回復의 개념에서 中國本土의 共產政權을 타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비해 군사적인 열세에 처한 대만은 수세에 몰려 1950년대에는 중국의 무력침공을 저지키 위한 군사·방위시설 등 防衛力量을 증대시키면서 經濟建設에 주력했다.

1958년 中國의 武力侵攻을 받은 「金門島事件」을 효과적으로 저지한 대만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적 安定과 경제적 成長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대만은 對內發展을 기하면서 中國本土에 대한 工作을 적극화하였다.

1954년 11월 1일 總統직속으로 「大陸光復設計委員會」²⁷⁾를 설치하고 大陸에서의 共產黨에게 참패한 원인을 규명하고, 수복후 실시할 諸般政策 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7分敵後 3分敵前」의 원칙아래 大陸에 대한 心理戰工作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蔣介石總統은 中國大陸에서 文化革命이 절정에 도달하고 東西陣營間의 화해기운이 싹틀 무렵인 1967년에 대만을 중국 전통사상에 입각한 反共復國의 基地로 삼기 위해 中央行政機構에 「安全處」를 설립하고 「中華文化復興運動會」를 조직했다.

대만이 統一政策의 일환으로 中華文化復興運動을 전개하게 된 것은 中國本土住民을 포섭하기 위한 宣傳攻勢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1966년 3월 蔣介石總統은 “國民黨員에게 보내는 談話文”에서 「自由6個項」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公約3章」을 발표했다. 「自由6個項」에는 중국 노동자들을 노예와 박해에서 해방시키고 고용의 자유를 부여한다는 등 6個項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公約3章」에는 中國으로부터 귀순하는 장병은 자유보장 및 보상을 해 준다는 등 3個의 공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만의 당면한 국가적 課題는 「光復大陸 建設臺灣」 혹은 「實行三民主義 消滅共匪」로 집약되는 바, 이는 대륙본토의 광복은 대만을 건설하는 방식으로하고 三民主義를 실현하여 共產黨을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나). 蔣經國時代(1978~87)

1975년 蔣介石總統 사망후 1978년 2월 제1기 國民黨全黨大會 제6차 全體會議을 통해 蔣經國體制가 출범했다.

27) 大陸光復設計委員會는 總統直屬 臨時機構로, 그 임무는 大陸光復을 연구하는 것이다. 構成은 第1回 國民大會 全體代表, 行政院 設計委員會委員, 總統이 任命한 者로 한다. 會議는 每年1회, 研究方案을 檢討·議決한다.

1979년 中國 葉劍英의 9個項의 平和統一 제안이 있는지 불과 1주일 후 蔣經國總統은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宣傳에 불과하고 中國人民의 自由·民主主義 그리고 經濟的 번영은 오로지 孫文의 三民主義에 의하여 中國統一이 달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서 臺灣首相 孫運璿은 “中國의 平和協商을 臺灣이 받아들인다면 이는 自己滅亡의 길이 분명하다”라고 말하여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孫運璿은 “平和協商提案과 「三通政策」, 「四大交流」등은 臺灣을 共產化하려는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만약 中國本土와 臺灣의 政治·經濟·社會·文化面の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平和統一의 條件들이 점차적으로 성숙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만은 미국과의 단교와 중국의 平和攻勢라는 양면적인 충격을 받아 처음부터 중국의 平和協商 접근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980년 10월 10일 蔣經國總統은 雙十節 기념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國共不接觸·不協商·不妥協”의 이른바 「三不政策」을 천명하였다.

i). 三民主義에 의한 統一方案

1981년 4월 5일 國民黨 제12기 전국대회에서 三民主義에 의한 反共報國만이 統一의 길임을 결의하고, 이에 「三民主義에 의한 統一方案」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三民主義를 통한 새로운 中國建設.
- ② 反共報國 行動綱領의 실천.
- ③ 臺灣建設의 경험을 통한 統一以後의 大陸再建.

이와 같은 統一方案은 蔣介石總統 이래 國民黨의 行動綱領과 統一目標을 그대로 재천명한 것이며, 국민당이 대만으로 천도한 이래 大陸政策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대만은 “중국의 平和統一政策의 제의는 평가할 가치도 없으며 협상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동시에 대만의 經濟建設이 모범적이고 중국보다는 몇 배 풍요롭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中國의 平和攻勢

가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소화시키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만약 대만이 중국의 協商提議에 응할 경우, 중국이 대만문제를 內部問題로 전제하고 있어서 그동안 대만이 주장해 왔던 「正統中華民國政府」로서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고, 中國住民의 臺灣訪問, 學術交流 등과 같은 對中國交流를 추진하자는 여론이 확산되면 現政府의 指導理念 喪失과 함께 國論分裂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대만인의 정치참여 확대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이 三民主義에 의한 統一方案은, 「統一된 하나의 中國으로」 진정한 獨立國家, 진정한 民主主義의 실현, 自由·平等의 실현, 진정한 富의 分配, 開放社會, 平和로운 社會를 建設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統一三大原則」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 ① 倫理로서 國家의 自由·平等을 실현하여 侵略戰爭을 반대한다.
- ② 民主로서 政治의 自由·平等을 실현하여 獨裁政治를 반대한다.
- ③ 科學으로서 經濟的 自由·平等을 실현하여 集體經濟를 반대한다.

이 方案은 統一의 目標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

- ① 自由·民主的 富의 分配로 統一國家를 建設한다.
- ② 民主的 憲政을 실현하여 헌법에 보장된 權利와 自由를 享有한다.
- ③ 中華文化를 부흥시키고, 倫理·道德을 회복하며 家庭制度를 유지 보호하며 명량한 社會를 건설한다.
- ④ 中國의 社會主義路線, 프롤레타리아獨裁, 共產黨의 國家領導, 마르크스·레닌主義, 毛澤東思想등을 폐지한다.
- ⑤ 世界赤化의 야욕을 없애고 善隣關係를 유지하며, 戰爭 대신 相互協力, 一黨獨裁 대신 自由民主主義를 실현한다.
- ⑥ 人民公社를 폐지하고 農民에게 土地를 分配하고, 私有財產權을 보장하며 生産品은 生産者가 所有케 한다.
- ⑦ 勞動착취를 폐지하고, 勞動者의 權益을 보호하며 勞動條件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대우를 향상시킨다.
- ⑧ 經濟統制와 配給制度를 폐지하고, 市場經濟를 회복시켜 自由經濟體制를 확립한다.
- ⑨ 特權階級 利益制度를 폐지하고, 社會福祉制度를 실시하여 富의 配分을 실현한다.

臺灣이 統一政策에 임하는 基本立場은 다음과 같다.

① 中國은 하나이며 대만이 正統政府이며, 하나의 中國代表로서 共產獨裁에 신음하는 本土를 구출할 사명을 지닌다.

② 대만이 三民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中國은 共產獨裁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國共合作에 앞서 共產主義 理念을 포기해야 한다.

③ 과거 2次에 걸친 國共合作에 의해 國民黨 政府가 背信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提議도 僞裝平和攻勢로 규정하고, 第3次 國共合作 提議는 「티벳方式의 臺灣解放」이라고 믿고 있다.

다). 李登輝時代(1988~현재)

蔣經國總統의 사망으로 과도적인 管理者의 지위에 있던 李登輝總統 兼 黨主席은, 1987년 7월 12일 제13기 國民黨 全黨大會를 개최함으로써 「李登輝時代」를 出帆했다. 國民黨은 7월 12일 全黨大會 제7차 및 제8차 全體會議을 열고 大陸政策을 확정했다.

새로운 大陸政策의 基調는 「三不政策」과 「三民主義에 의한 統一方案」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본입장을 고수하면서 臺灣의 政治的 民主化, 經濟的 自由化, 社會的 多樣化, 文化的 中國化 등, 「4大化」를 주축으로 하는 성공사례를 大陸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事項을 推進한다.

- ① 대륙의 海外留學生 및 學者들과의 접촉 및 연계의 확대.
- ② 대륙과의 間接交易 및 필요한 大陸原資材 輸入擴大.
- ③ 대륙친척방문 및 問喪·問病을 위한 大陸人들의 臺灣방문 허용.
- ④ 대륙에서 출간된 非宣傳性 出版物에 대한 수입허용.
- ⑤ 臺灣言論機關의 大陸取材 및 學術交流를 「하나의 中國」이라는 관점에서 처리.
- ⑥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을 기준으로 국제체육행사에 관련된 선수단 교류 검토.
- ⑦ 臺灣 各大學에서의 大陸研究 진작.
- ⑧ 政府 및 黨에 大陸關係部署 설치·운영 등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특히 유의할 점은 國民黨이 앞으로 이와 같은 大陸政策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급격한 內外狀況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黨의 最高政策決定機構인 黨中央委 黨務委員會의 결정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狀況에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臺灣은 中國의 提案을 거절하는 데는 변화가 없지만 中國과의 접촉이나 거래에 관해서 다소 신축성이 있는 政策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臺灣은 「唯一中國」이라는 原則에 입각하면서도 國際關係에서 신축성을 보여 왔다. 예를 들면 1984년 LA 올림픽大會와 1988년 서울올림픽大會에서 「中國·臺北」(차이니스·타이페이)이란 標識下에 참가한 바 있다. 또한 臺灣은 國旗나 國號에 구애받지 않고 非政府民間國際機構에 참가하고 있으며, 타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23개국과의 正式外交關係가 없으나 臺灣은 600여개 國際機構에 가입하고 있다.

다. 中國·臺灣의 交流現況

1). 人的交流

1987년 9월 대만에서 발행되는 日刊新聞 「自立晚報」의 記者 2명이 전격적으로 日本을 經由하여 北京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自由取材 활동을 통해 “北京은 台北보다 훨씬 뒤떨어진 都市”라는 記事를 報道했는데도 中國側은 吾不關焉, 臺灣側은 現行法을 위반한 이들에게 형식적인 起訴措置를 했을뿐 制裁를 가하지 않았다.

1987년 11월 2일 대만의 國民黨은 38년만에 대만주민들의 中國大陸訪問을 허용함으로써 人的交流의 길을 터놓았다. 그리고 대만정부도 1988년 10월 24일 中國住民의 臺灣訪問을 허용하는 指針²⁸⁾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의 人的交流는 더욱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 보이게 되었다.

28) 臺灣 內務部 次官 莊隆盛의 會見 參照, 그는 “本土入國措置緩和, 問病, 장례참석을 이유로 中國住民이 臺灣訪問을 신청할 경우 허용할 方針이다”라고 밝혔다.

대만측 발표에 의하면, 1987년 11월 2일 부터 한 달 동안 臺灣赤十字社에 본토방문을 신청한 수는 무려 2萬名에 달한다. 대만은 현재 三等親 까지만 본토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대부분의 申請者는 허용되고 있다.

1987년 12월 4일자 「人民日報」에 의하면 “12월 1일까지 臺灣住民의 中國訪問者數는 1萬3千名에 이른다”²⁹⁾고 보도했다.

대만주민에게 본토방문의 문호가 개방된지 1년미만에 벌써 20萬名이 中國을 방문했다. 中國訪問者들 중에는 立法議員, 學者, 言論人, 經濟人 등, 各계各층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아직도 敵對關係임에도 불구하고 臺灣海峽을 사이에 둔 中國과 臺灣間에 활발한 人的交流가 실현되고 있다.³⁰⁾ 이들 訪問者들이 中國에 사는 家族·親戚에게 「紅包」라는 이름의 「寸志」봉투를 전해 주는 額數가 1個月에 약1億\$에 이른다는 것이다. 中國에게는 年間 10억불이라는 엄청난 額數의 外貨獲得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中國住民의 臺灣訪問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직도 자유롭게 실현되지는 않고 있다. 한편, 대만은 「不鼓舞·不協助原則」으로 고무하지도 협조하지도 않지만 「不禁止」로 금지하지도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中國과 대만의 人的交流는 앞으로 情勢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계속될 것이며, 또한 그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經濟交流

人的交流가 실현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교류도 추진되고 있다. 홍콩政廳의 발표에 의하면 “1987년 10월 대만측이 홍콩을 경유하여 中

29) 이 가운데 홍콩경유 방문자는 4,593名, 기타 福州, 廈門, 上海, 北京經由 訪問者는 8,000名 以上이 된다. 日字別로 보면 11.3-11.25에 전체의 80%인 8,669名에 달한다. (1987. 12.4日字, 「人民日報」參照)

30) 대만 立法議院 胡秋原 (國民黨), 朱高正 (民主進步黨), 國立大教授·科學院 公務員 등이 北京에서 개최되는 學術會議에 參加했다.

國으로 부터 사들인 輸入量은 前年對比 98%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中國과 臺灣의 交易量은 날로 증가되어 1988년에는 20억불이 넘어섰다. 대만의 무역총량 1千億\$중 20億\$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增加의 幅이 急進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기업의 本土投資 바람이 일고 있어, 현재 65件에 4,500만\$의 實績을 이루고 있다.

대만은 1987년말 현재 外貨保有高 650억\$, 1인당 國民所得이 4,687\$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中國의 5百倍에 달하는 外貨保有高, 약16배의 國民所得에 해당된다. 대만으로서는 이와 같은 富의 배경을 이용하여 平和共存에 기여할 수 있다면 앞으로 中國과 通商도 허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³¹⁾

그러나 현재는 民間次元의 經濟交流에 대한 쌍방의 묵인과정을 거쳐 海上交易이나 本土投資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교역은 홍콩을 경유하는 間接交易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其他交流

體育交流는 그동안 활발한 교류는 없었지만 國際大會에서는 자주 교류 해 왔다.

대만은 1982年 台北에서 열린 「世界女子軟式庭球選手權大會」에 中國을 초청했으나 中國은 거절했다. 그러나 대만은 國際大會에서 신축성을 보여 1984년 「LA 올림픽大會」와 「第13次 亞洲野球選手權大會」 및 1988년 「서울올림픽大會」에 「中國·臺北」(차이니스·타이페이)라는 명의로 國旗나 國號에 구애받지 않고 참가했다.

그 밖에 諸般交流에 있어서는 國際學術會議에 臺灣學者들과 中國學者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臺灣出身 留學生들과 中國出身 留學生들

31) 대만 國民黨秘書長 李換의 「政治反功」參照

이 第3國에서 자유롭게 접촉하고 親交關係를 맺고 있으며, 海外居住 華僑들을 통하여 本土에 있는 親戚들과 書信交換도 하고 있다.

결국 中國은 「三通」의 方向으로, 臺灣은 「三不」을 내 세우면서도 점차 「三通」에 接近해 가는 關係改善의 方向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 짝씩 다가서는 현실이다.

4. 結 言(統一의 展望)

分斷國家의 統一問題를 展望해 보고, 獨逸과 中國의 接近方式에서 教訓을 導出하여 韓國에의 適用可能性을 검토 해 보고자 한다.

가. 東西獨의 統一展望

우선 東西獨의 統一展望을 살펴 보면, 가까운 시일내에 統一實現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東西獨間에 基本條約이 체결되었다는 그 자체는 바꾸어 말하면, 東西獨이 서로 分斷獨逸의 再結合을 단시일내에 성취하겠다는 방도를 止揚했다는 말이 된다. 즉, 基本條約이 체결된 후, 西獨은 「1民族 2國家」에 입각하여 東獨의 國家的 實在은 인정하되 “獨逸民族은 하나”임을 주장하는 반면, 東獨은 「2民族 2國家」라는 주장을 내 세워 “獨逸民族은 資本主義民族과 社會主義民族으로 兩分되었다”고 宣言한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基本條約의 체결을 “東西獨은 民族의 再結合을 포기한 것이냐?”는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 사실은 “東西獨은 결코 統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西獨은 自由民主主義를 토대로 統一을 실현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統一方案이며, 東獨은 社會主義를 토대로 한 統一을 실현하려는 것

이 기본적인 統一方案이다. 그 어느쪽도 統一政策의 基本方向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西獨은 언제라도 統一에 대한 內外與件이 유리하게 성숙되기만 한다면, 다시 활발한 統一論議를 전개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결국 東西獨은 基本條約의 체결을 통해 關係改善에 성공했지만, 統一實現이라는 커다란 國家目標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統一은 歷史的인 課題로 남겨 놓은채 당장의 分斷으로 인한 民族的 苦痛을 해소시킬 최상의 방법인 交流·協力の 길을 摸索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西獨은 되도록 東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思想論爭이나 體制의 優越性, 反共統一論議 등을 自制하면서 東獨에게 유리한 조건을 강구하여 支援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날로 증대되는 交流·協력으로 民族의 同質性을 지속시킨다는 안목으로 統一政策을 具現해 가고 있다. 반면, 東獨은 全體獨逸內 勞動者의 결속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國論의 左傾化를 피하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면 일시에 革命的 赤化統一을 실현하려는 統一政策의 野望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西獨은 長期的인 안목에서 다음과 같은 統一政策을 樹立하고, 統一實現의 우회적인 接近方法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東西獨國民이 “하나의 獨逸民族”이라는 歸屬感情을 지속하도록 靑少年의 民族教育에 힘쓴다.

둘째, 날로 增大되는 東獨訪問으로 東獨住民들에게 物質的·經濟的 도움을 주어 同胞愛가 지속되도록 힘쓴다.

셋째, 東西獨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傾注한다.

넷째, 東歐의 共產諸國과 紐帶를 긴밀히 하여 親善圖謀와 相互協力에 힘쓴다.

이와 같은 統一政策의 실현을 통하여 서독은 歐洲諸國과 平和共存의 周邊環境을 조성한 바탕 위에서 統一에 대한 否定的인 制約들이 완화될 때, 統一實現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長期的인 構想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異質性의 克服이나 同質性의 回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分斷으로 인한 民族苦痛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斷絶로 부터 交流로 », 「閉鎖로 부터 開放으로」 轉換되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지난 16년 동안 東西獨間에 일어난 변화는 엄청나며, 두 體制와 文化가 상당히 接近되고 가까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分斷의 苦痛을 극복하고 緊張緩和를 가능케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接近이 곧 바로 統一로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制約들이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다만 統一實現의 과정중 한 段階일 뿐이다.

나. 中國·臺灣의 統一展望

中國·臺灣의 統一展望도 東西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時日內에 統一實現은 어려울 전망이다.

“中國과 臺灣의 統一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中國과 “「1國家 2制度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만의 입장이 맞물려 있다.

만약 “대만이 끝까지 態度變化가 없을 경우, 中國은 武力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鄧小平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假想하여 답변하였다.

- ① 대만이 소련과 合勢할 경우.
- ② 대만이 核武器를 開發·保有할 경우.

- ③ 대만이 獨立을 宣言할 경우.
- ④ 대만이 政治的 紛爭으로 國民黨政權이 內部統制力을 喪失할 경우.
- ⑤ 대만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統一協商을 거절할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武力을 行使하게 될 것이라고 言及한 바 있다.³²⁾

이와 관련하여 대만은 “소련과의 合勢는 없을 것이고, 核武器를 開發·保有할 의사가 없으며, 또한 獨立을 宣言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나 대만에 있어서 世代交替의 現象은 統一에 중요한 하나의 變數이다. 中國本土에서 移住해 온 人士들은 점차 政治一線에서 물러나고, 그들의 子弟들에 의해 대치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대만이 「全中國의 代表政府」라는 神話에 의한 政治體制를 고집하지 않는다. 그들은 父母들과 같이 本土의 鄉愁나 離散의 苦痛이나 反共意識의 열기가 강하지 못하다.

따라서 대만의 政治的·社會的 變動은 中國과 統一을 위한 接近보다는 中國에서 부터 보다 떨어져 나가려는 傾向이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대만의 장래는 美國의 對臺灣政策에 의하여 크게 左右될 것이다. 오늘날 美國은 無干涉原則으로 임하고 있지만, 美國은 中國과 臺灣關係를 결정짓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상당기간에 걸쳐 美國은 台灣에 武器販賣 및 安保를 확립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中國은 美國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만이 中國의 統一協商提案에 응하도록 증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美國의 입장은 “臺灣問題는 中國인들이 平和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레이건大統領이 밝혔다.

그렇지만 만약 中國이 대만을 武力侵攻하는 경우에는 美國은 袖手傍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美國은 武力介入이 불가피할 것이기

32) 金鴻洛, 「北京·臺北과 中國統一問題」(國土統一院, 統一研究論叢 7卷 2號, 1987) p. 124 參照.

때문이다. 그러나 鄧小平은 4大現代化政策을 拋棄하면서 까지 대만을 얻기 위해 武力侵攻의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中國은 武力侵攻을 하기 보다는 平和統一의 與件과 狀況이 호전될 때 까지 기다리게 될 것이다.

다. 分斷國 接近方式의 韓國에의 適用可能性

東西獨의 接近方式과 中國·대만의 交流方式을 韓國에 適用可能性을 모색하는 데는 상당한 研究와 注意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統一의 歷史, 分斷의 經緯, 周邊情勢, 對決狀況 등에 상당한 差異點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東西獨의 接近方式에서 多方面的인 交流·協力으로 平和定着과 緊張緩和와 民族共榮의 터전을 마련한 「先 平和定着 後 統一實現」의 機能主義的 接近模型은 韓國에서도 가능한가를 研究 할 필요가 있다.

韓國人은 獨逸人에 비해 統一에의 念願이 훨씬 강하다. 그리고 國際的인 측면에서도 運身の 幅이 크다. 그러나 6·25動亂으로 인한 不信의 壁이 높다. 南北韓間의 統一接近의 第一步은 신뢰회복이다.

첫째, 상호간 신뢰회복을 위하여 非政治的인 分野 부터 접촉하는 機能主義的 接近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人的·物的 交流의 增進으로 文化의 異質化를 克服하여 民族同質性을 회복하고 民族共同體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東西獨의 接近方式은 최소한 對立·葛藤을 平和定着의 方法으로 해소했다는 점이다. 韓國은 분명 平和定着을 추구하고 있으나 北韓은 武力赤化統一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는 迂廻的 方法이기는 하지만 分斷의 苦痛부터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는 東西獨의 接近方式인 平和的 接近은

統一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해 볼 때, 그 當爲性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理由로 해서 東西獨의 接近方式은 우리에게 많은 妥當性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無條件 適用한다는 것은 성급한 期待이다. 우리는 이에 앞서 東西獨의 接近方式이 韓國에서 반드시 成功할 수 있도록 확고한 基盤造成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北方政策을 떠나아가는데 있어서 周邊國家들의 침예한 利害關係를 잘 調和시켜야 한다. 과거 西獨의 경우에도 周邊國家들과 經濟的 利害關係를 돈독히 함으로써 東方政策의 돌파구를 푼 曾던 方法을 敎訓으로 삼아 우리도 成功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基盤위에 서야 비로소 東西獨의 接近方式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民主統一論 (統一問題)

1989年 2月 28日 印刷

1989年 3月 6日 發行

發行處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 山5-19

電話 234-4102 · 236-4143

印刷處 農園文化社

